

비교법제자료 07-11

한국법제연구원·정보통신부·FTA국내대책위원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 국제 학술회의

#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 - “IT 강국, FTA의 과제와 전망” -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09:30 ~ 17:00

장 소 :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 402호 403호

## 초청의 글

### “IT강국, FTA의 과제와 전망”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FTA는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FTA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IT인프라를 자랑하는 IT강국이며, IT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성장엔진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가 주최하는 2007년 "FTA EXPO"와 "SoftExpo/DCF"행사기간 중에 국내·외의 FTA 전문가를 모시고 IT분야에서의 FTA에 대한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조망해본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FTA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김동훈 교수

## 축 사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열리는 “IT 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계절은 만추를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계절의 변화를 무색하게할 만큼,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2007년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사회 각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를 설치하는 근간인 FTA는 궁극적으로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을 넘어 자유화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북미를 중심으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기류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많은 법제적·정책적 연구가 수반되어야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미 FTA 체결, 한EU·한중 FTA 협상 추진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FTA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FTA를 법제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국제학술세미나는 우리나라 법제 연구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IT 산업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오고 있고,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뿐 아니라, 세계 IT 시장 주도를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나라는 동북아 IT 허브를 기본으로 금융·물류·R&D 허브 등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므로, FTA의 여러 대상 분야

중에서도 특히 IT 산업 분야에 대한 FTA의 체결에 따른 영향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한국의 국어대학교, 한국기업법무협회는 국내외 FTA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IT강국, FTA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FTA가 향후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 IT 분야와 최근 국제경제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FTA 분야를 접목시켜 그 법적 논의를 전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FTA 체결에 있어서 선진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신 중에도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국제학술회의 논의들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박 세 진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재웅입니다.

먼저, ‘IT강국, FTA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IT분야 FTA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제연구원 박세진 원장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김호정 소장님, 한국기업법무협회 이균성 협회장님과 김동훈 국제컨퍼런스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FTA의 IT분야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이냐의 물음에 누구나가 주저없이 IT산업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IT는 이미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IT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IT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지금이 ‘IT코리아 세계화의 기치’를 올바르게 세울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IT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채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장에서 밤새 연구하고 생산하는 우리 IT산업 관계자들의 땀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잡지를 발행하는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국가별 IT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간 활동 영역에서의 생산성과 R&D환경 부문은 점수가 매우 높으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법적 정비부문과 정부지원부문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IT산업 발전에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 못한  
다는 증명이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히 IT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IT산업은 시장과 기업에 맡겨두고 정부는  
뒤로 물러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FTA시대 국내  
IT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국내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유보되어 왔던 IPTV 조기도입을 위해 노력하  
였으며, 지난 11월 23일 관련 법률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  
과하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표준 생취전략을 마련해  
야 하며, 특히 'KS'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제표준을 만들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배양하여 다가올 FTA 시대  
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FTA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  
기 위해선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한국의 IT 강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학술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웅(한나라당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 사

친애하는 이재웅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세진 법제연구원 원장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인 IT 분야에 전문가 분들과 관계자, 학생들을 모시고 뜻깊은 IT 분야 FTA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는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14개월 동안의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보다 확대되었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선진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EU를 비롯한 많은 경제 단체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하루 아침에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되고 최종 이행이 완료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또, 최종 이행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오랜기간 폭넓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협상 결과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대책을 철저히 준비, 시행하는 한편 정확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와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분야와 계층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분야와 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분야와 계층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IT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박 철



## 행사프로그램

		Session I (#402)	Session II (#403)
09:30	10:00	접수 및 등록	
10:00	10:40	[Keynote Speaker 1] IT 분야 FTA 추진 동향 및 전략 남영숙(외교통상부 FTA추진단 FTA교섭관)	
10:50	10:55	이재용 국회의원, 한국의국어대학교 박 철 총장, 한국법제연구원 박세진 원장	
10:55	11:00		
11:00	11:10	break time	
11:10	11:50	[Keynote Speaker 2] KORUS FTA Maximizing Future Potential in U.S. and Korea ICT Robert Reynolds(주한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11:50	13:10	점 심 시 간	
오후 PART I		FTA 체결에 따른 IT산업의 법적 대응방안 (좌장: 문준조박사 한국법제연구원)	FTA 체결과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과제 (좌장: 김호정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13:10	14:00	E-commerce in FTAs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정 분석-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최원목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박찬호박사(한국법제연구원) 권현호교수(성신여자대학교)	FTA와 포털업계의 지적재산권 현안 "한미 FTA를 중심으로" 발표자: 서수경팀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자: 이대희교수(고려대학교) 정연옥실장(NHN(주))
14:00	14:50	온라인 금융 산업과 FTA에 대한 분석 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두진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김경민차장(은행연합회) 김명식변호사(법무법인 화현)	FTA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쟁점 발표자: 임 호교수(한국의국어대학교) 토론자: 김병일교수(한양대학교) 오윤경변호사(법무법인 화현)
14:50	15:10	휴 식 시 간(coffee break)	
오후 PART II		FTA 체결에 따른 IT 산업의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좌장: 계승균교수 부산대학교)	해외 주요국과의 FTA 협상의 과제와 전망 - IT분야를 중심으로 - (좌장: 이석우법무이사 NHN(주))
15:10	16:00	SW산업에서의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발표자: 안연식교수(경원대학교) 토론자: 김중환교수(경기대학교)  정재곤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15:10 IT and Copyright FTA between India & Korea: proposition, direction and strategy 발표자: Rajiv Khanna(University of Dehli) 토론자: 김찬환박사(한국의대남아시아연구소)
			15:45 Legal analysis of FTA between china and korea 발표자: FangFang(中國山東大學) 토론자: 양평섭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00	16:50	방송분야에서의 FTA 쟁점현황과 대응전략 발표자: 박진희부장(방송위원회) 토론자: 권호영박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인숙교수(경원대학교)	16:20 Estimation of FTA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iland 발표자: Charan Chakandaeng(Burapha University) 토론자: 변해철교수(한국의국어대학교)
			16:55

## PROGRAM

		Session I (#402)	Session II (#403)
09:30	10:00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10:00	10:40	[Keynote Speaker 1] IT sector's FTA promotion outlook and strategy Young-sook, Nam(MOFAT FTA negotiating agent)	
10:50	10:55	Congressman Jae-ung, Lee, President of HUFS,	
10:55	11:00	The president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1:00	11:10	break time	
11:10	11:50	[Keynote Speaker 2] KORUS FTA Maximizing Future Potential in U.S. and Korea ICT Robert Reynolds(a secretary of U.S. embassy in Korea)	
11:50	13:10	lunch break	
PART I		legal counter measure of IT industry according to the FTA agreement Dr. Jun-jo, Mun (KLRI)	the status and tasks of FTA agre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f. Ho-jung, Kim (HUFS)
13:10	14:00	E-commerce in FTAs <i>With focus on the legal counter actions</i> speaker: Prof. won-mok Choi(EWHAWU) debater: Dr. Chan-ho Park(KLRI) Prof. Hyun-ho Kwon(SSW U)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on FTA and portal sites <i>"With focus on FTA"</i> speaker: Su-kyung Seo(Kinternet) debater: Dae-e Lee(Koreal) Yun-uk Jung(NHN Inc.)
14:00	14:50	Analysis on the effect of FTA on online financial sector <i>With focus on the legal counter actions</i> speaker: Dr. Dou-jin Kim(KLRI) debater: Kyung-min Kim(KFB) Attorney Myung-sik Kim (HwaHyun Law Firm)	Legal conflicts on FTA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aker: Prof. Ho Lim(HUFS) debater: Prof. Byung-i Kim(HanyangU) Attorney Yun-kung, Oh (HwaHyun Law Firm)
14:50	15:10	coffee break	
PART II		Promoting FTA and set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Prof. Seung-kiun Ke, PNU)	Tasks and outlook on FTA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ies - with focus on IT - Suk-woo Lee (NHN Inc.)
15:10	16:00	Promoting FTA and set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in the SW industry speaker: Prof. Yun-sik An(KWU) debater: Prof. Jung-hwan Kim(KGU) Attorney Jae-gon Jung (SOCOP)	15:10 IT and Copyright FTA between India & Korea: proposition, direction and strategy speaker: Rajiv Khanna(University of Dehli) debater: Dr.Chan-wan, Kim (HUFS south Asia research center)
			15:45 Legal analysis of FTA between china and korea speaker: FangFang(中國山東大學) debater: Dr.Pyung-sup Yang(KIEP)
16:00	16:50	Main conflicts and counter measures in the broadcastig industry caused by the FTA speaker: Jin-hee Kwak(The broadcasting committee) debater: Dr. Ho-young,Kwon(KBI) Prof. In-su, Jung(KWU)	16:20 Estimation of FTA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iland speaker: Charan Chakandaeng(Burapha University) debater: Prof. Hae-chul, Byuen(HUFS)

## 목 차

초청의 글 .....	3
축 사 .....	5
기조연설 1 .....	19
기조연설 2 .....	29
SESSION 1	
Electronic Commerce in FTAs .....	45
I . Introduction .....	46
II . Electronic Commerce in FTA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	48
III . Electronic Commerce in Other FTAs .....	58
IV . Problems and Suggestions .....	60
국문요약 .....	65
토론문 .....	67
토론문 .....	71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	77
I . 한·미 FTA 협정 금융서비스장의 주요내용 .....	66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77
2.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	77
3. 금융기관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	78
4.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79

5. 예 외 .....	80
II. 온라인 금융산업의 정의와 범위 .....	81
1. 주체면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	82
2. 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 .....	82
3. 객체면 :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	85
4.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구성 .....	86
III. 온라인 금융산업에 미치는 한·미 FTA협정의 영향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87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	88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	91
3.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 .....	96
4.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98
IV. 결 어 .....	101
토론문 .....	105
토론문 .....	109
SW산업에서의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	115
1. 서 론 .....	115
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 분석 .....	115
3. 한미FTA 협상 영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	124
4.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의 요약 .....	136
5.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	136
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	138

토론문 .....	143
토론문 .....	151
방송분야에서의 한미FTA 쟁점과 대응전략 .....	155
1. 한미FTA 의의 .....	155
2. 한미FTA 협상에서의 쟁점 및 협상결과 .....	156
3. 협상 평가 .....	167
4.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향 .....	169
토론문 .....	175
토론문 .....	179

## SESSION 2

IT산업과 지적재산권 현안 .....	185
1. 개 요 .....	185
2. 지적재산권 분야 .....	185
(1) 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	185
(2) OSP에 대한 책임 .....	187
(3)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의 도입 .....	194
3. 통신분야 .....	196
4. 전자상거래분야 .....	196
토론문 .....	199
FTA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쟁점 .....	219
1. FTA와 TRIPS .....	219

2. FTA와 지적재산권의 법적쟁점들 .....	222
3. 결 론 .....	229
토론문 .....	231
IT AND COPYRIGHT .....	235
中韩FTA之建构----以IT产业为例 .....	249
一、中韩FTA的现状 .....	249
二、中韩FTA的可行性 .....	250
三、IT产业----中韩FTA焦点问题 .....	252
四、构建FTA中, IT行业合作面临的障碍 .....	256
五、中韩采取的措施 .....	257
六、结语 .....	259
중·한 FTA 구축에 관하여-IT산업을 예로 하여- .....	261
I. 중·한 FTA의 현황 .....	261
II. 중·한 FTA 실행 가능성 .....	262
III. IT산업- 중·한 FTA 이슈 .....	265
IV. FTA 구축에 있어서 IT계 협력이 직면한 장애 .....	270
V. 중·한 양국에서 취해야 할 조치 .....	271
VI. 결 론 .....	274
토론문 .....	275
FTA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	291

# 기 조 연 설 1

오늘 우리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FTA)과 그 중에서도 가장 첨단 분야이자 미래 성장동력 분야인 IT분야의 협상 동향 및 전략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FTA 추진 동향】**

급속하게 개방화·글로벌화 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범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통합과 더불어 원거리 국가 간의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며, 특히 2003년 칸쿤의 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각국은 더욱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FTA를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상분야에서 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에 치중했던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경쟁국의 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반사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활발히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2003년에 작성한 “FTA 로드맵”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만들었던 2003년 당시만 해도 WTO 회원국 150개국 중에서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몽고와 한국뿐이었습니다. 180여개의 FTA가 체결되어있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시의 우리의 개방정책은 세계적인 조류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발 앞서 나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의 세계 11위 경제규모와 경쟁력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가 수로 따지면 25개 국가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30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FTA와 IT 분야 협상】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모여 WTO plus의 개방안과 규범을 추구하는 통상협상입니다. WTO에서 150여개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하기 어려웠던 규범들도 FTA를 통하여 양자적으로 도입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며, 점차 많은 수의 FTA가 이러한 포괄적인 규범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FTA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제1세대 FTA는 상품무역을 위주로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를 FTA의 주된 체결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2세대 FTA는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계약국들 간에 있어 국경을 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다 최근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제3세대 또는 'new generation' 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이외의 규율사항으로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등 신무역규범(new rules)이 포함되고 환경, 노동 또는 경제 기술협력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 및 법·제도가 규율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방과 경쟁을 통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3세대의 FTA를 추구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T분야의 경우, 이전에는 상품으로서의 IT제품의 관세를 위주로 다

루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환경 하의 새로운 IT관련 규범들도 FTA를 통해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품무역분야에서의 FTA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에 IT관련 서비스 및 투자, 그리고 각종 법·제도적 무역규범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IT 분야의 FTA 협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제도의 선진화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협상의 경우,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지적재산권 규범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에서도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무역규범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의 영향 또는 기대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의 WTO plus적인 개방안 및 규범을 협정문에 담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맺은 FTA 중 한-미 FTA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라 할 수 있습니다. 24개 챕터와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제3세대 FTA가 규율하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IT분야도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많은 챕터에 걸쳐서 개방안과 규범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협상에서도 이러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마련되는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은 한국이 지식서비스경제로 나가고 IT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IT분야 FTA 협상】

여기서는 IT분야 FTA 협상 중 일부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IT 상품분야

상품무역 분야 중 IT상품은 현재 가장 개방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패키지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 되어있기 때문에 FTA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에 따른 시장개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FTA체결은 국가인지도 제고와 포괄적인 교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의 효과로 IT상품교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칠레를 대상으로 IT분야 수출 및 무역수지흑자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IT상품 수출이 2005년도에는 1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4배가 증가하였고, 특히 휴대폰 같은 무선통신기기와 영상기기의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증대에 따라 대칠레 무역수지흑자폭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품자유화 기본협정이 2006년 중 타결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된 한-아세안 FTA도 그동안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우리나라의 IT 수출경쟁력을 크게 제고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한미 양국간은 휴대폰, 반도체 등 IT상품무역의 88%가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시장개방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경쟁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부과 품

목 중 대미수출 비중이 큰 디지털 TV 등 디지털가전, LCD 모니터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대미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부품 가격의 하락은 우리기업 완제품의 원가를 하락시켜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폐지에 따라 우리IT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권 집행의 강화 등 IT 관련 지재권 보호 및 집행 이슈들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칠레와 싱가포르, EFTA 등과 맺은 FTA에 지적재산권 챕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로 협력 위주의 선언적인 조항이 대부분이었으며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상표·특허 등 산업재산권, 집행 등 지적재산권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온라인 디지털환경 하의 지재권과 관련된 것도 상당 부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저작권자의 승낙 없는 일시적 복제 금지(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일시적 복제의 예외적 허용), 저작물 접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을 유효하게 고지한 저작권자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 온라인 디지털환경 하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직권통관보류 제도 규정 등 실

질적인 집행수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하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적응하는 기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창작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저작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디지털환경에 근거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IT 산업발전 및 대미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폭넓은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협상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와 관련해서는 EU의 요구수준이 높지 않아 협상결과가 한-미 FTA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분야는 FTA 협상 분야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상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특성상 새로운 무역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련 무역규범 도입에 가장 관심이 많은 미국의 주도로 FTA 상의 규범이 정립되어왔습니다.

우리는 한-싱가폴 FTA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과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한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우리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무관세화 및 비차별대우 규범을 명문화한 바 있고,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 중

논의를 통하여 동 규범을 더욱 정교화하여 도입하였습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고, 또한 CD 등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도 무관세화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차별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것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갖추고 디지털콘텐츠 부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생산 및 유통에 있어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무역규범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유리하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교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향후 IT분야 FTA 추진 방향】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IT분야가 그 자체로 중요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경제·산업 전반의 지식집약도를 높이는 기반산업임을 감안할 때, IT 분야의 통상협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무역규범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및 향후 추진될 많은 나라와의 FTA 협상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IT 관련 법과 제도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IT 분야의 개방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기조연설

협상을 지속하여 IT분야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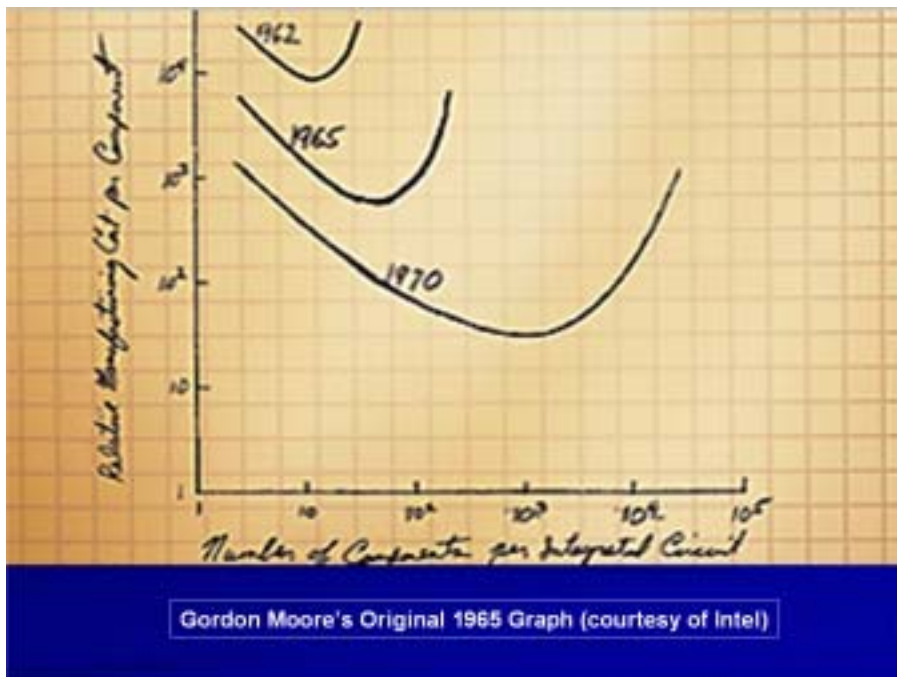
## 기 조 연 설 2



# KORUS FTA

## Maximizing Future Potential in U.S. and Korean ICT

Robert Reynolds  
U.S. Embassy Seoul



1970 Analog Computing (slide rule)



## Overview

- ICT vital to Korea & U.S. FTA helps both.
- Key sector both nations' economy & trade
  - Output, employment, productivity benefits
  - Technology tie-ups already flourishing
  - ICT/R&D – a Korean investment priority
- KORUS FTA benefits U.S. & Korean ICT
  - FTA opens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 IP protection and regulatory reform are important FTA benefits in the ICT sector

## What is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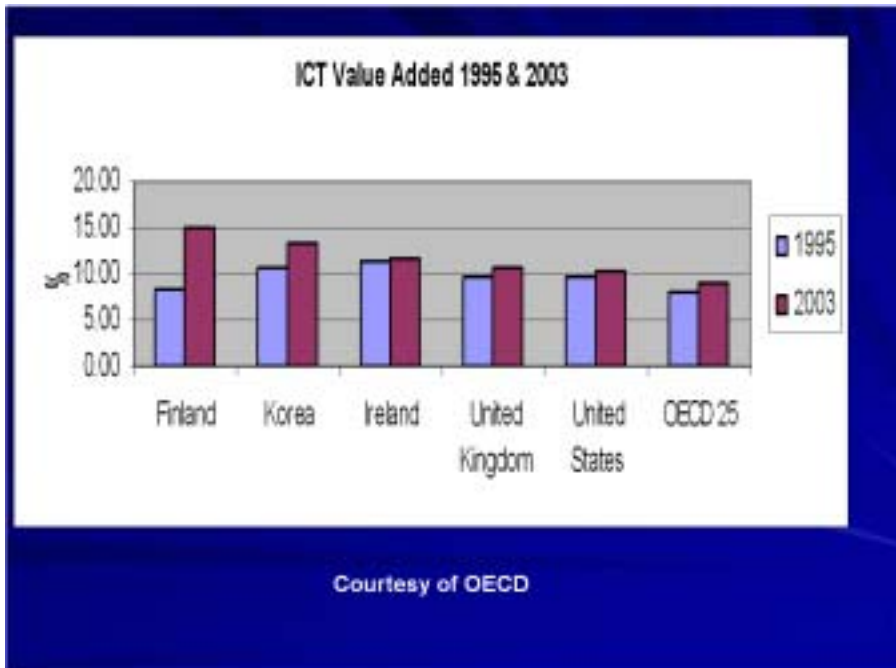
- "Any information and/or communication device or application" + "associated services and applications"
- In trade terms, both goods and services
  - Goods: ADP machines/parts (SITC 752/759),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ITC 764), Transistors, ICs, Semiconductors (SITC 776)
  - Services: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 Commerce, Convergence Services

## ICT domestic & trade rules are evolving as the sector adv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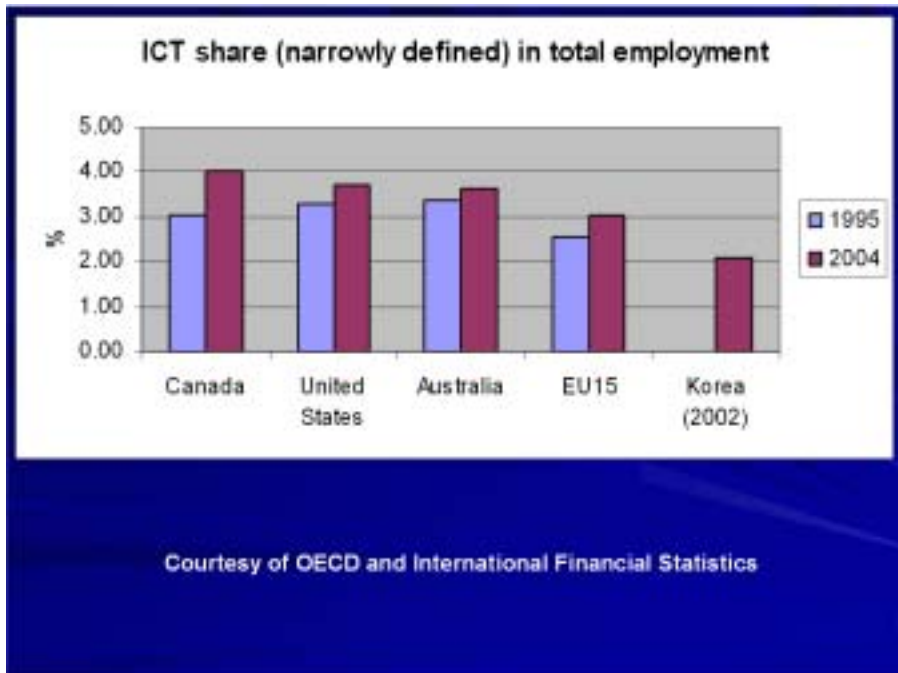
- Moore's Law means governments must continually adapt domestic regulation and trade law to new ICT products and services
  - TRIPS, 1994
  - WIPO Internet Treaties, 1996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1996
  - Global Basic Telecoms Agreement, 1997
  - WTO E-Commerce Work Program, 1998
  - Multi-Chip Agreement, 2005 in Seoul
  - KORUS FTA, 2007 in Seoul

## ICT is a growth engine

- Key sector for both Korea and U.S.
  - Domestic Value-Added
  - Domestic Employment
  - Trade with Rest of World
  - Bilateral Trade
- Impacts on every other sector, especially financial services, health care, all B2B
  - Total economic impact is incalculable







## ICT in Korea's Global Exports

SITC764	Ranking	2006 \$m	2007/1-9	Shr./Tot.
Telecom	#1	33,877	26,528	9.9%
SITC776				
Semicnd	#3	28,486	23,791	8.9%
SITC759				
ADP Prts	#8	9,011	7,077	2.6%
SITC752				
ADP	#26	8,511	2,205	0.8%

Courtesy of KITA

## ICT in Korea's Imports

SITC776	Ranking	2006 \$m	2007/1-9	Shr./Tot.
Semicnd	#2	24,713	20,596	8.0%
SITC764				
Telecom	#7	6,231	5,329	2.1%
SITC752				
ADP	#17	4,481	2,472	1.0%
SITC759				
ADP Prts	#23	3,312	2,058	0.8%

Courtesy of KITA

## ICT in Korea's Exports to U.S.

SITC764	Ranking	2006 \$m	2007/1-9	Inc. Rate
Telecom	#2	5,392	4,524	15.6%
SITC759				
ADP Prts	#5	1,749	1,519	34.7%
SITC776				
Semicnd	#6	1,920	1,167	-14%
SITC752				
ADP	#19	892	301	-55.4%

Courtesy of KITA

## ICT in Korea's Imports from U.S.

SITC776	Ranking	2006 \$m	2007/1-9	Inc. Rate
Semicnd	#1	5,521	3,537	-16.8%
SITC764				
Telecom	#5	965	693	-0.6%
SITC752				
ADP	#24	424	262	-18.3%
SITC759				
ADP Prts	#41	188	150	10.4%

Courtesy of KITA

## U.S. Exports to/Imports from Korea

SITC776	Exports	Shr./Tot.	Imports	Shr./Tot.
Semicnd	2,649	11.6%	1,734	5.4%
SITC764				
Telecom	594	2.6%	4,728	14.6%
SITC752				
ADP	296	1.3%	299	0.9%
SITC759				
ADP Prts	141	0.6%	1,605	5.0%

2007/01-08 data courtesy of USDOC; \$ millions

## U.S./Korea's Mutual ICT Trade

- U.S. is Korea's:
  - 2<sup>nd</sup> largest market, 2<sup>nd</sup> or 3<sup>rd</sup> largest supplier telecoms equipment, ADP machines & parts
  - largest supplier of semiconductors, and 6<sup>th</sup> largest market for them
- Korea is U.S.'s 4th largest ICT supplier after China, Mexico and Japan, and 6<sup>th</sup> largest ICT export market after the EU, Canada, Mexico, Japan and China

Based on KITA and USDOC Trade Statistics



## ICT a Korean investment priority

- 7 out of 10 technologies Korea terms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s” involve ICT
- Projects such as the “IT Hub of NE Asia,” the “IT839” strategy, Nutrikum Square and the Songdo IT Cluster show ICT’s key role
- Korea will provide incentives to foreign R&D activities and investment in ICT
- KORUS FTA will also provide incentives

## Part One Conclusions

- ICT is a key sector in both Korea and U.S. economy and trade
- A cutting-edge sector that has promoted output, employment, productivity growth
- Immeasurable spillover into other sectors
- U.S. & Korea deeply interdependent in ICT already: strong intra-industry trade
- Next: FTA helps realize the potential

## KORUS: a 21<sup>st</sup> Century FTA

- Innovative provisions to lower non-tariff regulatory barriers and reflect modern global commerce
  - non-discrimination rules for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 "Technology choice" provisions to allow businesses and consumers to choose the technologies that best address their needs
  - State-of-the-art IPR protection

## Creativity/Confidence/Convergence

- OECD Ministerial: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June 17-18, 2008, COEX
- KORUS FTA provisions address all three
  - E-commerce chapt.: digital products duty-free, consumer access, cross-border data flows
  - Also: Electronic authentication/signature and online consumer protection
  - Services chapter: Despite reservations on IPTV, some opening on convergence services

## FTA Telecoms Provisions

- Access to/use of any public telecoms network or service of other party, including leased circuits
  - I/C at reasonable rates, including co-lo option
  - Pro-competition: major suppliers face different requirements
- Assure impartial independent regulatory body
- Measures that limit tech choice must be “designed to meet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 not unduly obstruct trade
- Phase II of *APE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s Equipment* (1998) soon as possible

## IPR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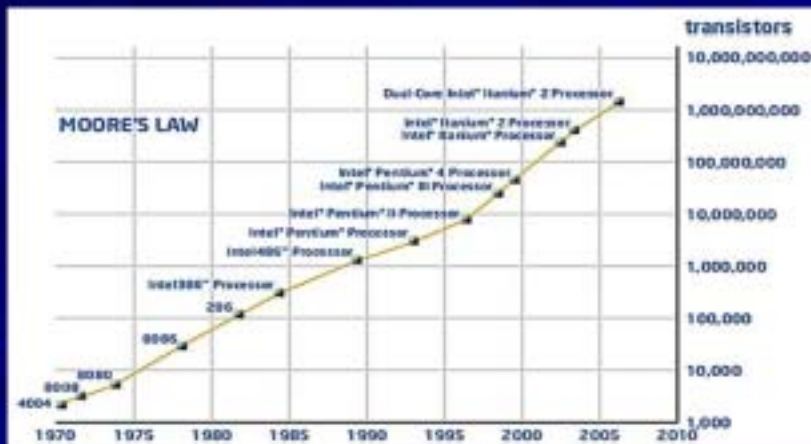
- “Beyond TRIPS” protection for all IP forms:
  - Copyright term extension to 70 years
  - Full adoption of WIPO Internet Treaties
  - Stronger protection against online piracy, and of encrypted satellite and cable signals
  - Patent availability for any new invention or new uses of a known product in all tech fields
- Korea is 5<sup>th</sup> in intl. patent applications, also benefits from stronger software protection



## Part Two Conclusions

- KORUS FTA benefits Korean and U.S. ICT equipment and services companies
- FTA advances Korean goals in ITC R&D investment and e-commerce promotion
- “Creativity, Confidence, and Convergence”
  -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 Consumer and IPR protection
  - Protection of and opening to innovative tech

## Concl.: Make Way for Moore's Law



Courtesy of Intel

## Power to the Revolution

In the last six weeks:

- A Korean company announced a 64 GB NAND flash memory chip, at 30 nm, one 4000/th as wide as a strand of hair
- A U.S. company announced a new family of microprocessors at 45 nm, or about 2000 transistors to the same strand of hair
- The U.S. and Korea have a lot to offer each other in ICT. KORUS FTA can help.

Thank you for listening!

# **SESSION 1**

## Electronic Commerce<sup>1)</sup> in FTAs

Choi, Won-Mog\*

---

1)\* Professor of Law, Ewha Womans Univ.; Member of Editorial Board of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S.J.D.(Georgetown); Attorney-at-law (New York). This paper is an update and refinement of an earlier article written by the author entitled 'Electronic Commerce in Korea-Japan FTA' published in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Vol.14-1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2005).

The followings are definitions of electronic commerce by major states and organizations:

- (1) OECD i) broad definition: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conducted over computer-mediated networks. The goods and services are ordered over those networks, but the payment and the ultimate delivery of the good or service may be conducted on or off-line; ii) narrow definition: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conducted over the Internet. The goods and services are ordered over those networks, but the payment and the ultimate delivery of the good or service may be conducted on or off-line. (OECD,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2. Annex 4, at 89).
- (2) WTO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work programme, and without prejudice to its outcome, the term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WTO, WT/L/274, 30 September 1998, para. 1.3).
- (3) DOC of the US - electronic commerce is the value of goods and services sold over computer-mediated networks. An e-commerce transaction is completed whe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online to transfer the ownership or rights to use goods or services. This online agreement is the trigger for determining an e-commerce transaction, not the payment. While transactions involve buyers and sellers, we generally will measure e-commerce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U.S. Census Bureau, Measuring Electronic Business, August 2001, at 4.) <[http://landview.census.gov/eos/www/papers/ebusasa .pdf](http://landview.census.gov/eos/www/papers/ebusasa.pdf)>
- (4) European Commission Electronic commerce is about doing business electronically. It is based on the electronic processing and transmission of data, including text, sound and video. It encompasses many diverse activities including electronic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on-line delivery of digital content, electronic fund transfers, electronic share tra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commercial auctions, collaborative design and engineering, on-line sourcing, public procurement, direct consumer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OM(97)157Final, 15 March 1997. para 5).

## I. Introduction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were officially internationalized when the United State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WTO General Council that the WTO Members should agree to continue 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sup>2)</sup> Subsequently, Canada proposed that Members agree to apply no new measures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applying customs duties to electronic deliverables (tariff standstill proposal).<sup>3)</sup> It is understood that these proposals covered only deliverables that are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4)</sup>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became more activated when WTO Members adopted the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on 20 May 1998 at the 2nd Ministerial Conference in Geneva.<sup>5)</sup> The declaration directed the WTO General Council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arising from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esent a progress report to the 3rd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The 1998 declaration also included a so-called moratorium stating that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up>6)</sup>

---

2) WTO, WT/GC/W/78 (February 9, 1998).

3) WTO, WT/GC/W/82 (April 15, 1998)

4) It would not apply to deliverables that are ordered electronically that are delivered non-electronically. Nor would it apply to deliverables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at are intrinsic to and required for the functioning of a good delivered non-electronically. WT/GC/W/82, para. 5.

5)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25 May 1998.

6) It is not clear whether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is trade in service or trade in goods. In any case, a country might consider transactions of digital product being transmitted electronically to be a trade in goods and attempt to apply duties or



The idea of establishing the Work Programme was adopted by the WTO General Council on 25th September 1998,<sup>7)</sup> and it continued after the Third Ministerial Conference in Seattle in November 1999. At the Fourth Ministerial Conference in Doha in 2001, ministers agreed to continue the programme as well as to extend th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until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sup>8)</sup> The continuance of the programme was confirmed and the moratorium was extended up to the Sixth Ministerial Conference by a General Council Decision on August 1 in 2004.<sup>9)</sup> The Hong Kong Ministerial Conference, extending the moratorium again until the next session, announced the "reinvigoration of the work programme, including the development-related issues and discussions on the trade treatment, inter alia, of electronically delivered software."<sup>10)</sup>

Under the work programme,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have been examin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the Council for TRIPS and the Committee on Trade and

---

fees thereupon. The moratorium prevents this from happening.

7)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8) We take note of the work which has been done in the Gener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bodies since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20 May 1998 and agree to continue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The work to date demonstrates that electronic commerce creat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for Members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vironment which is favourabl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We instruct the General Council to consider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handling the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further progress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declare that 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Fifth Session. Doha Declaration, para.34.

9) Paragraph 1(h),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10) Para 46,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22 December 2005, WT/MIN (05)/DEC.

Development. During the course of the work programme a number of background notes on the issues have been produced by the WTO Secretariat and many member governments have submitted documents outlining their own thoughts.<sup>11)</sup> Participants in these discussions hold the view that the examination of cross-cutting issues relating to e-commerce is unfinished, and that further work to clarify these issues is needed.

As the efforts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have not been progressing, some countrie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regional negotiations. In this light, it is no wonder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clude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incorporating special rules on it. In this paper, these rules on electronic commerce under FTAs will be examined with particular focus on FTA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and their implications and problems will be identified. Ways to modify and introduce these rules into future FTAs will also be explored.

## II. Electronic Commerce in FTA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Since 2003, the United States started to provide a separate chapter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most FTAs to which it is party, including the US-Singapore FTA,<sup>12)</sup> US - Australia FTA,<sup>13)</sup> US CAFTA

---

11) So far, there have been five discussions dedicated to cross-cutting issues on electronic commerce, held under General Council's auspices. The issues discussed included: classification of the content of certain electronic transmissions; development-related issues; fiscal implications of e-commerce; relationship (and possible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e-commerce and traditional forms of commerc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competitio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other legal issues.

12) Signed on May 6, 2003.

13) Signed on May 18, 2004.

FTA,<sup>14)</sup> and Korea-US FTA.<sup>15)</sup>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in these agreements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that electronic commerce provides, the importance of avoiding barriers to its use and develop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WTO Agreement to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commerce.<sup>16)</sup> Then the agreements establish substantive obligations regard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First, with regard to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these agreements confirm that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relating to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Such obligations are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sup>17)</sup> Hence, parties of such FTAs must treat electronic service just as they deal with normal trade in service.

Secondly, with regard to electronic trade of digital products, the US Singapore FTA and the US CAFTA FTA provide that No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by electronic transmission.<sup>18)</sup> This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reaching agreement with Singapore and CAFTA countries on duty-free entry of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is result is a remarkable achievement for US digital industries because the duty-free status, which had been agreed

---

14) Signed on May 28, 2004. The parties are the USA,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and Nicaragua.

15) Signed on June 30, 2007.

16) Article 16.1 of US-Australia FTA; Article 14.1 of US-CAFTA FTA; Article 14.1 of US-Singapore FTA; Article 15.1 of Korea-US FTA.

17) Article 6.2 of US-Australia FTA; Article 14.2 of US-CAFTA FTA; Article 14.2 of US-Singapore FTA; Article 15.2 of Korea-US FTA.

18) Article 14.3.1 of US-Singapore FTA; Article 14.3.1 of US-CAFTA FTA.

among WTO Members on a moratorium basis, became a permanent rule of trade among parties to such FTAs. More remarkable is the fact that these two agreements oblige their parties to apply no duties to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products imported from, or exported to, any non-party countries. Given the term digital products (not digital products of each party), this interpretation cannot be wrong. In other words, they set an example of non-reciprocal liberalization for the benefit of any third countries, which may be called an open regionalism approach in e-commerce. It seems that what is really intended by these efforts is to eventually form a world-wide practice of permanent duty exemption on digital transmission: if such clause is similarly adopted by FTAs made between the US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numerous third countries will benefit from it, which will induce those beneficiary states not to apply duties to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from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e US Australia FTA has a similar provision but with a slightly different language that: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19)</sup>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under this FTA the duty-free status not only becomes permanent, but also is accorded even to any digital products fixed on a carrier medium which are not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is means that electronic transmission is no more a condition for digital products to entertain a benefit of duty exemption. Now, the moratorium

---

<sup>19)</sup> Article 16.3 (CUSTOMS DUTIES) of US-Australia FTA.

has changed into a permanent rule and its scope has expanded to cover a broad range of means of e-commerce transactions between the US and Australia. Given the 'open regionalism' character of the provision, many countries engaging in e-commerce transaction with the US and Australia will benefit from the expended scope. This will, in return, induce such countries to follow the same policy.

Korea follows this policy in reaching a FTA with the US, but with a caution. Under the Korea-US FTA,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are exempted from imposition on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and on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if it is an originating good."<sup>20)</sup> This means that the open regionalism approach does not apply to the trade of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Any difference that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n classification matter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ion will be subject to consultation by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sup>21)</sup> Therefor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is an original good is likely to be answered through this consultation process, although it is no easy task.

Thirdly, concerning the issue of customs valuation, the US-Singapore FTA and US-CAFTA FTA state that the customs value of an imported carrier medium bearing a digital product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st or value of the carrier medium alone, without regard to the cost or value of the digital product stored on the carrier medium.<sup>22)</sup> Because these agreements require their parties to give duty free treatment only to

---

20) Article 15.3.1 of Korea-US FTA.

21) Footnote 2 of Chapter 15, Korea-US FTA.

22) Article 14.3.2 of US-CAFTA FTA; Article 14.3.2 of US-Singapore FTA.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digital products fixed in carrier medium may be subject to duties. Therefore, the customs valuation issue becomes relevant when such carrier medium passes through the territory of a party to such FTAs. In this event, the agreements require the party to charge as minimum duty as it applies to the medium itself. That is, any value of the digital content may not count in calculating customs value of the product at issue. Interestingly, as the US-Australia FTA exempted any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or fixed, from any customs duties, there is no need to provide an equivalent customs valuation provision under the FTA.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s in the Korea US FTA is also due to the fact that any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and any originating digital products fixed in carrier medium will enter the Korean and US market on a duty-free basis. As there is no clause in Korea-US FTA stating that customs value of a carrier medium bearing a digital product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st or value of the carrier medium alone, Korea and the US may charge a duty based on the valuation of the full price of an imported non-originating digital product fixed in carrier medium.

Fourth, in addition to the tariff issue, the four FTAs prescrib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bligation of digital products applicable to non-tariff barriers. This obligation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party and other countries (the other party plus any non-party) as well as between the other party and any non-party.<sup>23)</sup> On the former relationship,

---

23) The non-discrimination treatment obligation does not apply to: (1) non-conforming measures (US-CAFTA 14.3.5; US-Singapore 14.3.5; US-Australia 16.4.3; Korea-US 15.3.4), (2) certain subsidies (US-Australia 16.4.3), (3)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US-Australia 16.4.3), or (4)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sectors (US-Singapore 14.3.6; US-Australia 16.4.4).

the US-CAFTA, US-Singapore and US-Australia FTAs prescribe that: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24)</sup>)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25)</sup>): (a) on the basis that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outside its territory; (b) on the basis that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f such digital products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c) so as to otherwise afford protection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tha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its territory.<sup>26)</sup>

From this provision, one can note that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criteria: (1) the place of creation, production, publication, storage, transmission, contract, commissioning or first commercial availability, (2) the person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and (3) the aim and effect of protection. In other words, it will be inconsistent with the FTAs if a Party discriminate against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27)</sup>) because it was produced outside its territory ('place'), or because it was not developed by its nationals ('person'), or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igital products produced in its territory ('aim and effect'). One must note that this is based on a sort of open regionalism approach in according national

---

24) US-CAFTA FTA

25) US-CAFTA FTA

26) US-Australia FTA Article 16.4.1; US-CAFTA FTA Article 14.3.3; US-CAFTA FTA Article 14.3.3.

27) In case of US-CAFTA FTA.

treatment given that not only digital products produced in the other Party but also such product produced in any non-Parties will enjoy the national trea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The US-CAFTA FTA applies such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as to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while the US-Singapore and US-Australia FTA impose the obligation in regard to trade in any digital products.

In comparison, the Korea-US FTA does not follow such approach of open regionalism. Un the treaty, only those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or commission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will be accorded with less favourable treatment.<sup>28)</sup>

Then, these four FTAs extend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other party and any non-party, using the two criteria of 'place' and 'person' as follows: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29)</sup>): (a)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30)</sup>) created, produced,

---

28) Footnote 3 of Chapter 15, Korea-US FTA.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digital products that were merely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may not enjoy this treatment. However, the text of Article 15.3.2(a)(i) of Korea-US FTA does not seem to fully support this explanation.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FN3]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on the basis that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29) In case of US-CAFTA FTA.



published, [stored, transmitted]<sup>31)</sup>,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or (b)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r owner]<sup>32)</sup>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sup>33)</sup>)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r owner]<sup>34)</sup> is a person of a non-Party.<sup>35)</sup>

<Non-discrimination Principle Clauses in US-led FTAs>

	Me v. Others (or You) <National Treatment>	You v. 3rd Party <MFN Treatment>
Place	Produced in My Country v. Produced in Other Country (or Your Country)	Produced in Your Country v. Produced in 3rd Country
Person	Produced by My People v. Produced by Other People (or Your People)	Produced by Your People v. Produced by 3rd Country People
Aim & Effect	So as to afford protection for Digital Products produced in My Country	

Therefore, it will be inconsistent under the FTAs if a Party discriminates between a digital product produced in another Party and a

30) In case of US-CAFTA FTA.

31) Article 15.3.3(a) of Korea-US FTA.

32) The term owner is added in Korea-US FTA. Article 15.3.3(b) of Korea-US FTA.

33) In case of US-CAFTA FTA.

34) The term owner is added in Korea-US FTA. Article 15.3.3(b) of Korea-US FTA.

35) US-Australia FTA Article 16.4.2; US-CAFTA FTA Article 14.3.4; US-Singapore FTA Article 14.3.4.

like digital product produced in a non-Party. Also inconsistent is the discrimination between a digital product produc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nd a like digital product produced by a person of a non-Party. Again, the US-CAFTA FTA applies such obligation only between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while the US-Singapore and US-Australia FTA apply it as to any digital products. In Korea-US FTA, digital products that have been merely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not enjoy this MFN-type protection. In addition, the agreement clarifies that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audio-video broadcastings for which the content consumer has no choice over their scheduling is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duty exemption and non-discriminatory treatment.<sup>36)</sup>

Fifth, the US-Australia FTA and Korea-US FTA go further to regulate on such issues as 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and online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the authentication matter, the agreements prohibit parties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legislation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1)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2) prevent parties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prove in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sup>37)</sup>] that their electronic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sup>38)</sup> Furthermore, neither Party may deny a signature legal validity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signature is in electronic form.<sup>39)</sup>

---

36) Article 15.3.6 of Korea-US FTA. It further clarifies that the supply of service delivered electronically is subject to the obligations under the service/investment chapters. Article 15.2 of Korea-US FTA.

37) Article 15.4.1 of Korea-US FTA.

38) Article 16.5.1(a) of US-Australia FTA; Article 15.4.1 of Korea-US FTA.

39) Article 15.4.1(c) of Korea-US FTA.

Therefore, under these treaties, private parties engaging in e-commerce transactions may freely choose any authentication method including one based on legitimate electronic signature, as they deem appropriate, and such parties should be allowed to prove in judicial and quasi-judicial proceedings that their electronic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sup>40)</sup>

The US-Australia FTA admits the necessity of mutual recognition for digital certificates issued by each government, and requires both parties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recognition.<sup>41)</sup> On the other hand, the Korea-US FTA reserves Parties' right to require that, for a particular category of transactions,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be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law, provided the requirement serves a legitimate governmental objective, and is substantially related to achieving that objective.<sup>42)</sup> Therefore, Korea and the US may maintain a certified digital signature system, for example, for the u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r prescriptions of medicine in order to safeguard public safety or credibility.

As regards online consumer protection, the two agreem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nd adopt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sup>43)</sup> In this light, cooperation between Parties' national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is vital.<sup>44)</sup>

---

40) Article 16.5.1(b) of US-Australia FTA; Article 15.4.1 of Korea-US FTA.

41) Article 16.5.2 of US-Australia FTA.

42) Article 15.4.2 of Korea-US FTA.

43) Article 16.6 of US-Australia FTA; Article 15.5.1 of Korea-US FTA.

44) Article 15.5.2/3 of Korea-US FTA.

The Korea-US FTA states further that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accept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submitted electronically as the legal equivalent of the paper version of those documents and prescribes certain principles regarding free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and maintaining free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sup>45)</sup>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consumers should be able to access and use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of their choice, run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ir choice, connect their choice of devices to the Internet, and have the benefit of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nd the Parties must endeavor to refrain from imposing or maintain unnecessary barriers to electronic information flows across borders.<sup>46)</sup>

### III. Electronic Commerce in Other FTAs

It is no wonder that other countries than the United States take less ambitious approach in e-commerce than the United States. The Singapore Australia FTA states that each Par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Australia and Singapore.<sup>47)</sup> Under this provision, it is clear that the rule created by the FTA is to continue to apply the current practice and that the rule applies only to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Parties. Therefore, Singapore (or Australia) may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coming from a non-Party. Furthermore, it is still possible that Singapore and Australia apply duties on digital products fixed in carrier medium imported from each other.

---

45) Article 15.6, 15.7 and 15.8 of Korea-US FTA.

46) Article 15.7 and 15.8 of Korea-US FTA

47) Article 3 of Chapter 14, the Singapore Australia FTA.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the FTA has the similar provisions to those in the US Australia FTA as explained above.<sup>48)</sup>

Interestingly, the Singapore-Australia FTA has a sort of minimum protection clause for online consumers: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in a manner considered appropriate

by that Party, provide protection for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that is at least equivalent to that provided for consumers of other forms of commerce under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sup>49)</sup>

Under this provision it is required, to the extent possible, not to discriminate between online consumers and off-line consumers, and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to online consumers should not be lower than that provided to off-line consumers. Additionally, the Singapore-Australia FTA requires its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sup>50)</sup>

In several other FTAs, provisions on e-commerce can be found, but they are mostly hortatory. The Japan-Singapore FTA (JSEPA) identifies the promotion of electronic commerce as one of the areas and forms of co-oper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hapter.<sup>51)</sup> Under the EC-Chile FTA, EC and Chile agr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between them, in particular by

---

48) Article 5 of Chapter 14, the Singapore Australia FTA.

49) Article 6 of Chapter 14, the Singapore Australia FTA.

50) Article 7 of Chapter 14, the Singapore - Australia FTA. The FTA states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it does not apply to the electronic commerce, except for the issue of duty imposition on electronic transmission. Article 10 of Chapter 14, the Singapore - Australia FTA.

51) Article 113 of JSEPA.

co-operating on the market access and regulatory issues raised by electronic commerce.<sup>52)</sup> Similarly, the China Hong Kong FTA (CEPA) indicates electronic commerce as one of the areas where two sides will promote co-operation, and established a cooperation mechanism for various activities.<sup>53)</sup>

## IV. Problems and Suggestions

We can generally agree to the premise that measures related to the supply of a service using electronic means fall within the scope of trade in services. Therefore, it is worthwhile for future FTAs to confirm that such measures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relating to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services, and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applicable to such obligations.

With respect to regulation of digital products however, many issues and problems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First, the issue of tariff. The US-led open regionalism approach is indeed an ambitious drive based on the idea of permanent and non-reciprocal duty-free treatment on electronic transmission. It becomes more ambitious in the US-Australia FTA by permitting duty-free entry to all digital products including ones fixed in carrier medium. This means in fact that the both countries will consider transactions of digital products, fixed in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as trades in goods, not trades in service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US promotes this 'pro-e-commerce approach' given its position as the leading e-commerce economy in the world.

Other countries have reasons to be more circumspect. Open regionalism

---

52) Article 104 of the EC-Chile FTA.

53) Article 17 and Annex 6 of CEPA.

approach in e-commerce would mean duty-free market access for US digital industries on a permanent basis. Let alone this economic side, non-economic factors deserve to be taken into account, such as cultural and security concerns that unlimited e-commerce would engender. Moreover, the on-going 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 needs to be carefully observed for the time being.

To these countries, an optimal policy option would be to accord the duty-free treatment to e-commerce only between the signatory parties to a FTA. In order to achieve fuller integration, they may give duty-free entry to each other's digital products, fixed in carrier medium as well as transmitted electronically. Even in the case where only digital transmissions are accorded with duty exemption, they may include a provision on customs valuation by which customs value of an imported carrier medium bearing a digital product of each other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st or value of the carrier medium alone, without regard to the cost or value of the digital contents stored on the carrier medium. This will facilitate e-commerce between the FTA parties.

This approach gives rise to a problem: How can they determine whether a certain digital product is a product of each other? In other words, what are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e-commerce transactions under FTAs? Answering this question is indispensable because, as recommended above, FTA parties will give duty-free entry treatment only to each other's digital products. Note, first of all, that the traditional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trade in goods, are hardly applicable to e-commerce transactions. In the end, the traditional rules have developed to apply to physical goods, not electronic goods.<sup>54)</sup> Then, what could be

---

54) For example, the criterion of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s hardly applicable to

appropriate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e-commerce?

On this questio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s under the US-led FTAs shed light. Under those provisions, two important criteria to distinguish one digital product from another for purposes of apply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are (1) the place of creation, production, publication, contract, commissioning, or first commercial availability, and (2) the person of creation, production, publication, performance, development, or distribution, all of these criteria may be employed to make up a new concept of rules of origin for e-commerce. Given that a place of mere storage or transmission of a digital product cannot possibly give sufficient nexus to the origin, they must not be employed as criteria for rules of origin. Therefore, a digital product of the other Party may be defined as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a digital product whose creator, producer, publisher, performer, developer, distributo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sup>55)</sup> Given the unique nature of added value of digital contents that are created as a result of cooperative works by many contributors, such inclusive definition of rules of origin for digital products is unavoidable. It will also facilitate free trade of digital goods as far as possible.

Secondly, a non-discrimination treatment clause deserves to be provided in e-commerce chapter of FTAs in order to discipline non-tariff barriers on e-commerce. The two criteria (place and person) under the US-led

---

digital goods.

55) Likewise, a digital product of non-Party means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non-Party, or a digital product whose creator, producer, publisher, performer, developer or distributor is a person of non-Party.



FTAs may be referred to again for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Those countries considering that it is too early to join the US-led open regionalism approach may apply non-discrimination rules only in relation to reciprocal trade between FTA parties. By doing so, they may be required to accord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like digital products of the other Party than the treatment accorded to their own products, and to treat equally between like digital products of the other Party and any non-Party, but they will not be required to treat equally between their own digital products and like digital products of any non-Party.

With this approach adopted and if the digital product of the other Party is defined as suggested above, a much simpler text of non-discrimination clause could be drafted for future FTAs as follows:

A Party shall not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of the other Party than the treatments accorded to (i) like domestic digital products and (ii) like digital products of any non-Party.

Thirdly, provisions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and online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US - Australia FTA or Singapore Australia FTA can be copied into future FTAs. In addition, it is recommendable to introduce a mechanism to protect personal data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reference to the Singapore-Australia FTA.

Fourth, it is necessary to specify electronic commerce as one of th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FTA member countries,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mechanism for supporting activities. Those principles regarding paperless trading, free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and free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that are prescribed in the Korea-US FTA may be also introduced into future FTAs with proper adjustments.

## SESSION 1

Lastly, in order to reflect possible agreements or developments under the WTO Work Programme or OECD, a 'consultation and modification' clause may be inserted into FTAs. Under this provision, a Party considering that e-commerce provisions require modification to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or agreements under multilateral or regional fora may submit to the other party for consideration a proposed modification along with supporting rationale, any study results, and any appropriate action that needs to be taken. This consultation and subsequent modification mechanism will play a role of finding a new balance of interest between the FTA Parties as well as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fora.

## 국문 요약

###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정의 입법 방향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는 1998년 5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잠정합의(moratorium) 이후 담보상태에 있다. 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국가인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해결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2003년 이후 체결한 싱가포르, 호주, 중미 자유무역지대(CAFTA)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들 협정들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투자, 재정 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규율들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교역분야의 전자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영구히 부과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FTA상대국으로부터의 전송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전자전송에 대해서도 무관세조치를 규정한 것이어서, 추후 유사한 제도를 제3국이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미국과 호주간의 FTA에서는 전자전송뿐만 아니라 저장매체에 수록되어 교역 되는 전자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무관세조치 대상품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한-미FTA상에서는 저장매체 형태로 교역되는 전자물품에 대해서는 양국을 원산지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무관세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들은 상대국 제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국 제품에 대해서도 비차별원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물품의 제조·생산·출판·계약 장소나 제조·생산·출판·계약자 등을 기준으로한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싱가폴, EC-칠레, 중국-홍콩간 FTA들은 전자상거래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재 WTO에서의 잠정 무관세 조치 이외의 실제적인 규율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미래의 FTA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면적이고 전 세계적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양국간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두어 그 활성화를 유도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전송되는 전자전송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아직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조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업적 가치 이외의 문화적, 정치적 가치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음을 고려할 때, 제3국에게 까지 무관세 조치를 영구히 부과하고 비차별주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전송물에 더해 저장매체를 통한 전자물까지 무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무관세조치의 대상을 전자전송물에 한정 하되, 저장매체를 통한 전자물에 대해서는 저장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국간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물의 제조·생산·출판·계약 장소나 제조·생산·출판·계약자 등을 기준으로 전자물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인증,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과 관련한 필요규정들을 적절히 도입해야 하며,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적 논의 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입법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협의 조항을 FTA에 삽입함으로써 양자적 무역자유화 노력이 다자적 노력과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토 론 문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Electronic Commerce in FTAs

전자상거래는 오늘 국제컨퍼런스의 대주제인 IT와 FTA 관련하여,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FTA 규정 중 전자 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분석해주신 최원목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까지 많은 새로운 논점을 제시해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하나의 상거래 발달이라고 협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미 생활의 너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전자 상거래는 보편적인 거래 형태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기존의 상거래는 상품(goods)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과 질을 기준으로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이러한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상거래의 수단적 방법에 1차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탄생은 상품 또는 서비스질과는 별개로 하나의 계약 체결 형태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편리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발제에서도 다루고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실상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의 생산지 뿐만 아니라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와 같은 기존의 상거래 이외의 문제까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판매자, 그리고 생산자의 국적이 모두 다르고, 영업 또는 계약 체결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관세, 소비자 보호, 계약 분쟁 등 많은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달 국면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Free Trade Agreement도 전자상거래 부분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고, 한미 FTA 합의 과정과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는 각국간 이익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미 FTA협정문에서는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자상거래는 해당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디지털화된 저작물 분야에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을 많은 부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내는 중요한 논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전자적 거래 수단에 대한 논의였지만,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관한 논의는 상품 자체의 성질에 관한 부분까지 전자상거래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발제문에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고, 토론으로 임하는 저 역시 최원목교수님의 견해와 같이 제3국까지 비차별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FTA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에서는 잠정적 무관세주의를 선언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되는 기술과 상품의 성격에 따라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전자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FTA규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대처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 임할 때 미국은 많은 경제, 정치, 외교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FTA협상을 추진할 때, 중요한 모델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좀더 세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이지만, 기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미 FTA규정을 보면 해당되는 상품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과 부속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품에 대한 논의는 상품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와 FTA관련하여 상품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작물 이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중점으로 두고 분석해야하는 것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 론 문

권 현 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Electronic Commerce in FTAs 토론 자료

### I. 전자상거래 논의와 FTA

통상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의 출발은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현 관행을 계속하자는 미국의 제안에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통상 체제(multilateral trade system)에서 전자상거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WTO의 다자주의 체제는 명확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을 결정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대표되는 양자주의적 통상체제(bilateral trade system)가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규범의 형성에 핵심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의 핵심인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분류문제’(classification issue)에 대해 미국과 EC의 입장이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WTO를 통한 다자주의적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의 형성은 주로 미국과 EC가 체결하는 FTA에 전자상거래 장(chapter 또는 title)을 뒀으로써 양자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발표문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주로 미국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별도의 장(chapter)으로 구성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EC가 당사자인 FTA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은 서비스 장(title)의 일부로 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미국과 EC 양 측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FTA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소위 ‘디지털제품’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규율형태를 FTA 속에서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를 중심으로 규정하려는데 반하여, EC는 전자상거래 자체를 서비스의 일부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 흐름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율은 어느 것도 완벽한 모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II. 미국이 당사자인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율의 특징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당사자인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범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은 서비스 무역규범에 따른다. 둘째,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관세평가’는 기존에 체결된 FTA들 간에 통일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셋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의 수준과 정도는 현재 미국이 체결한 FTA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호주 및 한-미FTA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핵심쟁점 이외에도, 인증과 전자서명(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및 온라인 소비자보호(online consumer protection) 분야에서의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 Ⅲ. 한-미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쟁점: 비차별대우<sup>1)</sup>

일반적으로 국제통상법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핵심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비차별대우 원칙이다. 왜냐하면, 비차별대우 의무는 국가들, 또는 제품들 간에 동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 FTA에서 전자상거래 장은 디지털제품에 적용되는 비차별대우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미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조항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적 차원으로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교역에서의 모델규범(model law)으로 적용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나타난 비차별대우 원칙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 1. 의무의 대상과 범위

첫째, 비차별대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즉,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FTA에서 비차별대우는 1) 장소(place), 2) 사람(person), 3) 목적과 효과(aim and effect)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한-미FTA에서도 이러한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미국-싱가포르나 미국-칠레FTA 등과는 달리 한-미FTA에서는 장소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제3국의 개념이 삭제되었다. 이는 양자간 FTA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한-미FTA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

1) 권현호, “한-미FTA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75호, 2007년 6월, pp. 120-131 부분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3국의 무임승차(free-riding)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제3국 배제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문제와 함께 고려할 때 한-미FTA는 당사국의 국민에 한 정시킴으로써 역시 제3국의 무임승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미FTA에서의 비차별대우는 구조적인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의 적용 기준이 되는 각주의 규정이 동 제품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본문에서는 비차별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장’(stored) 및 ‘전송’(transmitted)되는 경우가 여전히 규정되어 있고, ‘상업적 최초 이용’에 대한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배포자’(distributor) 역시 존재한다. 결국, 한-미FTA 전자상거래 장은 비차별대우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해당 조치들을 열거하고 각주를 통해 자격요건을 규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나 새롭게 추가된 자격요건으로서의 각주는 오히려 본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향후 논쟁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2. 해석상의 문제

비차별대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와 사람에 대한 판단기준 이외에 ‘목적과 효과’ 부분 역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한-미FTA에서도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동 조항에서는 오직 디지털제품의 유형이 나타나는 장소, 즉 행위지에 대한 개념만 포함되어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개념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의 목적론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동 조항은 어떤 조치

의 ‘의도’ 내지는 ‘목적’을 해석에 고려할 것으로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이 국제통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미FTA에 동 조항이 포함된 근거를 희석시킨다. 따라서 한-미FTA에서 동 조항이 갖는 의미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해석함에 있어 의무조항인지 일종의 선언적 효과만을 갖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확실하며, 향후 논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IV. 다른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이 일방 당사자이고, 미국과의 FTA에서 다른 당사자였던 국가들(예: 싱가포르, 호주 등)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존에 미국과 체결하였던 전자상거래 FTA 문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의도하였던 양자주의, 즉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모델규범의 형성이라는 의도에 어느 정도 합치되는 결과가 지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FTA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EC가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EC가 제5차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우리나라와 EC의 FTA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는 포함된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FTA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EC와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는 EC의 기본 입장이 서비스에서 출발하고 있고,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가 취한 입장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title) 자체에 규정된 당사

국 의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간 협력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에서의 차이는 결국 미국과 EC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취하는 기본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동시에 WTO에서의 의견불일치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전자적 전송’의 분류문제(classification issue)로 귀결되는 문제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의견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발표자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규율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는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분류문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동 쟁점이 단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가와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다. 그러나 동 사안은 WTO와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를 보다 선명하게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할 핵심쟁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쟁점 이외에 FTA체제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율문제에 더욱 그 중요성을 갖는 분야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규정이 있다. 즉, 발표자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는 결국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있을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한-미FTA의 사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체제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의무인 비차별대우 관련 규정 역시 지금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체결된 다양한 FTA 중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는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얼마 되지 않는 핵심의무 규정이자 단순한 추상적 협력관계를 넘어 실제적 규범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장의 존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구체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김 두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한·미 FTA 협정 금융서비스장의 주요내용

2007년 4월에 양국 협상단 간에 타결된 한·미 FTA 협정 제13장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채택한 상대국의 금융기관, 상대국 투자자, 자국의 영토내의 금융기관에의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sup>1)</sup>

###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한·미 FTA 협정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영역내의 금융기관<sup>2)</sup>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disposition)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sup>3)</sup>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1) 한·미 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제13.1조(적용범위).

2) 한·미 FTA 협정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라 함은 그것이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 법률하에서 금융기관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고 규제 또는 감독되는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을 말한다. ‘타 당사국의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지사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정문 제13.20조(정의).

3) 협정문 제13.2조 제1항.

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sup>4)</sup>

## 2.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한·미 FTA 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대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상대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비당사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sup>5)</sup>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타결한 FTA들 가운데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한-EFTA FTA(2006.9.1. 발효)에서 싱가포르나 EFTA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국에 부여하여야 한다.<sup>6)</sup>

## 3. 금융기관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한·미 FTA 협정은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sup>7)</sup>

---

4) 협정문 제13.2조 제2항.

5) 협정문 제13.3조.

6) 한-칠레 FTA(2004.4.1. 발효)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제10장(투자), 제11장(서비스 무역), 제13장(기업인의 일시입국) 등]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한-ASEAN FTA(2007.6.1. 발효)는 상품무역협정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 (1) 수적 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형식에 의한 것이든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 (2) 수적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 요건의 형식에 의한 금융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가치에 대한 제한
- (3) 수적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 요건의 형식에 의한 금융서비스운영의 총수 또는 정해진 수적 단위의 조건으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산출의 총수량에 대한 제한 또는
- (4)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존재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

#### 4.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한·미 FTA 협정은 제13.8조에서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금융기관에게 특정 국적의 개인을 그 고위 경영자나 그 밖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상대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소수 구성원을 자국 국민, 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없이 이 내용을 수용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제13.9조의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의 규정을 근거로 부속서 III Section A에서 제13.8조에 대한 유보사항으로서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통화감독청(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이사 중 반수 이하에 대하여 국적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12 U.S.C. 72의 연방정부 수준의 기존 조치<sup>8)</sup>에 대하여 유보하고, 미국의 전체 주 및 컬럼

---

7) 협정문 제13.4조.

8) 조치(measure)라 함은 법, 하위법령(regulations) 또는 그밖의 조치들이다. 조치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i)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개정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조치를 말하며, (ii) 그 조치와 부합되는 권한하에서 채택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하부조치를 포함한다. Annex III Section A Introductory Note.



비아 특별주, 푸에르토 리코 준주의 모든 기존의 불합치조치들을 내국 민대우(제13.2조)·최혜국대우(제13.3조)·금융기관의 시장접근(제13.4조)과 함께 제13.8조에 대한 유보사항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 5. 예 외

한·미 FTA 협정은 제13.10조에서 통화·환율·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같이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제1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제14장(전기통신) 특히 제14.23조(다른 장에 대한 관계)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및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제12.1조(적용범위)제3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금자, 보험가입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가 그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보호를 포함하는 건전성을 이유로 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 규정에 의한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제14장(전기통신),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및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제12.1.3조(적용범위)의 어느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구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은 제11장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치에 관한 제11.8조(이행요건) 또는 제11.7조(송금) 또는 제12.10조(지급 및 송금)의 규정

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급 및 송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가 자사의 계열기업 또는 관련된 인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그 이익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안전(safety), 건전성(soundness), 완전성(integrity) 또는 금융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조항의 효력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의 방지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이 장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하위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같은 조건이 우세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II. 온라인 금융산업의 정의와 범위

온라인 금융산업이라 하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또는 결제증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 주체면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의 ‘주체’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으로 정의되고 있고,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제28조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그 밖에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

## 2. 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

전자금융거래의 ‘수단·방식’ 측면에서는 오프라인거래에서와 같은 거래당사자간 대면접촉 대신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라는 ‘전자적 방식’이 동원된다는 특성이 있다.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

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간의 계약은 통상 서면에 의하여 미리 거래준비단계에서 미리 체결되고 개개의 거래는 이용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sup>9)</sup>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17호). 거래지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sup>10)</sup>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이 법 제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동조 제2호).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된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나 전화에 의한 통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sup>11)</sup>가 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sup>12)</sup> 후자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로 보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그러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양 능력을 모두 갖는 점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되나 전화, 전신, 텔

9)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2007), 21면

10)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6), 35면.

11)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2호 (2003), 246면.

12) 정경영, 전계서, 21면.

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전달 능력만 있지 정보처리능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sup>13)</sup>도 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 개개의 전자금융거래가 주로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 다른 경우보다 그러한 경우에 전자거래의 효용가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적 장치로 예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 (비록 금융기관의 점포에 위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전자의 견해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상으로는 전자문서의 개념이 당연히 통신망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의 입장은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보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장치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음성정보 전달에 그쳤던 종래의 전화기의 기능이 폰뱅킹에 사용되는 것처럼 기기 자체의 기술 개발이나 다른 장치나 사람과의 연결에 의한 기능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적 장치의 예로 전화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도 전자적 장치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술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사용될 장치에 대하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이 법 제2조제8호) 등을 감안하면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전자적 장치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물론 전화기, 텔렉스, 팩스 등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3) 정경영, 전계서, 같은 면;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2003), 271면.

전자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할 때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래의 본단계인 개시·처리·종결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금융업무의 이용에 있어 채택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은 같은 조건의 고객 모두가 인정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하고 지급과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객체면 :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전자금융거래의 ‘객체’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이 법 제2조제3호).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제2조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상법』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제46조제8호) 상법상 금융거래는 수신·여신의 업무를 통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매개하는 은행거래만을 의미하며 보험, 신탁, 상호부금 등은 금융거래와 구별하여 규정되고 있다(제46조제15호, 제16호, 제17호).<sup>14)</sup>

1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58면; 손진화, 전게서, 9면; 정경영, 전게서, 7면.

#### 4.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구성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개념요소라 파악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이에는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가 속한다. 이와 달리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거래, 즉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시키는 거래인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전자화폐지급(electronic money payment)·선불전자지급(electronic pre-paid payment)·모바일지급 등을 의미한다.<sup>15)</sup>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제2조제1호)라고, ‘전자지급거래’를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제2조제2호)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정의는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이와 달리 최광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파악하여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즉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를 전자금융거래로 파악하는 입장<sup>17)</sup>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의 전산화는 당사자

15) 손진화, 전계서, 7면.

16) 손진화, 전계서, 같은 면.

1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4.3), 3면; 정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sup>18)</sup>

요컨대 온라인 금융산업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즉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업자의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산업이다. 금융거래 가운데 전자적 수단과의 친화성이 가장 큰 것은 은행거래를 포함한 지급거래로 생각되고, 증권거래도 인터넷 증권거래와 주식 등의 전자등록 양자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면 보험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전자거래의 대상으로 되기에 불편한 점<sup>19)</sup>이 있어서 보험계약 자체보다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계약 자체의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0)</sup>

### Ⅲ. 온라인 금융산업에 미치는 한·미 FTA 협정의 영향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 FTA협정은 그 내용으로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온라인 금융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므로 한·미 FTA 협정이 온라인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

경영, 전계서, 10면 주14.

18) 정경영, 전계서, 11면(다만 이 입장은 이러한 정의를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명명하고,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의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명하고 있다).

19) 손진화, 전계서, 18-19면(상대적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전문가인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거래의 빈도면에서도 은행거래나 증권거래와 달리 “보험계약은 1회성을 띠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 손진화, 전계서, 같은 면.



법적 대응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 사항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는 일방 당사국에는 있으나, 타방 당사국에는 없는 금융상품·서비스<sup>21)</sup>를 말하는데,<sup>22)</sup> 새로 생성된 온

21) 협정문 제13.20조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라 함은 금융성(financial nature)을 가진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와 모든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기타의 금융서비스 그리고 금융성을 가진 서비스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다음 각자를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

(a)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i) 생명보험

(ii) 손해(non-life)보험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중개인과 대리상과 같은 보험중개 및

(d) 컨설팅,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서비스와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을 제외)]

(e) 예금 및 그밖의 요구불자금의 수신

(f) 소비자신용, 담보대부(mortgage credit), 팩토링 및 상업거래의 파이낸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g) 금융리스

(h) 신용카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 외의 모든 지급 및 송금서비스

(i) 보증 및 약속

(j)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자신의 계산 또는 고객의 계산으로 하는 환 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거래

(i) (수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하는) 화폐시장상품

(ii) 외환

(iii)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iv)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v) 양도성 증권

(vi) 금피를 포함하는 그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k)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배정 및 그러한 발행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관여

(l) 자금중개

(m) 현금 및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기금관리, 보관, 공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n) 증권, 파생상품 및 그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서비스

라인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한미양국은 한·미 FTA 협정에서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sup>23)</sup> 협정문 제13.4(b)조는 협정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존재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협정문 제13.6조 제2문에서는 이 제13.4(b)조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협정문 제13.6조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13.6조의 규정이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상대국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외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승인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제출된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한다.”는 각주가 삽입되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되는 제도적 및 법적 형식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sup>24)</sup>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관련법에서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국경간신금융서비스공급은 불허하고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국내 금융 감독 당국이

(o)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 및 금융데이터처리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p) (e)항 내지 (o)항에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밖의 부수금융 서비스. 이는 신용조회,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다.

22) 협정문 제13.20조 (정의).

23) 협정문 제13.6조 제1문.

24) 협정문 제13.6조 제2문.

신금융서비스의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협정문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authorization)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는 건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25)</sup> 일반적으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접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것이므로 국내 상업적 주재, 즉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면서 금융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보험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요건 등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sup>26)27)</sup> 외국에서 개발된 금융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신금융서비스의 허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sup>28)</sup> 금융규제당국은 신금융서

25) 협정문 제13.6조 제3문.

26) 동지, 심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6) 69면.

27) 그러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한미 FTA 금융협상결과 및 시사점(이하 보도자료), (2007.4.10)에서는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미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고(예: ①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② 국내법에서 국경간거래를 불허하는 경우 개방범위에서 제외), 다만,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법개정 검토는 필요할 수 있고(예: ①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 ②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금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이외의 하위규정은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 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sup>29)</sup>에서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데,<sup>30)</sup> 금융상품·서비스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관련법에서 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시판·제공이 금지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서비스 규정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및 보험 관련 신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한·미 FTA 협정상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또는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은 (i)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상대국의 영역안으로의 금융서비스, (ii)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상대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또는 (iii) 일방 당사국의 국민(national)에 의한 상대국 영역 안에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sup>31)</sup> 한·미 양국은 내국인 대우와 합치하는 조건하에서 상대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가 부속서 13-A에서 규정된 무역관련보험·재보험·보험컨설팅·보험부수서비스(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또는 금융정보 제

28)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8면.

29)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부칙 제1조(시행일).

30) 이 법 제3조 내지 제5조.

31) 협정문 제13.20조 제2항 제1문.

공과 전달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금융 데이터처리·금융관련소프트웨어 제공 및 전달, 은행 및 그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중개를 제외)<sup>32)</sup>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sup>33)</sup>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32) 부속서 13-A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만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서비스 및 보험관련서비스 중에서

(4) (a) 해상운송, 상업항공,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에 관한 위험의 보험 (이는 당해 보험이 운송되는 물건, 물건 운송수단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경우여야 한다.) 및 국제통과물건에 관한 위험의 보험;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컨설팅(consultancy)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전략 또는 상품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위험 평가[위험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어렵거나 비사한 위험에 관한 위험분석, 위험예방 또는 전문(expert)자문을 말한다.],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그리고;

(d) (a)항 및 (b)항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의 보험에 대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c)항에서 정해진 보험중개인 및 대리상과 같은 보험중개(insurance intermediation),

(5) 컨설팅,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은행서비스 및 보험을 제외한 그밖의 금융서비스 중에서

(6) (a)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명확히 하기 위하여, 6(a)항에서 정해진 금융정보는 일간발간물에 포함되거나 일반 독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 금융 및 사업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제공과 전달 (6(a)항과 6(b)항의 내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적어도 2년이내에 적용된다.);

(c)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에 관련한 신용등급부여,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기금관리, 간접투자수단평가, 그리고 채권평가의 부여에 대하여 한국이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2007년 3월 현재 한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의 영역외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공동투자제도(collective investment scheme)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평가는 한국의 영역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약속은 (i) 한국내 기업의 신용등급부여, 또는 (ii) 한국내의 여신 그밖의 금융거래 목적상의 신용조회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한국이 이들 서비스의 일부의 공급을 허용하면 향후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33) 협정문 제13.5조 제1항.

제1항의 내국민대우의무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sup>34)</sup>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인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국 공민에 대하여 상대국의 국경간 금융 서비스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sup>35)</sup> 이 의무는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대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sup>36)</sup>

협정상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sup>37)</sup> 따라서 예컨대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가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형식이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협정문 제13.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형식의 서비스 공급은 전술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거나 미국의 투자자인 경우 협정문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국의 금융기관인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각각 처리되게 된다.

국경간거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단기적 자금이동 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화 가능성,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상업적 주체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하여 금융서비스 노하우 이전효과 기대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

---

34) 협정문 제13.2조 제3항.

35)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1문.

36)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2문.

37) 협정문 제13.20조 제2항 제2문.

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전문가 또는 대형기관들간의 거래에 한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sup>38)</sup>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 해상 및 운송보험, 재보험)는 현재도 국경간 거래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sup>39)</sup>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예 : 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의 국경간거래를 새로이 개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제1항과 합치되는 한도에서 이 의무의 목적상 사업수행과 대행(solicitation)을 정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관련금융법률에 우리나라에 국경간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자가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는 역내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국가(home country)와 이용국가(host country) 가운데 어느 쪽이 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국가는 당해 금융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국가이고 서비스 이용국가는 서비스를 제공

38)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7면.

3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40) 협정문 제13.5조 제3항.

받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로서 모두 당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국제보험감독협회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공국가가 주된 감독자인 것으로서 이해한다고 한다.<sup>41)</sup> 그리고 이것은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제공국가에서 효과적인 전전성 규제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금융당국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sup>42)</sup>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한미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루어진 규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요청시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당국간 채널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 즉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내거래와는 달리 기업고객이 아닌 일반소비자의 보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고객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경간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 문제되는 바와 같이 비대면성, 원격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41)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oss-Border Electronic Banking Activities (July 20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Principles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Activities on the Internet (October 2004).

42) 심영, 전계논문, (2006) 68면.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과 서비스 공급자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사항, 금융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 국가, 금융서비스영업허가의 내용(예 : 은행법, 보험업, 컨설팅업), 분쟁해결의 방법과 절차(예 : 준거법, 분쟁발생시 연락처 및 방법) 등의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sup>43)</sup> 여기에서 금융규제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등록제·인가제·신고제, 기업에 대한 주기적 보고의무, 행정당국의 조사권한의 법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업의 재무상황, 대상 거래내역(예 : 수출입거래, 기업구조조정, 보험 등) 등의 기업비밀이나 내부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충실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

한·미 FTA 협정은 구체적 약속으로서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처리가 금융기관의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또는 그밖의 형식에 의한 정보의 자국의 영역내외로의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44)</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약속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sup>45)</sup> 이러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미국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

43) 동지, 심영, 전계논문, (2006) 69면.

44) Annex 13-B Section B 1st clause.

45) Annex 13-B Section B 2nd clause.

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은 하되, 그 경우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sup>46)</sup> 또한 양국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정도만큼 (a) 계약체결확인 및 진술을 포함하는 거래 및 거래처리기능, (b)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개발을 포함하는 기술관련기능, (c) 조달, 여행주선, 우편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소 공간관리 그리고 비서서비스를 포함하는 행정서비스, (d)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활동 등의 일정한 기능을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한 주사무소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금융정보의 위탁·처리를 위한 이전은 대체로 전자적 형식으로 행해질 것이므로 온라인 금융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이 얻게된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의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맡겨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경우 금융소비자인 우리 기업들의 대출정보 처리 등을 미국 금융회사의 본점에 맡기게 되면 미국 본점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유출된 정보를 국내 기업고객에 대한 인수·합병 등에 전용할 가능성,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일반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48)</sup> 이 경우에는 전술한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시 우려되는 것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이 우려된다. 즉 금융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자체는 물론 그 위탁 금융기관과 거래한 고객(기업과 자연인을 모두 포함한다)의 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충실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책임을

46)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47) Annex 13-B Section C.

48) 한겨레신문, “정부 FTA 금융협상 대응방향 들여다보니”.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 등에 거점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국내법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데이터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외국의 IT시설을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내 금융 IT기업에게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시장에서 해외의 IT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하여 IT기업들은 국내 금융 IT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sup>49)</sup>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금융법률에서 ① 개인 정보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을 위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sup>50)51)</sup>

#### 4.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한·미 FTA 협정은 제13.11조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였다.

49) 디지털데일리, “한미FTA 여파 연간 3조원 금융IT 시장 사라지나”.

50)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51) 한·미 FTA 협정에서는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 협정문 제13.10조.

한미 양국은 금융기관의 행위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외국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과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금융서비스의 규제적 투명성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sup>52)</sup>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일반적 적용 수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보장한다.<sup>53)</sup> 양국은 제21.1조 (공표)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신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a) 자국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당해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하고, (b)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 대하여 그러한 채택하려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c)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하여야 한다.<sup>54)</sup> 양국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sup>55)</sup> 양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즉시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sup>56)</sup>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sup>57)</sup>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포함한 요건을 공표하여야 한다.<sup>58)</sup> 양국의 규제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

52) 협정문 제13.11조 제1항.

53) 협정문 제13.11조 제2항.

54) 협정문 제13.11조 제3항.

55) 협정문 제13.11조 제4항.

56) 협정문 제13.11조 제5항.

57) 협정문 제13.11조 제6항.

58) 협정문 제13.11조 제7항.

우에는 신청의 진행상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당국이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sup>59)</sup>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규제당국은 1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up>60)</sup> 규제당국은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sup>61)</sup>

또한 미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로 추진중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 채택과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sup>62)</sup>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은 실행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여야 하고, 관련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제공한 구술의 행정지도를 서면화하여 제공하고 그것을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 배포할 것, 그리고 기 행해진 행정지도의 심사과정에서 한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63)</sup> 이러한 것은 자국에는 존재

59) 협정문 제13.11조 제8항.

60) 협정문 제13.11조 제9항.

61) 협정문 제13.11조 제10항.

62)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설명자료.

하지 않는 행정권의 발동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이관하는 것,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며 내부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것,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적기시정조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어느 조항도 당사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재무사항 및 개별 고객의 계좌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공시가 법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특히 명시하고 있다.<sup>64)</sup>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융정책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 IV. 결 어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i) 재원조달 채널 다양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감소, ii)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iii)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및 합리적 가격 형성, iv) 국내기업의 경영 투명성,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 v)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개선, vi) 예금자 및 투자자의 위험분산 기회 제공에 따라 금융산업의 건전

63) Annex 13-B Section D.

64) 협정문 제13.7조.

성 및 안정성 제고, vii) 국내 규제감독의 선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i)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ii)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협의 전이 가능성 증대, iii) 서민금융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 iv)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v)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지배권의 장악 등이 거론된다.<sup>65)</sup> 물론 이러한 것은 관련 금융시장이나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등의 금융환경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대효과들이고 실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한·미 FTA협정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은행, 보험,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긍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v, vi,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iii, iv 등의 사항은 전혀 발현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발현되는 영역의 판도가 제한적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전술한 것처럼 한·미 FTA 체결이 온라인 금융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있는데, 각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하여 이하에서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신금융서비스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서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

65) 김자봉외,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10면.

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간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있어서 제공자측에서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장치, 정보처리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을 금지하고, 해외의 정보처리 수탁기관의 허가요건과 그에 대한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인정,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허가요건과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 FTA의 영향 가운데 하나로 전술한 금융서비스의 규제적 투명성 촉진과 예측가능성 증대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의 지배구조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산업 환경조건의 하나이다. 한미 양국의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도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sup>66)</sup>

---

66)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에서 한미 양국은 소비자보호와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관행을 금지·적발·기소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규제기관에 대하여 조력하기 위한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양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그러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며,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의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비망록 또는 양해와 같은 국제협력메카니즘을 통한 지속적 노력을 촉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Annex 13-B Section G.



## 토 론 문

김 명 민  
(전국은행연합회 차장)

###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 1. 온라인 금융산업의 범위

○ 온라인 금융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로 보고, 동법 제2조제8호의 전자적장치등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할 경우 현재 은행 거래의 약 80%가량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생할 금융분쟁 또한 전자금융거래법등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 2. 금융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 은행산업의 실무 중심으로

○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과 관련하여 동 협상의 타결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협상 초기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금융서비스도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하여 거래 규모나 조건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은행업권의 경우 개방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미 주요시중은행의 지분의 상당 부분이 외국자본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자본

의 차별이 관련법상 전무한 상태임

- 은행연합회 회원사중 시중은행\*의 경우 총7개 은행중 3개은행이 외국계은행이며, 나머지 4개 은행중 민영화를 꾀하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은행의 최대주주 및 지분비율을 고려할 경우 내·외국계 은행의 구분 실익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 7개 시중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은행

-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발표시 외국계은행을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이사수가 이사회 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은행’으로 분류함

○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후선 업무 위탁 허용과 관련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바, 이 분야와 관련하여 감독기구의 감독규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정보 해외이전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업계에서는 정보처리비용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추후 감독기구등에서 감독기구의 접근가능성등 고려하여 효과적인 감독방안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 법적 대응과 관련한 검토사항

○ 한미 FTA의 국내 은행산업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FTA는 규제당국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금융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금융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실무적으로는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07.7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의 제정이 FTA와 결합하여 국내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임

○ FTA가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바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6개 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전체 금융산업의 규율체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6개 법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합법이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고, 업무영역을 확대를 통한 금융투자업간 경쟁을 유도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련 금융법도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등 개정을 요하며, 나아가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종합적 한미 FTA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업종간 업무 구분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토 론 문

김 명 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개인 금융 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 1. 들어가며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 온라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 그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FTA의 정확한 문제점과 성과는 향후 시장의 변화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그런만큼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는 일도 지난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FTA의 발효와 함께 우리 온라인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여기서는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의 문제

금융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금융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법과 미국의 법이 상이할 경우이다. 즉, 만일 미국에서의 정보보호 법제가 우리의 정보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 유출된 개인의 정보의 보호를 어떠한 수단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국경간거래에서만 문제될 것인 바, 만

일 (국경간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법인이 우리 나라에 현지 법인을 설치할 경우, 그러한 현지 법인은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법인이므로 당연히 이를 통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우리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직접 국경간 거래에 의하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개인 금융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우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국경간 거래의 범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FTA Annex 13-A<sup>1)</sup>의 규정이 비교적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정보의 거래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이 허용되는 거래의 범위로 명시<sup>2)</sup>되고 있어서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즉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해외로의 정보 이전의 가능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

1) Article 13. 5: CROSS-BORDER TRADE

1. Each Party shall permit,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rd national treatment,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o supply the services specified in Annex 13-A

2) FTA. Annex 13-A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6. Article 13. 5. 1. applies only with respect to:

- (a)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 (b)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o)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13. 20., by no later than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p)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13. 20.

###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의 차이점

#### (1)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자금융법 제26조는 일반적인 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전자금융법의 제정 이전에는 전자금융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던 것이 전자금융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통합적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생긴 것이다.

다만, 동조는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이나 금융 기관의 감독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한적 공개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 정보의 이용은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제한되고 있어 개인 정보의 사적 이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 (2) 미국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the Gramm-Leach Bliley Act에서 개인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화를 위한 규칙으로 16CFR<sup>3)</sup>

3) Code of Federal Regulation, Commercial Practices

Part 313이 마련되어 있다. 동 규칙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동 기관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통지(notice)할 의무를 지게 된다.<sup>4)</sup> 특이한 점은 이러한 통지의무가 강제될 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정보의 대상인 개인에게 이전된 정보의 삭제 혹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Opt-out)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금융 기관 간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있는 바, 물론 사후적으로 자신의 정보의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개인은 이전된 정보의 삭제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미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말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Opt-out 권리에 대한 예외 규정<sup>5)</sup>마저 존재하는 바, 금융기관이 데이터처리나 예금 서비스와 같은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회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나 고객 데이터를 금융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외부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때 등에는 Opt-out 권리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 4. 법적 대응방안의 모색

한미 FTA Article 13. 5. 3.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거래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sup>6)</sup>, 만일 이러한 등록이 행정법상의 허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입법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규정에

4) 16CFR 313. 4.

5) 16CFR 313. 13., 14.

6) Without prejudice to other means of prudentia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 Party may require the registration of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nd of financial instruments.

대하여 앞서의 발표문<sup>7)</sup>에서는 “금융관련법률에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자가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동 규정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비록 법문에서는 단순히 Registration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FTA의 원칙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만 보장이 된다면 각국의 국내 입법에 있어서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인 이상, 등록절차를 규정하면서 국내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정한 제한의 설정 역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개입이 아닌 사전 동의를 요하고 있는 우리법에서의 보호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정보 대상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할 의무가 들어가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의 채택을 등록시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할 의무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편입되게 되어 계약상의 주요의무를 구성하게 되므로 분쟁의 발생시 준거법과 관할법원의 상이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음과 아울러 별도의 법 집행상의 비용 없이 우리법에서의 원칙을 역외에서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어

FTA의 체결에 따라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앞

7)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김두진



서의 발표문<sup>8)</sup>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처리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와 미국과의 법규 차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에게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국경간거래를 등록할 때 사전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의 원칙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약관)의 채택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

8) *ibid.*

# SW산업에서의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안 연 식

(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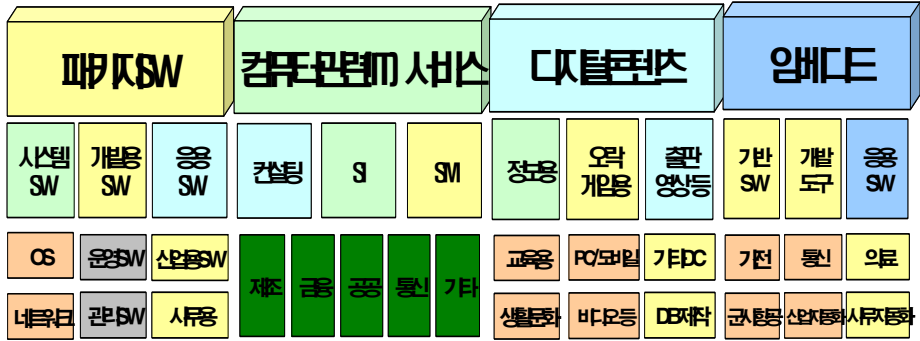
○ 향후 지식사회, 정보사회로 변환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통산업에 있어서의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IT서비스와 지식 산업 포함)에 있어서 영향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파급 효과를 추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미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 분석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이에 대한 설치와 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서비스(IT서비스), 임베디드SW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



(자료: 백영란, SW산업발전방향- 수출확대방안, 2005년 발표자료)

○ 우리나라의 총 SW산업 생산액은 약 18.8조원(2006년)규모이며, 수출은 이중 약 3% 정도, 수입은 약 2%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생산액은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거의 2배의 성장,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에 7.6배가 증가한 것임. 다만, 아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서 수행되는 비중이 높음.

○ 또한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적자폭이 크고, 컴퓨터관련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서비스에서는 흑자를 나타냄.

○ 전체 무역수지 면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교역국을 분석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는 동남아국가가 주교역국임.

○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액 규모는 평균 43% 정도의 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1>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액 규모

(단위 : 천US\$)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패키지 소프트웨어	63,175	108,038	86,559	75,688	113,170	114,490
컴퓨터 관련서비스	77,798	125,550	299,269	399,041	432,035	477,991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14,863	56,918	84,772	118,447	285,168	596,082
합 계	155,836	290,506	476,600	593,176	830,373	1,188,563
(증가율, %)	2.75	86.4	62.0	26.0	40.0	43.1

(자료: KIPA, 05년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액에는 임베디드SW 수출액포함)

○ 한·미의 소프트웨어 교역현황에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부문의 교역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8,400억원의 무역적자를, 미국은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수지 비교

(단위: 백만원, 백만달러)

구 분	한 국			미 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SW	301,510	1,140,975	-839,465	10,481	1,216	9,264
IT서비스	796	4,299	-3,503	4,475	967	3,507
계	302,306	1,145,274	-842,968	14,956	2,183	12,713

(자료: 한미간 SW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KIPA, 2005)

SESSION 1

○ 소프트웨어 수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액의 비중이 15.5~22.1%이며,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대미 소프트웨어 수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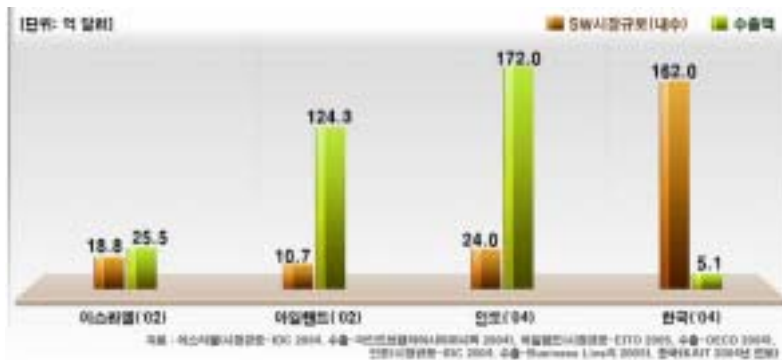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

국 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25,321 (29.3)	23,564 (31.1)	24,658 (21.8)	24,856 (21.7)
IT서비스	38,213 (12.8)	58,001 (14.5)	79,204 (18.3)	89,687 (18.8)
디지털 콘텐츠	17,015 (20.1)	10,398 (8.8)	79,793 (28.0)	103,188 (17.3)
계	80,549 (17.1)	91,963 (15.5)	183,655 (22.1)	217,731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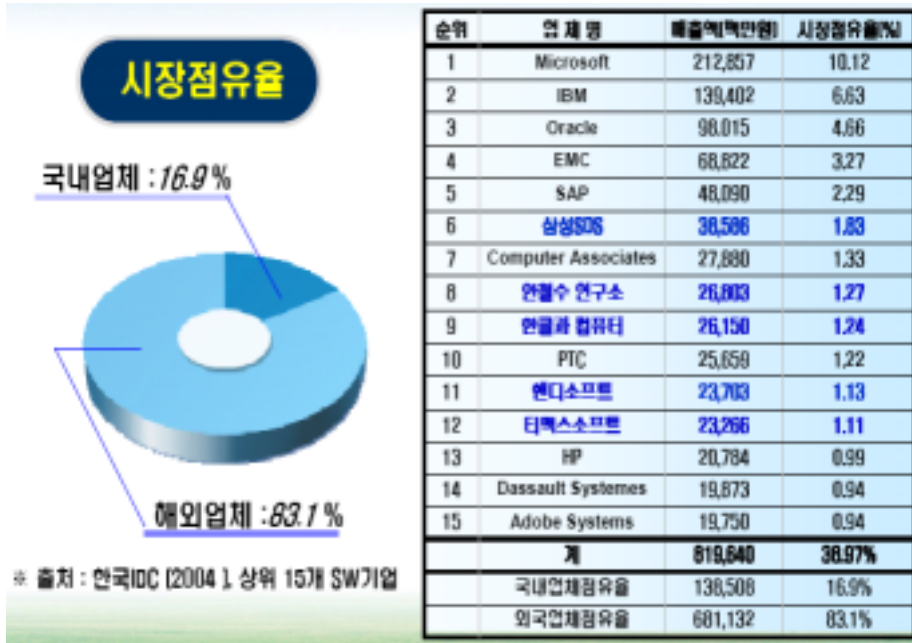
(자료: KIPA,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실적, 2006; 2005년은 북미지역 수출액)

○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 내수기반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

<그림 2> 소프트웨어 선진 3국과의 내수 및 수출규모 비교



<그림 3>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해외업체 점유율



○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0.9~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세는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9%를 전망됨.(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 12).

○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세계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8개에 불과하며, 보안(Security), ERP를 제외하면 미국 등 해외기업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은 수준으로 특히 운영체제(OS), DBMS 등 기반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한 수준임..

<그림 4>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유형별 국내업체 비율



(자료: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분석, NCA, 2004. 12)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수출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만을 놓고 보면 FTA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할 것임.

<표 4>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천US\$)

구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2004	2005P
패키지 소프트웨어	3,842,502	5,093,622	91,911	61,918	392,751	474,240	-300,840	-412,322

○ IT 서비스 부문은 국내 사업에 대해서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

이 약 60~70% 정도로서 높은 편이며, IT서비스 부문의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면서도 전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로 점유되고 있음. 국내의 IT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 업체의 비중이 높지만,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중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이며, 국내의 IT컨설팅 서비스에서도 미국 기업이 약 60%를 차지함.

<표 5> 국내 상위 10대 IT 서비스 기업 매출액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순 위	회사명	2003년	2004년	성장율(%)
1	삼성SDS	10,221	10,622	3.9
2	LG CNS	7,347	7,815	6.4
3	SK C&C	5,234	5,633	7.6
4	한국 IBM	4,258	4,689	10.1
5	한국 HP	2,076	2,131	2.6
6	포스데이타	2,187	2,075	-5.1
10위까지 전체 소계		37,445	39,558	5.6
미국기업 합계		6,334 (16.9%)	6,820 (17.2%)	

(자료: IDC, 2004, & 2005, HW 매출 및 애플리케이션 유통 매출은 제외)

○ IT서비스 분야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삼성SDS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 국방부 산하 72개 전산센터(DOIM)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 전산센터’에 대한 IT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2003년 10월 초. 5년간 총 3000만달러 즉, 360억원의 계약 규모), 미국시장에 진출 전망을 높이고 있음(KIPA, 2003. 12).



## SESSION 1

○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는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빌려 쓰는 IT 임대서비스 산업으로, 예를 들면 그룹웨어나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등은 물론 자영업자의 회계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개념으로서, 많은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향후 소프트웨어를 CD형태로 구매하던 형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외형적인 큰 차이가 있어 교역 형태의 변형이 예측되는 분야임.

○ 국내 디지털 콘텐츠 해외 수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3%나 성장하는 등 급성장 하고 있으며, 아직은 수출 규모는 미국의 1/18 정도 규모에 그치는 수준이나, 게임영역에서 실적이 우수함.

<표 6> 디지털콘텐츠 수출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4	2005	성장율
계 임	251,423	336,281	33.8%
애니메이션/캐릭터	60,024	63,106	5.1%
디지털 영상	10,681	18,842	76.4%
정보콘텐츠	29,208	26,823	-8.2%
e-러닝	11,290	12,243	8.4%
디지털 음악	14,183	16,846	18.8%
전자출판	3,716	3,478	-6.4%
콘텐츠 거래 및 중개	-	1,495	-
솔루션	38,171	35,608	-6.7%
합 계	418,696	514,722	22.9%

○ 디지털 콘텐츠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송, 통신부문과 함께 향후 디지털 통합(digital convergence)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고려되어야 함.

○ 지적재산권 관련으로서, 핵심저작권산업은 출판관련 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라디오 및 TV방송, 광고, 동영상, 공연 예술, 레코드 및 테이프를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의 성장세가 막대한 실정임.

### 3. 한미FTA 협상 영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 우리나라는 UR협상을 통해서 1996년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발효된 ITA(정보기술협정)에도 소프트웨어가 무관세 품목으로, 또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UR협상에서 전면 개방을 실시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된 상태에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영역을 분석했을 때, 17개 협상분과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영향이 제일 큰 분야는 지적재산권,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 그리고 정부조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7> SW 산업의 영역 및 FTA 협상영역

SW 산업 영역	주요 사업 내용	FTA 협상영역			
		상품 무역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정부 조달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공급	▷	●	◁	●
IT서비스	정보전략계획(IT)컨설팅			●	●
	소프트웨어 개발	▷		●	●
	운영아웃소싱			●	●
디지털콘텐츠	DC 개발/구축/서비스	▷	●	◁	●
	DB 구축/서비스	▷	●	◁	●

(주) ●: 주요 대상 영역, ▷: 관련이 되는 대상 영역

○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상품 무역이 대부분이며 일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무역이나 국제적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통신 및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와 동시에 전달매체(예를 들면, CD 등)를 통해서 물리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디지털재화로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재화 또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오락/취미, 뉴스매체, 도서/도서관자료, 시청각/원거리통신(웹TV/라디오 전송, 인터넷전화서비스, 전자메일/음성메일 등), 정보기술제품(온라인정보, 자료처리/저장/검색, 소프트웨어, CD/DVD 등)이 직접적으로 거래 대상제품이 되며, 간접적으로는 전문서비스(법률자문/문헌, 건축, 회계/세무상담, 기술자문, 의료상담 등), 컴퓨터와 기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치/유지보수 자문, 원격 데이터처리,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하는 웹사이트구축/유지보수) 등에 관련될 수 있음.

<표 8> 통신/전자상거래 부문의 한미 협상이슈

한 국	미 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제품 및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을 허용하고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요구 -한국정부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부과를 하지 않도록 확약을 요구 -한국정부가 통신매체와 연계된 디지털 제품의 관세평가를 콘텐츠가 아니라 매체의 가격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인증을 요구

○ 디지털 제품의 관세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온라인 거래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높지는 않지만 대체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경 또는 영구화가 제기될 수 있음. EU에서는 관세부과의 유예에 찬성하지만 무관세의 영구화하는 것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관세문제보다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보완을 요구함.

○ 통신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도 및 대책을 요약하면,

첫째,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패키지,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로 볼 수 있으며,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지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거래형태에서는 소비자 보호, 전자인증, 경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셋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현재도 무관세이지만, 기타 음악, 게임, 영화 등의 디지털 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관세는 최소한의 기간내에 무관세로의 전환, 영구적인 무관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며,

넷째, 상품무역이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역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지 법인이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일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소나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의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시장은 법률, 회계, 세무, 금융, 교육, 의료,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광의적으로 보면 농수산(1차 산업) 및 제조업(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전체를 의미함.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WTO 서비스협상을 위해 구분된 국제연합(UN)의 표준상품분류코

드(CPC)에 기준하여 사업서비스분야에 속함. SW산업은 사업서비스 중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의 분류에 속하며,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구현,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베이스, 기타의 항목들이 포함됨.

○ FTA와 관련하여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에서 서비스 부문은 다음 4개 모드로서 구분하여 정의됨.

&lt;표 9&gt; GATS의 4가지 서비스 공급모드

서비스공급자 주재여부	구 분	내 용	예 시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자 영토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 자체만의 국경 이동 -웹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의 고객에게 원격 서비스 제공
	Mode 2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소비자의 이동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하여 서비스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자 영토에 주재함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자본의 이동 -미국의 서비스 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영업(지사, 지점 설치)
	Mode 4 (자연인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노동의 이동 -미국 서비스 인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컨설턴트)

(자료: 김종선 외 2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pp. 22, 수정보완)

○ 위의 유형분류를 적용하여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서비스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ASP, 웹서비스 등), 외국 솔루션구매,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투자지분 참여, 전문가 채용, 전문가의 초빙 컨설팅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모든 모드에서 전면 개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FTA의 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임.

<표 10>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양허 모형분류

구 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비 고
Mode 1 (국경간공급, Cross-border)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ASP, 웹서비스 등)	개방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외국 솔루션구매	개방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투자지분 참여	개방
Mode 4 (자연인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전문가 채용, 전문가의 초빙 컨설팅 서비스	실제 개방된 상태

○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IT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시 이를 수주하려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입찰자격 요건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무역장벽은 없는 상황임.



&lt;표 11&gt; 한국의 GATS에서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 분류

분 야	공급방식별 양허 여부	참고 사항	
		중국	일본
UN CPC : 841 컴퓨터 설비자문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Mode 1, 2, 3: ○	Mode 1: ○	Mode 1, 2, 3: ○
UN CPC : 842 소프트웨어 구현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 Mode 3: △	Mode 1, 2, 3: ○
UN CPC : 843 데이터 프로세싱 (Data processing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UN CPC : 844 데이터베이스(Data base services)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UN CPC : 845, 849 기타(Other)	Mode 1, 2, 3: ○	Mode 1, 2, 3: ○	Mode 1, 2, 3: ○

(주, ○는 전면개방, △는 부분개방, ×는 미개방을 의미, 일본은 컴퓨터예약 시스템만은 미개방, 공급방식 4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미개방, 자료: WTO(2005. 6. 24), TN/S/O/JPN/Rev.1를 이용하여 정리)

○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조달규모는 3,468억달러, 10,511천건으로 (2004년 기준)으로서, 건당 평균 계약규모는 3만 3천달러 수준임. 이 중에서 민수부문이 1,178억달러, 국방조달이 2,289억달러로 전체 연방

정부 조달시장의 각각 34.0%, 6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방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체 시장규모 증가율은 전년대비 금액기준 13.51%을 나타내고 있음.(임성주, KOTRA, 2005)

○ IT 부문만을 보면, 정부조달이 2006년 기준으로 약 1,0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며, 연방정부에서 약 56%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약 44%로 구성됨. 연방정부는 2005년도에 622억 달러, 2006년에는 635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914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방부의 IT예산은 317억 달러로서 전체 IT관련 정부조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함. 기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IT 시장규모는 2006년 498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598억 달러, 2011년에는 715억 달러로서 약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FCW.COM, 2006.4.24).

<표 12> 미국연방정부의 IT 투자규모 예상액(2005~2007)

(단위: 백만 달러)

구분	FY 2005	FY 2006	FY 2007
국방성	31,530	31,662	30,710
기타 중앙정부부처	30,698	31,869	33,137
연방정부 합계	62,228	63,531	63,847

(자료: Report on IT Spend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for FY 2005~2007, OMB, 2006. 3)

○ 한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정부조달 실적은 연간 10억달러 내외로서, 전체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의 0.3%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수치는 2005년도에 해외 수출액 중에서 공공부

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된 평균 8.8%의 수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3> 미본토 외(해외 및 미국령) 조달 실적(2004년 기준)

국 가	금액(Million \$)	연방정부 조달총액 대비 비율(%)
영 국	2,186	0.63
독 일	1,127	0.32
일 본	896	0.26
한 국	893	0.26
캐나다	895	0.26
해외에서의 조달총액	27,627	7.97
연방정부 조달총액	346,768	

(자료: Federal Procurement Report FY 2004, KOTRA, 임성주, 2005, 재인용)

○ 정부조달 영역의 주요 이슈는 내국 기업 선호, WTO 정부조달 협정에 다수의 예외를 두어 외국 기업의 참가를 막는 것도 무역장벽의 하나이며,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무역장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 FTA 적용범위가 미국내 50개 주정부,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정책적으로 기술중립성과 개방형표준에 대해서 주장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제기하고 있어 개념 자체가 모호한 형편으로 이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경향임. 또한 정부조달에서 국제입찰에 적용하는 하한선도 이슈중의 하나로 참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정리하면, WTO 정부조달 협정에서 비차별

<표 14> 한미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의 서술식 의견

법·제도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내 용	비 고
<p>o 미국의 고객사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소싱 공급에 관해 인력파견이 미국내 불법노동으로 간주되므로 Working Visa를 받는 절차와 기간이 아웃소싱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비자문제의 개선 요구.</p>	<p>예를 들면, 경력이 4~5년 된 개발자들도 당사로 이적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또 미국 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따지는 등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자가 없는 인력은 미국 국경 인근 캐나다에서 원격 개발을 진행 한바 있음</p>
기술인력 상호교류(자격의 상호인정)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p>o 현재 MOUS와 같은 미국 기준의 표준자격증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에서 부여하는 유사한 형태의 공인 자격증 제도도 미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p>	
<p>o 미국 사람은 한국비자 없이 한달간 국내체류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중남미 출장을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서 가능 경우(당일 Transit)도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함.</p>	
<p>미국의 요구(영구 무관세와 포괄적인 비차별 조항:내국민 및 최혜국)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p>	

SESSION 1

<p>o 비차별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 역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 기관 등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만을 고용하는 등의 차별적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조건부 수용, 혹은 조건부 허용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p> <p>o e-Government, 전자결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과거와 같은 단품 소프트웨어를 훨씬 넘어서 정부 및 사회 인프라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p>	
<p>미국 요구사항 허용 시 한국의 요구사항</p>	
<p>o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p>	
<p>한·미 FTA관련 업계의 기타 의견</p>	
<p>o 미국은 연방 및 주 또는 하부행정기관을 통한 정부구매시 "Buy America"법에 의해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음</p> <p>o 특히,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입찰 배제, 로컬 업체에 대한 가격특혜 제공 등의 차별은 개선해야 함.</p>	

대우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등을 이유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장벽의 해소가 필요함.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6, 재정리 및 보완)

○ 즉, 인적자원 교류에서의 비자발급 등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자격증 제도의 호환성 등에서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내외국민의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 FTA 양허대상기관을 미국의 예에서 87개 연방정부 기관 및 FTA 협정에 승인한 일부 주정부로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미국산 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Act)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대상기관으로 가능한 많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명시와, 상품과 서비스 교역범위 확대를 위하여 국제입찰의 하한선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가 필요함.

○ 정부기관 등에서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방하고, 정품 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및 규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임.

○ 외국과 기술 표준 및 기술적 중립성에 대한 정부정책이 무역에 대한 장애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임.

<표 15> 한미FTA 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업체의 서술식 의견

법·제도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	
내 용	비 고
o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하고 있는 NCsoft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 Withholding Tax를 10%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 인하 가능 여부	
o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미국의 경우 계약금액의 약 10%를 세금으로 공제	계약금액이 몇 십억이면 몇 억원 정도가 세금인데 국내벤처 기업의 경우 그

SESSION 1

<p>한 후 수령하게 됨</p>	<p>만한 매출이 없어서 내야 할 법인세가 그 만큼 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Refund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임.</p>
<p>비관세(통관절차 지연 등)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p>	
<p>게임 등급 심사시 자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저연령 등급 분류 요구에 대한 대응 필요</p>	<p>NCsoft가 개발/퍼블리싱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게임 등급은 국내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반면, 미국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로부터는 T(Teen)-Violence 등급을 받아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플레이 가능</p>
<p>따라서 역으로 미국에서 저연령층이 플레이 가능한 등급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등급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으로 미국기업의 반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WTO에서 온라인게임을 “레크레이션 서비스”로 분류하여 온라인 도박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온라인 경마게임을 허용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습득한 사이버 머니에 대해 경품 및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형태의 사이트(www.pogo.com, EA가 운영) 존재</li> <li>o 국내법상 제한이 되는 이러한 사업모델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li> </ul>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5, 재정리 및 보완)

#### 4.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의 요약

○ 소프트웨어 분야는 WTO체제에서 GATT(상품)와 GATS(서비스)에 의해 관세가 없는 상태로 이미 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FTA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대체로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급증가능성 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IT서비스 업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에 진출함으로써 2차적으로 과급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정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수명주기가 짧고, 이른 바 잠금 또는 고착화 효과(lock-in effect)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 및 민간 시장에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적극 진출하기 위한 기술력 배양은 물론, 정책과제의 발굴,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이 필요함.

#### 5.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도 분석

○ 1995년에 발효된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WTO 회원국 간의 합의 사항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을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에서 핵심 저작권 산업 분야는 신문, 서적 출판, 녹음(recording), 음악(music) 및 잡지(periodicals), 동영상(motion pictures),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비즈니



스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

○ 특히 미국은 FTA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고 서비스 관련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이고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이면서 수출주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EU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명품 디자인과 관련 불법복제의 법적조치 강화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저작권 보호기간 등의 4개 항목으로 정리됨.

<표 16>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별 개념과 예상 쟁점

분 류	개 념	FTA 예상 쟁점
일시적 저장	○ 디지털저작물이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나 전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현상	① 복제에 포섭 및 복제권 수용 여부 ② 포괄적 면책(예외) 규정 적용 여부
기술적 보호 조치	○ 저작물의 무단복제 등의 불법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장치를 포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라고 함 ○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통제만 규정하고 있음. 단 프로그램보호법은 이용통제 및 접근 통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① 접근통제 포함 여부 ② 무력화 자체의 금지 여부 ③ 규정 방식(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 여부) ④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 위반에 대한 예외 범위 및 규정 방식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	① 면책 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각 유형별 면책 요건을 구체화할 것인지 여부 ② 침해자의 정보제공 의무 부

분 류	개 념	FTA 예상 쟁점
	공하는 자 ○ 타인의 저작물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정된 지위보장을 마련한 규정	과 여부
저작권 보호 기간	○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사후 50년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간으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

## 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 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및 EU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소프트웨어 산업영역별로 FTA체결에 관련된

<표 17> SW 산업영역별 한미 FTA체결 관련 주요 이슈/영향도 및 정책 대안

구 분	주요 이슈/영향도	정책 대안
패키지 소프트웨어	-미국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시장 점유율/의존도 높음 -국내 SW제품의 경쟁력 취약	-SW제품의 상호운영성 확보 및 기술 표준의 확대 적용 -기반SW 개발능력 확보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 제고
IT서비스	-미국 관련시장의 규모는 크나, 미국업체의 독무대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 지원
디지털콘텐츠/DB	-디지털제품의 통합(컨버전스) -SW는 무관세이나 관련	-통합관점에서의 관세정책 대응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

	디지털제품의 관세	
통신/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영구 무관세 요구</li> <li>-디지털재화의 재산권 보호 정책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추이 검토 필요성 반영</li> <li>-현지법인 없는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 확보 필요</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li> <li>-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의사소통능력) 저하</li> <li>-관련 산업에서의 IT컨버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고용, 투자규모 축소 대책 필요</li> <li>-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 확산</li> <li>-미국시장 진출기반 확보 및 정책지원</li> </ul>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 저장</li> <li>-접근제한</li> <li>-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li> <li>-보호기간의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 저장,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 조절</li> <li>-보호기간 설정에서 SW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 검토</li> </ul>
정부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비용 저조</li> <li>-개방형 기술표준 정책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 시정요구</li> <li>-정부조달의 범위설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li> </ul>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함.

첫째,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미국 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시장 점유율/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SW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에서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SW제품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확대 적용, 운영체제, DBMS 등 시스템 기반 SW 개발능력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둘째, IT서비스영역에서는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며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

요함.

셋째,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DB)영역에서는 디지털제품의 시장규모 증가에 따라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디지털 제품의 통합(컨버전스) 추세에 따라서 SW는 무관세이지만 SW 이외의 관련 콘텐츠와 통합관점에서의 관세정책이 필요함.

넷째,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영구 무관세를 요구하고, 디지털재화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요구에 대해서, 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시장 및 기술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협상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현지법인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의 확보가 필요함.

다섯째, 서비스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이어 서비스화(SaaS) 추이는 확산되고, 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 및 의사소통 능력은 낮은 수준에 있어 국내 고용, 투자규모의 축소가 가져오는 대책이 필요하며, 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의 확산과, 외국의 IT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의 확보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IT 서비스 이외의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IT와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IT가 종속 또는 부가적으로 내장/융합/포함되어 거래되는 형태에서의 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여섯째, 지적 재산권 영역에서는 일시적 저장의 인정,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등 특히 미국에서 제기하는 지적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정책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미래시장의 규모 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함은 물론, 국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의 국익보호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설정에서는 SW산업 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함.

## SESSION 1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 영역에서는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국내 업체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개방형 기술표준 정책의 설정에서의견차이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조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 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협정의 부속서류에 반영해야 함.

## 토 론 문

김 중 한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SW산업에서의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토론토료

한·미FTA협상 타결 이전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관세가 적용되고 않았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내 SW시장에 단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거대한 미국 IT시장에 진입하여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개발능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영 측면에 있어서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임금/저생산성의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글로벌화 노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한·미 FT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 분야별 SW수출액 현황 2004-2006

(단위: 천달러)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패키지SW	113,170	(13.6)	114,475	(9.6)	117,175	(8.7)
IT서비스	432,035	(52.0)	477,991	(40.2)	609,873	(45.4)
디지털콘텐츠	285,168	(34.3)	596,082	(50.2)	615,846	(45.9)
합계	830,373	(100.0)	1,188,548	(100.0)	1,342,894	(100.0)

<http://www.software.or.kr/index.html>

## 한·미FTA 기술표준 이슈와 소프트웨어산업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면서 미 컴퓨터기술산업협회 (CompTIA,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중립성 (Technology Neutrality)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부조달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과 동일하게 한국정부는 특정한 SW 솔루션 혹은 라이선스 모델(licensing model)에 따라 조달정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sup>1)</sup>. 정부구매 정책 입안자들이 기술, 플랫폼, 또는 라이선싱 모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재무성, 신뢰성, 사용의 용이성 등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 구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중립성 요구는 WTO/TBT에 근거를 두고 있다. TBT 협정은 각종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국가가 이 제도들을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에는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악용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 내지는 통일화하여 이들이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정이다. TBT협정에서 ‘기술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협정내용의 해석으로부터 추론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 가. 기술중립성과 FTA

미국의 기술중립성 요구는 이전에 미국과 체결한 여러 FTA협정에 적극 반영되었는데 특히 통신분야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각 협정마다 용어선택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보

1) “한·미 FTA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한·미 정책토론회, 2006.3..28.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호접속을 위한 특정한 표준 혹은 기술규정에 따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선택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y)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기술선택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USTR 무역장벽보고서<sup>2)</sup>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정부가 통신산업에서 라이선스조건, 강제적 기술표준 등 직접적인 영향과 산업 협회, 준정부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기업의 한국 통신시장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기술중립적 정책을 고수할 것과 무역제한적인 표준을 의무화하지 말 것을 한미FTA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 정부가 무선인터넷플랫폼(WIF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을 상호접속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sup>3)</sup> 위반 가능성 제기했다. 정부가 기술표준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TBT협정에서 명시한 ‘합법적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기술표준의 채택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성질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WIFI의 상호접속표준 채택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WTO/TBT협정이 아닌 WTO/GATS (General Agreement on

---

2) Foreign Trade Barriers: Korea, USTR, 2006

3) WTO/TBT협정 주요내용

- 상품 교역에 국한하여 강제표준인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은 ‘합법적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말 것’을 규정(제2.1조)
- ‘합법적인 목적’에 대해 동 협정은 예시적으로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환경 보호 등 공산품과 농산물관련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말 것’에 대해 합의된 국제적 정의는 아직 없음



Trade in Services)<sup>4)</sup>의 적용대상이며, 동 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였다. 한국정부의 무선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 등은 상호접속기준 제정을 정당화하는 합법적인 정책목표로서 GATS 내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에 명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의 채택을 정부주도로 할지, 아니면 민간자율에 맡길지의 문제는 각국 정부 고유의 규제철학과 시장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미국 측의 공세적 분위기를 반전시켜 무선 인터넷 기술 표준에 관한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 나. 기술중립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Computing Technology Association)는 SW산업에서의 기술 중립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개방형표준(open standard)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특정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혹은 라이선스 모델(licensing model)을 지정하는 정책(예를 들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기술 중립성에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형 표준에서의 ‘개방(open)’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은 다른 관점에서의 개념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4) WTO/GATS 주요내용

- GATS는 단지 기술표준 등 국내규제관련 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좀더 구체적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잠정 근거규정이 라고 밝히고 있음(제6.4조)
- UR 이후 국내규제관련 세부규율 정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나, Reference Paper 양허 이외 가시적 성과는 없음
- GATS 내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 제5조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통신망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접속 및 상호연동성에 필요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회원국 정부의 권한을 명시

기술중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상호운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개표준이고 또 하나는 그 표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표준선택의 이슈이다.

### (1) 공개표준(Open Standard)

대표적인 지식정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시장은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효과의 특성으로 특정 기술 또는 제품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독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경쟁정책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수준의 개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권고안<sup>5)</sup>에서는 ICT 생태계(ecosystem)<sup>6)</sup>가 공개적인(open)일 때 비로소 효율적(efficiency)이고 혁신적(innovation)이며, 발전(growth)을 촉진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ICT 생태계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le), 사용자 중심(user-centric), 협력성(collaborative),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flexible)을 갖추었을 때 공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준의 개방성(openness)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Berkman Center의 권고안은 공개표준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통제(control)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manage)되고 발전(evolve) 되어야 한다.

5) Roadmap for open ICT ecosystems,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2006.5.17.

6)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cosystems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산업으로서 각 분야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태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벤더에 중립적이며 다양한 구현(implementation)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 독립적이어야 한다.

사양(specification)과 지원문서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로열티를 강제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 비용으로 사용가능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2) 공개표준정책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

공개표준은 궁극적으로 ICT 생태계를 통합시키며 상호운용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또한 성공적인 개방환경(open environment)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sup>7)</sup> 하지만, 공개표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다른 관점의 개념이다. 전절에서 보았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방식과 배포방식에 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개표준을 촉진하거나 만족시키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이 슈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 정책방향의 수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공급의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등의 형태를 유지하되 기술채택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우대 정책은 정부 소프트웨어 구매 시 상용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우하는 수준의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고착(lock-in)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방표준(open standard)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제정 프로세스에

---

7) Roadmap for open ICT ecosystems,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2006.5.17.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sup>8)</sup> 표준화기구를 운영하며<sup>9)</sup>, 공공부문 구매 가이드라인에 개방표준을 강조하는 정책<sup>10)</sup> 등을 펼쳐야 할 것이다.

---

8) EU의 eLink는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로서 데이터 상호교환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9) 네덜란드는 2005년 표준화위원회와 표준화포럼을 설립하여 개방표준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일본 정부는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방표준이 정부조달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권고하고 있다.

## 토 론 문

정 재 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연구실장)

### SW산업에서의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토론편

#### 1. 서 론

“IT강국, FTA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토론의 기회를 주신 IT 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추진위원장 김동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체결된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기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SW지적재산권 관련 심의와 분쟁조정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FTA 이행 입법 사항 중의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안연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SW 지적재산권의 국내 입법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컨퍼런스의 지정토론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 2. FTA와 SW

1990년대까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

구(WTO)'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2000년대에는 개별국간의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체제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싱가포르·미국·EU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연식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SW는 ITA(기술정보협정)에 의해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FTA 자체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입찰 참가시 미국 내 영업활동 경력 및 과거 실적을 요구하여 우리 업체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던 요인을 철폐함으로써 미 조달시장 참가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들이 미 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는 등 이번 한미 FTA로 인한 국내 SW 산업부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3. SW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관련 산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제도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번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 강화라는 패러다임을 반영한 결과이며,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며, 지적재산권의 강화 특히 권리와 집행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복제의 인정·보호기간의 연장, 비밀유지명령·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권리와 집행 부분이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반면, SW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인 측면과 집행절차적인 측면에서 강화됨에 대응하여 공정사용의 도입,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권리자의 균형된 권리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SW지적재산권의 합리적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한 이용활성화는 SW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SW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SW지적재산권 보호 및 SW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SW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토록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기관 SW 불법복제 자체점검을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SW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SW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시장을 창출하는 기능에 있어서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은 2006년 45%에 이르러, OECD 국가의 평균치인 38%를 크게 웃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SW불법복제율이 10% 떨어지면 IT분야에서 1만8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2조 9천억원에 이르는 GDP 성장이 가능하다는 국제적인 시장조사기관(IDC)의 보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불법복제 방지는 국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4. 토론을 마치며

IT기술의 융·복합화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갈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SW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SW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SW를 위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방송분야에서의 한미FTA 쟁점과 대응전략

곽진희

(방송위원회 국제교류부장)

한미FTA가 지난 4월 2일(월) 타결되었다. 한미FTA 협상의 쟁점과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한미FTA 의의

현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와 자유무역 흐름 속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아세안, EU 등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멕시코FTA가 재개되고, GCC(Gulf Cooperation Council)과도 FTA를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국과도 FTA 협상 추진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미국, 일본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들도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공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방송분야에서 한미FTA 타결의 의미는 지상파방송 등 한국 사회의 공적가치를 구현하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화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를 협정발효후 3년이후 폐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적절한 협상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외국방송재송신 채널의 한국어더빙허용 요구 등을 수용하지 않는 등 개방범위를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IPTV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규제 및 주요

방송정책에 대한 미래의 규제권한을 확보해낸 성과를 거두었다.

PP 간접투자를 개방하였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방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은 국내 법인에 대한 규제이므로, 방송위원회는 동 제한의 철폐가 그 동안 우량 국내기업이면서도 높은 외자 때문에 PP산업에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간접투자를 통한 국내PP산업 매출 및 고용증가, 그리고 유통관행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향력이 큰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PP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방의 시기를 3년후로 하여 국내 PP산업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정부가 영세한 PP가 미래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방송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작인프라 구축, 제작비 지원, 인력양성 등에 힘을 기울인다면, 이번 한미FTA는 오히려 방송산업이 선진화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미FTA 협상에서의 쟁점 및 협상결과

### 가. 서비스, 투자 협정 관련

미측은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콘텐츠 규제, 특히 국내방송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규제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방송에 대한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전환하여 유보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 등 소유제한 규제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며,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쿼터 폐지와 함께 CNN 등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더빙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1) 협상쟁점

### • 유보방식 관련

서비스협정의 유보방식에는 미래유보와 현행유보 두가지가 있으며, 현행유보(AnnexI)에 기재하는 경우, 기존 규제체계를 고정시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미래유보(AnnexII)에 기재하는 경우 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규제체계가 안정된 서비스의 경우, 예측가능성 제고와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유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방송분야와 같이 신규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규제들의 변화가 큰 분야는 현행유보를 할 경우 국가정책의 다양한 선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측은 협상중에 방송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제체제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기술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IPTV, VOD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유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 • 기존 FTA체결국의 유보 현황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유보현황을 살펴보면 북미자유협정(1993)과 칠레(2003), 호주(2004), 오만FTA(2004)에서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를 병행 기재하였으며, 싱가포르(2003)과 모로코FTA(2004)에서는 미래유보로 기재하였다. 우리의 경우, 한칠레FTA(2004)에서는 현행유보, 한싱FTA(2006)에서는 미래유보를 한 바 있다.

### • 외국인 투자제한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사항은 방송법제14조에 따라, 지상파방송, 중계유선방송과 보도·종합편성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위성방송은 33%,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서는 49%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 외국법인 등은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방송법제13조).

미국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25% 제한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획득에 대하여 FCC의 공익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연방통신법 제310조) 우리의 경우 간접투자 부분이 50%이므로 간접투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화수준이 미국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외국인 소유제한에 대해 현행유보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방송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 및 이에 따른 규제틀의 개선이 불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UR시 일부 방송분야를 양허한 상태에서 2003년 방송과 통신의 단일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WTO 협정 위반 시비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둘째, 방송사업의 간접투자제한은 현행 49%로서, 친개방적인 통신분야(15%)보다 훨씬 높은 점을 볼 때, 추후 간접투자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라이브도어 사건<sup>1)</sup>을 겪으면서 방송사에 대한 간접투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20%에 간접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

셋째, 현행 방송법상에는 대표자 국적제한만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한 국적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유보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도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정통부에

---

1) 인터넷 기업 라이브도어가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후지TV를 인수하려 했던 사건으로 일본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투자 제한을 새롭게 신설하여, 직접투자 20%를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모두 합하여 20% 제한을 하는 것으로 입법개정을 하였다.

서는 소버린의 SK텔레콤 주식 매집 사태와 관련, 통신사업의 대표자·이사 등에 대한 국적제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한일 투자보장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에 동 분야를 현행유보함으로써 입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 국내방송 프로그램 편성 쿼터 및 외국채널규제

편성쿼터규제와 관련하여, 매체별(지상파, SO·위성, PP), 장르별(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국내방송쿼터 및 1개국가 쿼터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은 방송위원회 고시로 운용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제57조).

지상파방송의 국내물 편성쿼터는 80%이며, 영화 25%, 애니메이션 45%이고, SO와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PP의 경우 국내물 편성쿼터는 50%이며, 영화 25%, 애니메이션 35%로 고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위성방송 모두 외국물 중 1개국의 편성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한하여, 애니메이션편성 비율쿼터 이외에 전체 방송시간의 15/1000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방송법 제57조제3항). 방송3사의 경우 1%, EBS는 0.3%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고, 지역민방을 포함한 기타 지상파방송사는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해당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KBS의 경우, 동 제도로 인한 비용부담이 연간 약 7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채널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SO, 위성방송사업자는 20/100 범위내에서 외국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으며(위성DMB는 10/100적용),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의 승인신청자격은 외국방송사업자, 국내 플랫폼 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쟁점이 된 사항은 CNN, 디즈니채널 등 외국채널에 대한 더빙허용 요구였으며, 외국채널에 대한 더빙은 2005년 5월 1일

위원회가 의결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방안>에 따라 자막은 허용하되 더빙은 금지하여 왔다. (방송법 제70조1항, 제7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이와 같이 승인자격의 이원화 문제와 위원회 고시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지난 7월 27일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더빙과 관련된 재송신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되었다(방송법제 78조의2).

미국측은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에 대해 우리말 더빙과 국내광고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협상 내내 진입규제, 편성규제, 심의규제, 광고규제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PP와의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현행 국내 방송제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협상타결이 임박한 시점까지 쟁점사항이었다.

## (2) 협상결과

- 개방내용

최종 협상타결된 내용은 PP의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의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PP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적용시점도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개방의 파급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편성쿼터와 관련하여서는 비지상과부문(PP·위성·SO)에서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각각 5%씩 완화하였다. 국내제작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현행 35%에서 30%로 완화하였다.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편성쿼터는 현행 60%에서 80%로 완화 하였다.

• 현행유보와 미래유보사항

방송관련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소유지분 제한, 국내방송편성쿼터 등 향후 규제의 강화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현행유보에 포함하였다.

케이블, 위성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유료시장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 규제를 현행 49%, 33%의 규제수준을 강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보에 기재하였다.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①국내 법인의 외국인의제 규제 3년이내 폐지, ②1개 국가 쿼터 완화(60%→80%) 및 ③PP·SO·위성 방송에 대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영화 쿼터 완화(각 5%) 등도 현행 유보에 반영하였다.

전광판방송사업의 경우,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국적제한(SMBD), 공익광고편성 제한, 상업적 주재(PR)에 대한 현행규제를 반영하였다.

<현행유보 기재사항>

<p>□□ 방송일반</p> <p>▷ 고위경영자 국적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제한</li> <li>- KBS, EBS이사 국적제한</li> </ul> <p>▷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은 방송사업, 중계유선·음악유선, 전송망사업 운영불가</li> <li>- 법인설립요건(중계유선, 음악유선은 자연인도 가능)</li> <li>- 허가(지상파, 위성, 케이블,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중계유선)</li> <li>- 등록(음악유선, PP, 전송망사업)</li> </ul> <p>▷ 외국인투자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보도·종합편성PP, 중계유선 : 금지</li> </ul>
---

SESSION 1

- 위성방송 : 33%
- PP, SO, 전송망사업 : 49%
-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 : 30%
- ▷ 콘텐츠 쿼터
  - 일반쿼터, 장르별쿼터(대중음악, 영화,만화), 1개국가 쿼터, 지상파DMB, 교육·종교 전문채널은 별도 쿼터 적용
- 전광판방송서비스

○ 미래유보(부속서 2) 기재사항

미래유보에는 추가규제 또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예상되는 분야를 포함하되,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미래유보 기재사항>

- 방송일반 사항
  - ▷ 매체간 경영규제 ▷ 이사국적 제한
  - ▷ 지상파·케이블·위성·승인PP(보도·종합편성·홈쇼핑)에 대한 외국인외제
  - ▷ 만화 총량제 PP적용, 국내제작물의 제작비쿼터, 주시청시간대 쿼터, 방송사업자 제공 VOD쿼터 및 국내물 인정기준
  - ▷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영
  - ▷ PP에 대한 직접투자 소유지분 철폐시 외국방송재송신 금지
-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사항
  - ▷ IPTV, 양방향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 및 제도를 변화에 따른 향후 규제권한 확보
  - (국내결정에 따르되 통신분류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분류시 케이블방송보다 더 강한 소유제한 규제를 하지 않음 명시)
-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특혜 부여사항
- 국내물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DTH, DBS 등 위성방송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첫째, 방송일반사항으로

▷ 매체간 겸영규제를 적시함으로써, 현행 매체간 겸영 규제는 물론,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미디어겸영 등 추가적인 규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 이사국적 제한은 KBS, MBC 이외에는 이사국적 제한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규제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유보에 기재하였다.

▷ 지상파·케이블·위성·승인PP(보도·종합편성·홈쇼핑)에 대한 외국인의제를 미래유보에 기재한 것은 현행 간접투자 규제수준이 타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방송사업이 앞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바, 현재 간접투자 규제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플랫폼사업자(SO, 위성 등)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또는 공익채널의 송출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투자협정 제11.8조의 이행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익채널에 해당하는 공공채널 및 지역채널은 국내 채널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지상파방송 역시 외국인에게 투자금지정책 방향을 고려한 것이다.

▷ 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관련하여서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비율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증감하기 위한 것이다. 단서조상으로,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과도한 총량제(ex. 전체 방송시간의 1%이상)를 도입할 경우,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총량제는 애니메이션 비율규제와 이중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1%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3사의 일일평균 방송시간은 약 12분(하루 방송시간을 21시간으로 가정)으로, 이를 2%로 2배 증가시킬 경우,

24분에 불과한 반면, 방송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140억원(KBS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규제작애니메이션 총량제의 급격한 규제강화는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총량제의 특성상 해당 단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총량제 운용에 심각한 저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PP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지상파방송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케이블방송의 급격한 성장으로 향후 PP에도 적용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단서에 부속서I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콘텐츠 편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PP에 대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총량제 도입시 PP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기존 애니메이션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외주제작 프로그램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쿼터 또는 주시청시간대 쿼터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내물 콘텐츠유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비율규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쿼터제도를 기재한 것이다. 다만, 방송사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외주제작쿼터, 제작비 쿼터, 주시청시간대 쿼터는 대안(代案) 규제로서 기존 규제의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주문형비디오(VOD) 쿼터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청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는 VOD에 대하여 편성규제를 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VOD 방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국내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요가 거의 없는(negligible) 콘텐츠를 국내물이라는 이유로 구입·보유하여야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 해당 조건을 부과하였다.

▷ 외국방송서비스의 재송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PP에 대한 직접투자제한을 철폐할 경우, 즉, PP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송신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 철폐 분야와 외국방송 재송신 금지 분야가 다를 수 있다(보도, 애니메이션PP등)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재송신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현행 규제(전체 운용채널의 20%이내 허용, 한국어 더빙·지역광고 금지 및 승인조건 위반시 승인취소 등)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사항은, 향후 IPTV 등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미래유보의 특성상, IP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소유제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100% 소유제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의 수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기재하였다. 이미 현행유보에서 케이블방송 등의 지분제한 및 콘텐츠 쿼터를 현행유보한 바, IPTV 등의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정책결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동일한 기준(49% 소유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특혜 부여사항은, 우리나라가 제3국에게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넷째, 국내물 인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인정기준 마련 작업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미래유보에 기재하였으며,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기준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서비스유보에서 행한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DTH, DBS, 디지털오디오서비스에 대한 상호주의 조치는 미국측이 미래유보에 적시한 바, 그와 동일한 조치를 우리측 미래유보에도 기재한 것이다. 다만, 미측의 유보에 각주내용은 위성방송에 대한 미국의 국내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위성방송 시장에 외국인 이 진입할 경우, FCC가 해당 국가별로 개방의 수준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자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위성방송의 개방과 관련, 미국이 A국이 B국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 A국 국민에게 B국 국민보다 자국의 위성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해당 유보안은 위성방송에 대한 미국의 국내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서 칠레, 호주 등과의 FTA에도 동일한 유보내용이 있으며, 각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련 조치를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측 각주]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기타 부문(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도 전자상거래 협정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여론 영향력이 큰 실시간 방송과 NVOD 등 시청각서비스를 전자상거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서비스 협정이 아닌 전자상거래 협정을 통한 우회개방을 차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VOD를 포함한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를 미래유보에 기재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조치권한을 확보하였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배타적인 저작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향후 도입될 IPTV가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재송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각주를 포함시킴으로써 신규매체에 대해 의무재송신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하였다.

경쟁 협정과 관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 금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우리 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공기업(KBS, EBS)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혜택 부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상호검열 규제예외 인정 (방송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4조제2항)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 (방송법 제38조, 시행령 제22조)
- 수신료등 재정지원 (방송법 제56조)
- 채널 구성·운용에 있어 의무재송신(방송법 제53조·제78조)
- 편성규제에 있어 혜택부여(방송법시행령 제57조)

### 3. 협상 평가

협상에 대한 평가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방송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와 개방범위 최소화이다. 방송서비스는 한·미간 시장규모·제작기술·규제수준의 격차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불리한 분야였다. 미국과 한국간 PP 시장규모는 33조 대 3조로 10대 1의 규모이며, 미국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진입제한 이외에 쿼터 규제가 없다. 협상은 일방적인 퍼주기만 있을 수 없으며 상대가 있는 게임이므로 규제수준에서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과 적극적 대응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방송관련 규제사항 중 규제강화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현행유보에, 정책변경의 개연성이 큰 사항이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미래유보에 기재함으로써 향후 정책 및 입법권한을 확보하였다. 일정부분 방송쿼터를 완화하였으나, 새로운 대안쿼터(쿼터총량제, 제작비쿼터, 주시청시간대쿼터) 도입근거를 미래유보에서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미래정책권과 입법권을 확보한 것은 타협상에서 찾아 보기 힘든 사례이다.

특히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IPTV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법제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애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내결정에 따라 케이블방송으로 규정될 시에는 현행유보에 기재한 수준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튜브 등의 확산으로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문제가 협상내내 쟁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망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향후 규제조치권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하다.

둘째, PP 간접투자 개방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장치 마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지분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및 시장규모와 영향력이 큰 홈쇼핑 PP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방범위를 최소화하였다. 2005년 기준 홈쇼핑 시장은 PP 전체시장(3조 1천억)의 과반수가 넘는 1조 7천억 규모이다. 또한, 개방시행에 따른 유예기간(협정발효일로부터 3년)을 확보하여 관련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국가지원 및 산업 육성기간을 확보토록 하였다.

셋째, 국내 방송법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 측은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에 대한 우리말 더빙과 국내 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진입규제·편성규제·심의규

제·광고규제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PP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외국방송 재송신채널간 형평성 등 현행 국내방송제도에 미칠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행규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 4.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향

이번 한미FTA 협상결과, 외국인 간접투자가 허용되는 국내PP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된 한미FTA 영향분석 결과('07.4.30)에 따르면, PP시장은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이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소비자 후생 효과 등 추가적인 영향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 ▷ PP 현황 및 문제점

현재 PP 시장은 상위 5개사의 MPP(CJ, 온미디어, KBS, MBC, SBS 계열)가 54%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거대규모의 MPP 중심으로 시장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내PP는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투자 및 제작기반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PP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콘텐츠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도 PP산업 총매출액이 3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전체 방송산업(8조6천억원)의 36.4%를 차지하는 등 점유율 및 매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방송프로그램 수출 또한 높은 증가추세이며, 1997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PP 자체투자를 통해 제작기반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5년의 경우 PP(144개사)의 방송시설투자 현

황이 456억원(4억원/1개사)으로 지상파방송사(43개사) 시설투자 현황(1,828억원)의 총액 대비 25%, 사업자별 평균액 대비 7% 수준에 불과하였다. 전체 217개 TV 채널 중 극히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디지털제작시설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뿐, 기타 영세 PP는 1개 채널당 연간 약 5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디지털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미한 실정이나, 원활한 디지털방송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PP 자체 설비투자비의 13배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HD 제작시설을 갖춰 제작을 추진 중인 채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운용 채널에 편성되는 방송콘텐츠 수요량에 대비 제작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프로그램 운용 계획(2007 현재)>

지상파 계열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 드라마넷, ESPN 등이 현재 주 30시간 HD 프로그램 방송편성중</li> <li>· KBS N, SBS 미디어넷은 2008년도까지 드라마, 스포츠채널 HD 방송개시 예정</li> </ul>
M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미디어, 연내 디지털 방송 시설 30~40% 확대</li> <li>· 온미디어, 현재 15%의 디지털방송 편성비율을 40%까지 확대 및 계열 전체 방송사 HD 방송 계획</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널 ART, GTV는 1일 1시간 HD 콘텐츠 제작계획으로 송출대행사 계약시기에 따른 방송개시 예정</li> <li>· 동아TV는 2009년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HD로 전환 계획중</li> </ul>

※ HD제작 가용 채널(지상파 및 MPP 계열)의 전체 편성 중 HD 제작 편성은 20~30% 미만 차지



현재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지상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미디어 등 지상파방송외 분야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5년 기준으로 PP의 총제작비는 1,696억원규모로, 지상파방송사의 총제작비 7,456억원의 2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대책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는 영세한 국내PP 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우려되나, 국내 우량기업의 PP투자가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예상된다. 따라서 PP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특히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IT, BT에 이어 CT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은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콘텐츠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이다. 전세계 미디어산업 규모는 2009년 4,680억(약 440조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sup>2)</sup>이며,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콘텐츠의 육성지원을 위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한미FTA의 방송분야 협상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송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Digi-con Project에서 디지털콘텐츠 진흥은 1) 창조단계, 2) 보호단계, 3) 활성화단계, 4) 인적자원 개발단계로 개발,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 EC는 영상물지원프로그램인 MEDIA Programme으로 지금까지 Media I(1991-1996), Media II(1996-2000), Media Plus/Media Training (2001-2006)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Media 2007(2007-2013)의 목표

2) PRICEWATER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

는 유럽 영상물 분야의 강화 (A Stronger European Audiovisual Sector) 와 유럽 내에서 유럽산 영상물(Audiovisual Works)의 원활한 유통, 재정지원을 통한 유럽산 영상물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의 영상물 지원 프로그램 변천>

프로그램명	중점분야	예산 (채택연도)
MEDIA I (1991-1995)	19개 하부 프로그램 (작가, 영화 지원 포함)	2억 ECU (1990년)
MEDIA II (1996-2000)	Media II Training : 전문가 재교육	4,500만 유로 (1993년)
	Media II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 유통/배급 지원	2억6,500만 유로 (1993년)
MEDIA Plus (2001-2006)	개발, 유통/방송, 홍보(Promotion), 파일럿 프로젝트	4억5,360만 유로 (2000년-2005년)
MEDIA Training (2001-2006)	전문가 재교육 : 제작/배급기술, 비즈니스/영업/법률 지식, 대본	5,940만 유로 (2001년)
Media 2007 (2007-2013)	해외 유통(배급)/홍보(Promotion) : 65%	7억5,500만 유로 (2006년)

출처) ec.europa.eu

방송위원회는 중장기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인프라 구축, 제작 활성화, 유통체계 선진화,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제작인프라 구축은 한미FTA 발효와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서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의 대계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PP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7.30)시,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지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 다각적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특히,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은 영세한 PP의 제작기반 마련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총 1,739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지난 10월 25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될 것이며, 동 센터건립을 통해 영세한 PP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PP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제작센터의 건립은 특히,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고가의 HD 제작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고화질 방송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올해 130억원에서 143억원으로 13억을 증액하는 등 콘텐츠 제작지원비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콘텐츠의 발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한 기획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작비 및 상업성 등으로 제작되기 어려운 공익적 콘텐츠의 제작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의 유통 및 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케이블방송협회 내에 PP들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유통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지원, 쌍무간방송협력협정 협력사업이행, 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 해외견본시

참가 등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언어, 지리적 장벽 및 문화적 할인에 따라 아시아권에 집중되고 있는 한류의 확산을 위해 방송위원회는 FTA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유럽 등의 선진 제작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방송위원회는 한-캐나다, 한-인도FTA 뿐만 아니라 최근 개시된 유럽과의 FTA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 콘텐츠의 북미, 아시아,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는 방송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존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료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공적가치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바,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한편 방송 콘텐츠 산업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타결이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끝)

## 토 론 문

권 호 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방송분야에서의 한미FTA 쟁점과 대응전략

1.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교과서의 가르침 : 자유무역으로 교역 당사국에 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쇠퇴된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후생 변화는 거칠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쟁력적인 산업 부문의 이윤 증대) + (소비자 이익 증대) >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의 이윤 감소)

□ 한미FTA가 한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쇠퇴가 가져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방송부문의 피해를 보상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 PP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것과 미국 PP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2. 방송산업중 PP시장은 사전 검토 없이 개방되었다.

□ 방송산업의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다. 미국의 프로그램 경쟁력은 세계 1위로써, 전세계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 최근에 한국방송시장에서 미국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 미국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낮고, 국산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지만, 최근에 미국 영화/드라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의 PP시장은 협상 타결의 재물로써 개방되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PP시장의 개방이 아무런 사전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첫 쪽 중단에 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글귀는 눈에 거슬린다:

원고 1쪽 중단 :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를 협정발효후 3년이후 폐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3. 방송시장중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한국 문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문, 방송구조상 가장 취약한 부문인 PP시장이 개방되었다.

□ PP시장은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20%이상이다. 디지털화,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서 PP의 높은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바로 PP가 편성해서 제공한다. 따라서 PP가 방송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PP가 만든 채널을 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위성방송사업자를 더 많이 보호하고 있다. 방송이 문화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측면에서 보면 PP를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오히려 개방할 필요가 있다.

□ 국내 PP 사업자는 채널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자립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경쟁하게 되었다. 현재 PP가 공급하는 채널은 150개, SO가 제공할수 있는 채널은 70여개로 수

요자 우위 시장 구조로 PP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대부분의 PP가 적자를 겪고 있으며, 5개 대형 MPP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 4. PP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대형 MPP도 위협할 수 있다.

□ 현재 이윤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MPP는 지상파3사계열 MPP, CJ 미디어, 온미디어 5곳을 들 수 있다. 지상파계열 PP중에서 드라마 채널과 같이 본사의 국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채널은 시장개방이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지만, 수입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는 채널을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CJ미디어와 온미디어 계열 PP중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채널은 대부분 수입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채널이다. 이들이 수입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미국산이고 애미메이션의 경우 일본산이 많다. 미국 미디어 기업이 한국에 100% 지분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되면, 미국 미디어 기업중 2/3는 직접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 미국 미디어 기업은 한국 PP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거나, 오래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PP중 미국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채널은 도퇴되거나 2류로 전락할 것이다.

#### 5. 한국 PP를 살리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 방송위원회는 PP를 위한 대책의 한 성과로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을 들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제작 설비를 구축하여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PP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MPP들은 프로그램을 제작을 늘리고 있다. 외부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문제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자체 제작은

가장 많이 한 tvn(CJ미디어의 한 채널)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CJ미디어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로써 이를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자체 제작을 늘려온 온미디어, MBC드라마넷 등도 자체제작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자체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없는 이유는 유료방송의 가입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구조의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낮은 수신료 수준과 케이블TV SO의 우월적인 시장 구조를 들수 있다. 케이블TV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야 하고, 수신료의 현실화의 발목을 잡는 4,000원 이하 티어 의무 편성, 공정위의 가격 인상 규제 등이 없어져야 한다. PP도 디지털화되어야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부자인 지상파TV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PP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FTA협상 타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PP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을 따름이다.



## 토 론 문

정 인 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방송분야에서의 한미FTA 쟁점과 대응전략 토론문

발제문의 요지는 정부가 한미FTA 시청각서비스 부분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향후 제작인프라 구축, 제작비 지원, 인력양성 등에 힘을 기울인다면, 이번 한미FTA는 오히려 방송산업이 선진화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요약된다.

사실상 쿼터제 완화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대로 “방송관련 규제사항 중 규제강화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현행유보하고, 새로운 대안쿼터(쿼터총량제, 제작비쿼터, 주시청시간대쿼터) 도입근거를 미래유보에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미래정책권과 입법권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4월 2일 협상 체결 직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Trade Fact (2007.4)<sup>1)</sup>에 따르면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분야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 미국의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더 많은 시장 개방 : 한국은 방송과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한 협정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하는데 동의했다. 미국 회사들에 의한 PP의 외국인 소유를 3년 내에(within three years) 100% 허용하는 것,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쿼터를 줄

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http://www.ustr.gov) April 2007  
Free Trade with Korea Brief Summary of the Agreement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7/asset\\_upload\\_file563\\_11035.pdf](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7/asset_upload_file563_11035.pdf)

이는 것, 단일 국가의 콘텐츠를 증가하는 것, 다른 영역에서의 현행 콘텐츠 쿼터를 유지하는 것(locking)

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 한국은 2년 내에 한국 전화회사에 대한 현행 49%의 지분투자를 미국이 콘트롤하는 회사들에게 1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다. E커머스 : 한국과 미국은 모든 디지털 제품(예, 소프트웨어와 오디오 비디오 상품)에 대해 비차별적 비관세 협정에 동의했다. 물리적 형태로 수입되든 인터넷으로 수입되는 것이든 간에. 또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원칙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07)가 2007년 9월에 발간한 한미FTA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는 한국이 PP시장을 100% 개방하였으며, 한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시장(IPTV 포함<sup>2)</sup>)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시장에 대한 거의 모든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였다고 평가(Audiovisual Services Assessment 4-20 ~ 4-24) 함으로써 방송시장개방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up>3)</sup>

미국측의 이러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발제문에서 한국측의 만족스런 자평가 함께 양국이 상호 만족스런 협상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표면적으로 볼 때 양측의 이러한 평가는 상호호혜주의라는 FTA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협상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의 영상산업 규모가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영상물 수입이 수출과 비교해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

2) 미국은 한국의 IPTV 시장에 대해 완전 개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 실제적으로 평가서 4-22에서 미국 관련 업계가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U.S. industry representative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FTA provisions on audiovisual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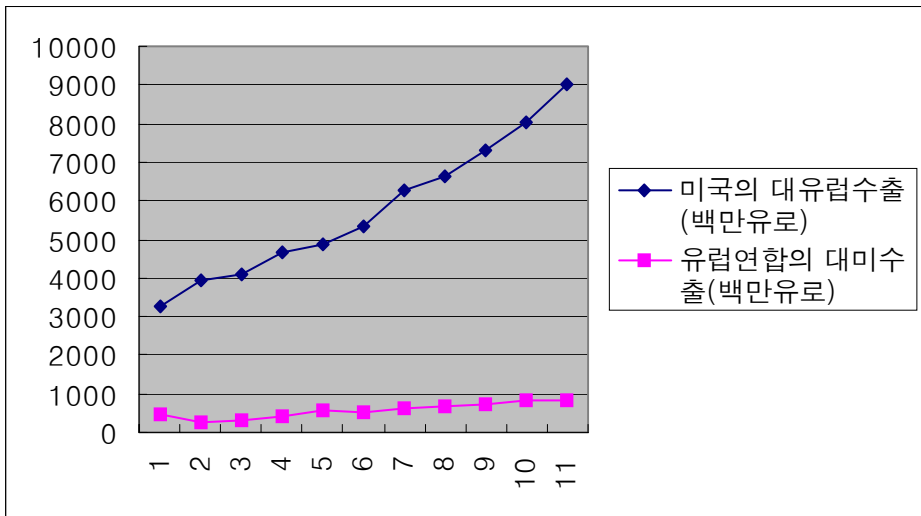
고 시장구조에서 과연 한국측의 자기만족과 미국측의 자기만족이 공평하게 상호원원할 수 있는 시장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부분이다. 국내에서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에 체결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IPTV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미래정책권과 입법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IPTV 입법안 해프닝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IPTV의 개념과 규제의 범주는 이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시장 개방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국내 방송플랫폼의 전면 개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편성부분에서는 미국 콘텐츠의 대량 유입이 포맷 카피와 같은 이차적 제작 관행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미국 콘텐츠의 편성이 증가하고 시청률이 높아지면 국내사업자들이 점차적으로 미국 인기콘텐츠를 포맷 카피한 국산제작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포맷팅은 완성된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Havens(2006, pp.20-21)에 의하면, 포맷팅은 문화적 할인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프로그램의 어필을 최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PP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지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상 콘텐츠의 대미 무역역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제문에서 언급한대로, 유럽은 유럽산 영상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0년부터 지금까지 17여년간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콘텐츠의 대미 무역역조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정인숙(2007)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하며 자기합리화에 연연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다면적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 발빠른 국가 대응과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공적 장르의 축소를 우려하면서, 영향이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궁극적으로 질높은 시민을 키워내고 그들의 감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목표가 있어야 주장한다. 미드에 열광하는 20대 소위 미드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미국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소비되며, 문화적으로 어떻게 혼성화되고,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추구는 어떤 맥락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 사회문화적 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SESSION 2**

## IT산업과 지적재산권 현안

서 수 경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팀장)

### 1. 개 요

한미FTA의 내용 중 IT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통신분야, 지적재산권분야, 전자상거래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중 인터넷기업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정리함.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한미FTA 비준 및 실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지적재산권 분야

#### (1) 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 한미 FTA 협정문 내용(§18.4.1)
  -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인정
  - 다만,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저작권법 개정(안)

제 2 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 견

- 일시적 복제의 인정 여부에 대해 협상당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개정안의 경우도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보임. 일시적 복제의 인정 여부는 저작물이용형태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최근 IT서비스의 발전형태를 볼 때 OSP 사업모델형성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용자의 적법한 이용마저도 위축될 수 있어 그 영향이 큼.
- 국내법 개정안의 경우 그 우려를 감안하여, 제35조의 2를 통해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음. 그러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규정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둔 것은 일시적 저장의 본래적 의도를 살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즉, 단서조항은 “...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일시적 복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이 이용자의 권리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하에서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확인여부, 그에 대한 모니터링의무와 연계될 수 있어 이용자는 물론 OSP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2) OSP에 대한 책임

### □ 한미FTA 협상문 내용

한미FTA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① 단순 전송 기능, ② 캐싱 기능, ③ 웹사이트 링크 기능 및 ④ 게시판 기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해당 서비스의 기술유형별로 책임 수준을 차등화(§18.10.3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유형별로 세밀하게 정해진 개별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술유형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요건으로 첫째, 상습적 침해자를 제거해나가는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 둘째 저작권자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함. 반대로 모니터링 의무, 혹은 앞서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침해행위임을 드러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의무 등이 없음을 확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권리자의 요청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 저작권법 개정(안)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 다. (생략)

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표준적인 기술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생략)

3. 서비스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의 견

가. 제102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책시키고 다른 예외 유형들은 OSP의 책임면제조항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규정방식은 항상 새로운 서비스방식이 창출되고 있는 인터넷이용의 현실에서 법의 흠결없이 법규의 적용에 탄력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입법으로 보임.<sup>1)</sup>

1) 미국 DMCA법상 OSP의 면책규정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 유형

따라서 기존의 제102조에 따른 포괄적인 책임 제한규정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FTA 협상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부분은 거의 미국 저작권법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의 기존 법리와는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되고 있음. 가령 제102조 제1항 3. 나.에서 책임제한 요건으로 나열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미국법상 특유한 간접침해이론(정확히는 그 중 대위침해책임 이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기존 법리와는 다른 것임.

#### 나. 제10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표준적인 기술조치”

-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는 미국법상의 취지나 도입취지를 비추어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제2조 28호)”를 뜻하는 것으로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등 필요한 조치나 제2조의 기술적 보호 조치와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다시말해, 제102조 제1항 1.라. 및 이를 원용한 2. 및 3.에서 OSP의 공통된 면책요건으로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입장과 동일하고, 관련조항의 출발점인 미국 저작권법의 조항<sup>2)</sup>이 정의하고 있는 이른바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란,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예컨대, P2P, 설치형블로그, 메신저, RSS 등)이 존재하여 미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2) 17 U.S.C. § 512(i)(2).

사용하는 것으로, (A) 공개되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범산업적인 표준공정에 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폭넓은 공감에 따라 개발되어 왔고, (B)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C)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그들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이러한 정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위 조항에서 지칭하는 표준적 기술적 조치의 범위는 매우 느슨하게 풀이되므로 실제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과 관련하여 벌어진 수많은 소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적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음.<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 제102조 제1항 1.라 및 이를 원용한 2. 및 3.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닌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수용을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한국 저작권법은 이미 미국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104조를 통하여 이른바 기술적인 조치의무를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대통령령에서 정할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내용이 앞서 법 제104조에 따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4)에서 정한 그것들과 실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잘못’ 정해져 한국

3)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히는 ‘FTA협상타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관련제안 보고서’ 113면 이하 참조.

4)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 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함.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저작권법 제104조와 같이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입법된다면 결과적으로 OSP의 책임제한이 성립할 폭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애초에 원용하고자 한 미국법조항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다.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금지 조항 적극지지

○ 한미FTA 협상문을 보면,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협정문의 위 조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의무, 혹은 앞서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침해행위를 드러내는 적극적으로 발견할 의무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도입을 적극 찬성함.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일정한 책임부과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제104조의 폐지없이 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를 금지한 협정문 조항을 입법화 하여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즉, 어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만일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능동적으로 찾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금지조항에 따라 면책요건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104조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됨.

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 저작권법 개정(안)

제103조의2(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① 권리주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03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실을 소명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 견

-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온라인 상 벌어지는 침해 행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며 다수의 네티즌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침해 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식 절차화 될 소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sup>5)</sup>
- 권자라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정보제공의 청구가 있을 경우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음.

5) 한미FTA협정문 상세설명자료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 P235

그러나, 그 실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제103조의2 조항 역시 바로 앞서 본 제102조 제1항 1.라. 등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미국 저작권법의 원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면 더 타당할 수도 있었을 것을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변형하고 있다고 보임.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제출명령(subpoena)은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법원(정확히는 법원의 서기, 즉 clerk)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발령되는 것임. 그런데 한국의 위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명령을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런 변형은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님.<sup>6)</sup>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조항<sup>7)</sup>에서 피해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2007. 1. 26.부터 신설하고 있는 것처럼 위 저작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위 법률이나 위 개정안의 태도는 이미 한국에서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받으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sup>8)</sup>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배치된다고 봄이 더 타당함.

- 
- 6) 한미 FTA에서는 단지 §18.10.30.나호11목에서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라고만 간략히 정하고 있음.
- 7)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8)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제공의 청구는 민·형사상의 소제기, 조정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즉,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남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어 권리행사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법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여야 함.

### (3)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의 도입

#### □ 도입의 필요성

한미 FTA에 의하여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위주로 한국 저작권법의 흐름이 바뀌고 최근 저작권법 입법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저작권법 제 1조에 선언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균형있게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이용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더구나 한미FTA 협정 이전에도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전송권 등 새로운 권리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제권에 대응하여 복제권의 제한으로서 사적복제가 인정되었던 것과 같은 합리적인 권리제한 조항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음. 또한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권리제한조항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 인하여 법원의 해석으로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법적인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보다 일반적인 미국의 제107조와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해야 함.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공정이용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 즉,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인용의 목적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이 조항을 한국에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

다는 소수설이 있고 다음(Daum)의 검색엔진과 썸네일 사진 제공사건<sup>9)</sup> 등에서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sup>10)</sup> 하도록 하여 이미 우리 법원은 공정사용에 관하여 인용 규정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색서비스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sup>11)</sup> 상당한 경험의 축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어 법원에서도 공정이용의 내용을 따르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저작권법 개정(안)

#####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3 선고 2004노1342판결

10)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판결

11)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판결



### 3. 통신분야

- 향후 국내법 개정을 통해 상호접속의 비차별적 제공의무 법제화 요구됨.
- 지배적 사업자에게 다른 통신사업자(기간/별정 모두 포함)에게 상호접속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 부과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임.

### 4. 전자상거래분야

#### □ 한미FTA협정 내용 중 IT기업 관련 사항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함.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및 예외인정
  -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및 단순 배포자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상대국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함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

#### □ 의견(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지지)

- 온라인 산업의 발전은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어느 한 축만의 성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들 간의 무한경쟁환경 속에서 산업의 혁신은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국민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관련 주체들간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독점 공공자산인 가입자망(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네트워크사업자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망중립성과 같이 국민의 선택권,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적극 지지함.

## 토 론 문

이 대 회

(고려대학교 교수)

### FTA와 포털업계의 지적재산권 현안 토론편

#### I. 일시적 복제

§2 xxii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RUS FTA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일시적 복제(전자적인 형태의 일시적 저장 포함)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송권이 인정됨으로써 저작권자가 일시적 복제서비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외국의 서버에 의하여 일시적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저작권 집행에 관한 문제이지 국내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인정이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소프트웨어 스트리밍과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일시적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이나 전송권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일시적 복제의 인

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80여 개국 이상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저작물이용 행태가 복제물을 소유하는 이용으로부터 소유하지 않는 이용으로 변화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도 일시적 복제의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남는 문제는 일시적 복제의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를 적절하게 마련하느냐, 특히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예외가 아니라 전반적·포괄적인 예외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은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sup>1)</sup>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미국-칠레 FTA만이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sup>2)</sup> KORUS FTA는 “각 당사국은 본 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저작물, 실연, 음반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특정의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본 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공정이용을 위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제한이나 예외는 제1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

1)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예외 및 제한

1. (A) (i)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불가결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ii) 그 유일한 목적이 ① 네트워크에서 중간매개자가 제3자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②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B)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는 복제권으로부터 면제된다.

2) Footnote to Art. 17.7(3):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위의 예외나 제한규정은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며 그 유일한 목적이 (a) 네트워크상에서 중간매개자에 의하여 제3자간에 적법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거나, (b)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한 내지 예외가 필요하므로, KORUS FTA에서 일시적 복제의 인정에 대한 공정이용의 예외 인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 II. 기술적 보호조치

§2 28. “기술적 보호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획득한 자가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흠결이나 취약점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비침해행위의 경우

2.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는 온라인상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는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이하 “장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등에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시키는 경우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 및 배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침해 행위의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의 정당한 이용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12조의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조제2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KORUS FTA의 기본구조 및 내용

금지(3가지 사항)

(1)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의 금지(고의, 과실의 요구)

(2)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권리통제 모두 포함)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의 거래금지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규정

전자제품 등의 디자인 강제금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위반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의 소인 인정

예외

3가지 금지에 대한 각각의 예외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접근통제와 권리통제를 포함

(1) 접근통제 vs. 권리통제 및 좌절행위의 금지 vs. 도구거래의 금지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행위 자체의 금지 [18.4.7(a)(i)]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지 [18.4.7(a)(ii)]
-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지 [18.4.7(a)(ii)]
- 미국 측의 제안과 미국의 DMCA가 금지되는 내용은 일치

(2)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 vs. 저작권 침해(연관성 부정)

- 기술적 보호조치 입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해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인을 제공할 것을 규정 [18.4.7(c)]
-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인 예외규정만이 적용되도록 규정 [§18.4.7(d) & (e)]
  - 공정이용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KORUS FTA에 의한 금지의 범위

(a)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적용

- 협정문상의 미국 제안은 (i) 저작물, 실연, 음반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통제 및 (ii)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임
-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컴법도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

고 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대상으로 함

(b) 권리통제 및 접근통제의 인정

-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접근통제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18.4.7(f)]

(c) 좌절행위 자체의 금지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행위 자체의 금지 [18.4.7(a)(i)]

(d) 도구거래의 금지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지[18.4.7(a)(ii)]
-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지[18.4.7(a)(ii)]
-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권리통제와 접근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따라서 권리통제와 접근통제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금지(예비적 행위의 금지)<sup>3)</sup>

[A] (i)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판매촉진(promote)·광고·상업화되었거나, (ii)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 외의 중요한 상업적 목적이나 효용성이 제한될 뿐이거나, (iii)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을 위하여 주로(primarily) 디자인·제작·수행되는,

[B] 도구, 제품, 부품을

[C] 제작, 수입, 배포, 공중에 제공, 공급 기타 거래하거나,

[B] 서비스를

[C] 공중에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3) 도구의 거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예비적 행위(preparatory activity)라고 불림.



자는, 책임이 있으며 10.14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의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 도구의 거래금지의 범위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

· [B]

- 거래금지의 대상

· [C]

- 금지되는 행위, 곧 거래의 예
-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접근통제 및 권리통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18.4.8(f)]. 따라서 도구의 거래금지 규정은 접근통제와 권리통제에 모두 해당하고, 결국 접근통제 및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가 금지됨

(e) 권리통제 조치에 대한 좌절 자체의 금지 결여

- 미국 저작권법과 같이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금지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은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금지시킬 필요가 없는 것에 기인<sup>4)</sup>

(4) 고의·과실 요건

- KORUS FTA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을 요구.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규정의 위반은 인정될 수 없음.

4) S. Rep. No. 105-190, at 29 (1998).

-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위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반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수단이 가하여질 수 없음.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KORUS FTA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수단 중에서 다음의 3가지는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주석 13번)

- (i)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 (ii)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
- (iii)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

-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

회원국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위반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함 (§6.1)

### III. OSP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제공되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한 이용자에 대하여만 캐싱된 저작물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다. 저작물 등의 이용제공자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표준 통신규약에 따라 정한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는 경우. 다만, 이용제공자가 일시적 저장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최신화한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목에 의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산업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여, 본래의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제103조에 따른 침해 통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때에, 저작물 등을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라. 다목을 위하여 지정된 수령인을 공개하는 경우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제1호 라목의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① 권리주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03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실을 소명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네트워크상에서의 송신 및 일시적 저장(전송망에서의 통신기능)

- KORUS FTA는 제목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저작권법은 네트워크상의 일시적 디지털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이라는 제목을 사용
-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OSP가 타인의 통신을 위한 도구(conduit)로서 사용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OSP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것임
- OSP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개념 설정의 필요성
  -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i) 저작물 등의 송신(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for material)과 이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시적 저장행위(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에 대하여 면책하고자 하는 내용
  -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운영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packet switching을 이해하여야 할 것임
  - “중간과정·일시적 저장(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이라는 것은 송신이 개시되거나 수신되는 지점에서 저장되거나 행하여지는 복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패킷이 송신이 개시되는 지점으로부터 수신되는 지점까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저장이나 복제물을 의미. 따라서 정보의 송수신되는 중간과정에 존재

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할 것이고, OSP의 개념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주체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야 할 것. 이와 같이 OSP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면 호주의 저작권법 제44A 및 제111A조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요 건

미국 저작권법은 면책요건으로서 ① 자료의 전송이 OSP 이외의 자에 의하여 시작되거나 지시에 의하여야 시작되어야 하며, ② 전송·전송연결·연결·저장 등이 OSP가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서 자동적이며 기계적인 과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③ 타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OSP가 자료의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며, ④ 즉각적이며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과정 중에 OSP가 자료의 복제물(copy)이 자료의 수령자로 기대되는 자(anticipated recipient) 이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OSP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되고, 자료의 수령자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서도 전송 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⑤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

- KORUS FTA는 ①, ②, ③을 4가지 면책유형에 모두 요구되는 요건으로 규정

- KORUS FTA는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네 번째 면책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타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것(automatic response to the request of another)”도 예외로 인정. 이것은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Listserv와 같이 메시지를 특정 그룹 전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이, OSP가 이용자나 다른 네트워크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하는 것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sup>5)</sup> 따라

서 KORUS FTA는 이러한 예외가 없으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할 것

- ④의 요건은 KORUS F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KORUS FTA는 “intermediate and transi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④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intermediate and transient”의 해석에 의존하면 될 것임. ④의 요건은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cation Services, Inc. 케이스<sup>6)</sup>를 입법화한 것임. Netcom 케이스는 Usenet 이용자들이 탑재한 저작권 침해자료를 자동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OSP의 간접책임을 면제시킨 것. Netcom 케이스에서 Usenet 운영자는 포스트를 서버에 11일 동안 유지. Ellison v. Robertson 케이스<sup>7)</sup>에서 법원은 14일 동안 포스트를 유지한 것에 대하여 Netcom 케이스와 동일하다고 판단.

## 2. 시스템 캐싱

- 시스템 캐싱도 ‘네트워크상에서의 송신 및 일시적 저장’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저장이지만, 이와는 형태가 다른 일시적 저장에 관한 것임. 시스템 캐싱으로 인한 일시적 저장에 대한 OSP의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 캐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캐싱에 대한 용어 정의 필요성
  - 미국 저작권법은 system caching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material on a system or network....’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저작권법은 캐싱에 대하여 ① 자료가 OSP 외의 자가 온라인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는 것, ② OSP 외의 자(자료 제공자)가 OSP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의 지시에 따

---

5) Senate Report.

6) 907 F. Supp. 1361 (N.D. Cal. 1995).

7) 357 F.3d 1072 (9th Cir. 2004).

라 이용자에게 송신되고, ③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적인 기술과정에 의하여 저장되고,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자료가 전송된 후에 이용자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것[§512(b)(1)(A), (B) & (C)]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캐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KORUS FTA는 ‘자동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캐싱’이라는 표현만을 사용. 따라서 캐싱 그 자체 또는 캐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저작권법에 수용되는 경우, 캐싱에 대한 설명 내지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 캐싱의 정의: (1) 온라인상 제공되는 저작물이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되고 후속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다시 그 저작물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그 저작물을 자동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2)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온라인상 이용가능한 타인의 저작물을 후속 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그 저작물을 자동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 저작물(정보, 자료) 이용제공자 vs. 저작물(정보, 자료) 이용자 vs. 서비스 제공자

- FTA 및 미국 저작권법은 자동적·일시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refreshing, reloading, or other updating”이라고 표현. ‘refreshing’은 웹 브라우저에서 보통 새로고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예컨대 시스템 캐싱의 특성상(시간상의 차이) ① ‘정보 이용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경우’와 ② ‘OSP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자동적·일시적으로 저장된 정보 이용 제공자의 정보’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refreshing에 의하여 양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 곧 후자(②)를 전자(①)에 일치시

키는 행위를 의미함. 곧 refreshing에 의하여 OSP 서버는 정보이용 제공자의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다시 가져오게 됨(원거리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Web임).

- 정보 이용제공자가 정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는데 OSP가 변경이나 추가 전의 정보를 시스템 캐싱에 의하여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OSP를 통하여 자동적·일시적으로 저장된 과거의 정보나 추가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제공자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곧 시스템 캐싱이라는 것은 유한적인 인터넷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이용제공되는 정보를 일시적(보통 10일 내지 15일 정도)으로 저장된 정보를 후속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므로, 정보 이용자는 최신화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정보 이용자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미 변경된 광고 등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정보 이용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화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였을 경우, OSP가 시스템 캐싱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
- 인터넷상에서 reloading과 refreshing은 사실상 동의어로 쓰임.

3.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OSP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경우

- 대화방과 같이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OSP의 서버 공간에 저작물이 게시(탑재)되는 경우
- 면책요건

(i) OSP가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
--



- (ii) OSP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실제로 인지하거나 침해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실관계나 정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따른 효과적인 침해통지 포함)에는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저작물 등을 신속하게(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iii) ...의 통지를 위하여 지정된 수령인을 공개할 것

-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 미국의 상원보고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OSP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영업을 운영하는 OSP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 따라서 침해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1회 설치비를 받거나 정기적인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OSP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이 되지 않음. 또한 정량제에 기초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침해자료의 접근 제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에 해당.
- 미국 저작권법과 KORUS FTA는 면책요건으로서 (i) OSP가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경우와 (ii) OSP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하여, 면책요건을 2가지로 규정. 그러나 “OSP가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과 같이 규정하면 2가지의 요건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됨.
- 미국 저작권법: ① 실제의 침해 인지, ② ‘침해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실관계나 정황의 인지, ③ 저작권자에 의한 침해의 통지 등 세 가지로 분류. ① 및 ②의 경우, 저작권가 침해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OSP는 침해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저작권자가 침해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자료삭제 또

는 접근차단 여부는 OSP의 자유. 이 경우 OSP의 저작권 침해책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은 OSP의 책임에 관한 규정[512(c)]과 관계없이 결정될 것임. 미국 상원의 DMCA 보고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침해를 통지한 경우, 침해에 대한 실제의 인지 및 사실관계나 정황의 인지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

#### 4.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위치로 연계시키는 행위

- 이 항목은 분산화되어 있고(decentralized) 동적인 인터넷상에서 정보검색도구는 인터넷이 운용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검색목록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OSP를 면책시키려는 것.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할 수 없으면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OSP는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사이트나 정보의 위치를 제공하는데, 이용자가 희망하는 정보와 관계없거나 좋지 않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일정한 편집기능까지 하게 됨. 따라서 이 항목은 OSP가,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정보검색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정보검색도구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 FTA는 ① ‘하이퍼링크(hyperlink)’와 ② ‘검색목록(directory)’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의 위치를 조회할(refer)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상의 위치로 연결시키는(link) 행위로 규정. 이것은 미국 저작권법과 같이 ① 검색목록, ② 색인(index), ③ 온라인 자료에 대한 참조(reference), ④ 포인터(pointer), ⑤ 하이퍼텍스트 링크 등을 ‘예시’하면서(including)이라는 표현을 사용) 정보검색도구를 규정.
- FTA는 단순히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조

회하게 하거나 이에 연결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은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나 침해행위를 포함하는 온라인상의 위치’를 조회하게 하거나 이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규정.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므로, 미국 저작권법과 같이 굳이 ‘불법적인...’을 표시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위치’로 충분할 것임.

#### 5. 침해자 정보의 제공

KORUS FTA는 저작권자가 OSP로부터 침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8.10.30(b)(xi)].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자가 OSP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입자들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OSP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믿어지는 OSP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OSP에게 일종의 문서제출장[subpoena, 증인 등에게 법원에 소환하도록 하거나(소환장), 일정한 서류나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서류]을 법원서기(clerk)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제출장을 발하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 서기는 이를 신속하게 발하도록 하고 있다[미 저 §512(h)].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미국에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권리자의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이 미국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

도를 운영하는 경우, 우선 허위의 권리주장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권리주장자가 허위주장을 하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가하여 지고 있다. 또한 OSP에 의한 침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사생활 내지 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이나 이용조건을 위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자 정보의 청구(권리주장자) → 심위(저작권위원회의) →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령
- 정보청구를 위한 요건
- 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 및 절차
- 미국법원의 clerk과 비교 필요성
- 장관의 명령으로 충분?

#### IV. 공정이용의 예외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 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2.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의 확대 · 강화
- 법원의 능력이 문제

# FTA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쟁점

임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1. FTA와 TRIPS

### 가. 양자협상과 다자간의 협상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은 양자간의 협상인 FTA와 다자간의 협상인 TRIPS로 나누어진다. 어느 협상에서든지 기술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보다 강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 양 협상에서 기술선진국이 주장할 수 있는 보호의 정도는 다르다.

양자협상인 FTA가 성행하기 이전에도 다자간협상인 WTO체제의 TRIPS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보호요건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도의 보호정도는 기술선진국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기술선진국은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은 양자간의 협상인 FTA를 통하여 보다 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형태는 FTA의 초기형태인 중앙아메리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중동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나

---

1) 미국은 적극적으로 다자협상 대신에 양자협정을 채택하고 있고 근래에는 싱가포르, 모로코,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엘살바도르, 요르단 그리고 8개의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미국은 역시 다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상품의 제1의 수출업자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그 집행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경제의 1/5을 점유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접근과 투자기회에 대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커다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타난다.

## 나. TRIPS의 유연성

WTO체제의 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건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개발도상국에 한하여는 그 최소한의 보호요건에 대한 유예기간도 허용한다. 따라서 FTA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위 최소한의 보호기준과 유예기간을 준수하는 한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범위와 강도를 선택을 할 수 있었다.<sup>2)</sup>

이렇게 TRIPS는 각 개발도상국가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집행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술을 취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에게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발전의 정도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인 개발과 사회개발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TRIPS가 주는 지적재산권보호의 기준에 대한 유연성은 기술선진국에 대하여는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각 WTO의 가입국가의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약한 보호를 하는데 불과하다면 기술선진국으로서는 원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있다.

기술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TRIPS에 의한 보호기준에 의하여는 부족하다고 본다. 기술선진국은 양자협상인 FTA를

---

2) 따라서 TRIPS가 요구하는 지적재산권보호의 기준은 세계적으로 통일화된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1996년 1월 지적재산권 협정을 승인한데 개발도상국들은 TRIPS의 대부분의 조항을 2001년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2000년에 이르러 개발도상국가들은 특허보호를 모든 기술 분야에 넓혀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보호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투자를 증진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강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한 보호를 주장하는 기술선진국의 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를 허용한다.

#### 다. FTA의 강한보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기술선진국은 FTA를 통하여 첫째,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책을 찾고 둘째,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과 투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술을 취한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FTA는 기술선진국에게만 유리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FTA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적재산과 관련해서 개발도상국가들은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고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FTA는 지역적으로나 또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TRIPS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은 특히 저작권의 보호와 그 집행에 있어서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기준을 너무 높인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TRIPS에 대한 대안으로서 FTA를 통하여 지적재산

3) 미국은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저작물의 가장 주된 수출업자로서 이미 1990년 중반에 FTA를 통하여 이러한 전술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1994년의 북미협정이 효과가 발휘되었는데, 그때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였다. 1995년에 이르러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고 역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도 집행되게 된다.



권을 강화한 결과 이는 너무 높은 보호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적인 이익만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 2. FTA와 지적재산권의 법적쟁점들

### 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지적재산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하여는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서 Business Method Patent로서 이는 각국의 특허청이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더 나아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적 요소가 운영체제나 방법으로서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지적재산법의 해석상 문제가 된다.<sup>4)</sup>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sup>5)</sup> 우리 저작권법은 이 저작물을 정의함에 있어 보호되는 대상의 실질적 내용을 정의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호의 가능성과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4) Lotus Dev. v. Borland Int'l, Inc., 49 F.3d at 818.

5)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 저작물에 대한 정의 참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2178)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한 예시로 분류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sup>6)</sup>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원천코드(Source Code)와 목적코드(Object Code)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비하여 미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창작적인 작품으로서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작품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sup>7)</sup> 이러한 형식주의적 입법례에 의하면 저작자의 창작적인 작품이라면 손으로 쓴 것을 포함하는 모든 표현매체에 고정된 것은 그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보호된다.<sup>8)</sup>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일 수 있어서 실질주의를 취하는 우리 저작권법보다는 넓은 저작물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 소프트웨어의 저작물로서의 보호의 범위와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사용자의 접속장치(Interface)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컴퓨터사용자를 위한 접속장치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가장 명백한 예가 프로그램의 화면영상이다. 특별한 명령과 키보드상의 키 그리고

6) 미 저작권법 제101조의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은 컴퓨터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표현형태로서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 자체와 구별된다. 1980년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부여 여부에 대한 논란은 중지부를 찍었다. 위 같은 법 제14조는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단계이거나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무단 복제하거나 각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17 U.S.C. §102, Copyright Act of 1976,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Works of authorship include following categories: 1) literary works, 2) musical works, 3) dramatic works, 4) pantomimes and choreographic works, 5) pictorial works,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6) 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7) sound recordings, 8) architectural works.

8) Magreth Barrett, p 180

프로그램의 명령을 위한 메뉴들은 프로그램의 사용자의 접속장치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도와 그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에 의하여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된다고 하여도 그 창작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는 각 국가의 법률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다.<sup>9)</sup>

### 나. 현장채집의 금지 bootlegging

현장채집이란 콘서트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음악으로서 아직 녹화되지 않은 것을 채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장채집금지권리는 아직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음악적 실연행위가 그 보호대상이다. 이 현장채집 금지조항은 TRIPS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이를 금지하는 일은 음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적재산과 관련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이러한 현장채집이 금지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1900년대부터 발생한다.<sup>10)</sup> 그 이후에 녹음기술이 발전하면서도 현장채집을 하는 것이 매우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성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는

9) 그러나 인터페이스에 사진을 게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Lisa M. Byelly, Look and Feel Protection of Website User Interfaces: Copyright or Trade Dres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249 (Feb, 1988). 또한 Apple 케이스에서 본 것과 같이 저작권침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작물을 분석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 전체를 하나로써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 Lisa M. Byelly, Look and Feel Protection of Website User Interfaces: Copyright or Trade Dres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246 (Feb, 1988).

10) 실제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채집행위는 정당한 음반 산업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음반산업은 20억달러가 세계적으로 1993년 현장 채집되었으며, 북미에서만도 약 40억달러가 실제 컨서트를 현장 채집하였다는 사실이 발생했다.

일에 대하여는 음악가들도 매우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아직 이러한 현장채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음악저작물의 개념정의에 이러한 현장의 공연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1994년까지도 현장 채집행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현장채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 졌다.

이러한 현장채집은 음악의 무단복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단복제는 상업적으로 이미 발매된 음반의 복제를 무단으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현장채집은 상업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공연행위를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미저작권법 1101조는 이러한 현장채집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비록 정당한 음반 산업을 보고한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반되어 저작권의 유사한 보호를 저작물이 아닌 것에도 보호한다는 논란이 있다. 미국은 현재 현장채집을 금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 다. 추급권 right of resale

추급권이라는 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자신의 원저작물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sup>11)</sup> 이 권리는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추급하여 행

11) 이 추급권은 1893년 파리에서 제안되었는데 1903년까지 룩셈부르크가 경매시장에서 추급권을 인정할 것을 로비를 해서 그 운동을 심하게 한 결과 수집상과 중간거래상들이 부정직하게 하는 것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예술가의 가난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오직 적은 돈만을 받고 수집상에게 넘기면서 수집상들이 많은 부를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추급권이 벨기에에서 1921년, 체코에서는 1926년, 폴란드에서는 1935년, 우루과이에서는 1937년, 이태리에서는 1941년 인정되었고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작품을 판매한 저작자라도 하더라도 그 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자신은 물론 상속권자에게도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추급권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회화, 도안, 스케치, 동판화, 조각, 원고, 그리고 프린트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또한 이는 일반 경매시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전문수집상의 판매는 물론 모든 개인적인 판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sup>12)</sup>

EU와 같은 법역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표현하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EU는 이 추급권을 각 가입국가들 사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는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고 오직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만 보호를 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대하여 이 추급권을 허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바로 이 추급권이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제도가 가장 상충하는 부분이 된다.

또한 이 추급권은 전문판매상은 물론 학자와 예술가 사이에도 찬반의 논란이 매우 많았다. 전문판매상들은 이 추급권이 예술적 저작물의 1차적 시장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와 EU가 벌이고 있는 FTA에서도 이 추급권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라. 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공연권이라 함은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 그 음반에 실린 음악저작물을 저작자 및 그 실연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

12) 이것은 총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될 수 있고, 가격이 증가하거나 이윤이 발생하거나 또는 총 가격이 일정한 양 이상 증가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또한 이는 최소한의 가격에 맞추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최저 1%에서 20% 까지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포기하거나 양도는 불가한 것이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집행은 저작자 개인이 하거나 또는 집단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는 권리를 말한다.<sup>13)</sup> 통상 공연권은 음악을 음반으로 만든 경우에 음반에 체화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을 쓴 사람이나 작곡가에 귀속하게 되고 또한 실연권은 음악을 실연한 실연자에게 주어진다.<sup>14)</sup>

따라서 음식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에는 즉 공연을 할 경우에는 작사자, 작곡가 등은 저작권자 및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정하여진 법정허락을 대신 받음으로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sup>15)</sup>

그러나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외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도 그 공연장소가 백화점, 비행기 기내 등 저작권법시행령상 규정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흥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sup>16)</sup>

13) 저작권법 전부개정[2006.12.28 법률 제8101호]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4) 실연자에게도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공연보상권을 가진다;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저작권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35호]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보편적으로 음반에 대한 공연권을 인정하는 것은 1996. 12월의 WIPO의 WPPT로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음악저작물과 기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sup>17)</sup> WPPT는 2002년 5월 20일 발효되었고 전세계에서 모두 57개국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는 음반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공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예술가와 제작자들에게 보호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정하는 예외 이상으로 공연권을 인정하기를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17)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Dec. 20, 1996, S. Treaty Doc. No. 105-17. 이러한 공연권은 1961년 최초로 로마협정이 실연자와 음반의 제작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과 1994년의 TRIPS에 규정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18) WPPT는 아직 고정되지 않은 공연에 있어서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외에도 실연자와 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구하는 EU의 공연보상청구권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공연권의 보호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EU와 FTA협상에 있어서 음반에 대한 강한 보호를 허용하여 주느냐의 문제는 결국 그 협상의 결과 우리나라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느냐의 문제일 뿐 지적재산법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sup>20)</sup>

### 3. 결 론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은 FTA는 물론 WTO에서도 가장 논쟁이 활발한 부분이다. 주로 이 협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는 전략을 취하여 보다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FTA는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넘어서는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를 포기하느냐의 여부는 지적재산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의 문제이다.

미국은 전세계경제교역량의 1/5을 점유하고 있고, EU도 이에 상응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FTA에서 TRIPS의 최소한도의 보호기준 이상으로 강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EU의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이 협상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19) 협상단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더 이상 음악을 듣기 힘들거나 심하면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20) 공연보상청구권이 저작권자나 가수, 음반제작자에게는 득이 되는 반면,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나 고객에게는 실이 되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원래 지적재산권자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허용하는 대신에 일반 공중에게는 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이다.



## SESSION 2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정도를 높여주는 대신에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로서 자국의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FTA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 토 론 문

오 윤 경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지적재산권 실시에 대한 독점규제의 필요성

### 1.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관련 FTA협정의 기본 취지

WTO(World Trade Organization)/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의 목적은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의 상이한 해석과 각국간의 상이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국제협약들을 편입시켜 다자적 질서 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미국 등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TRIPs 협정에 관한 협상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는 기술교역이 원활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의 기술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TRIPs 협정에서 그 대부분이 삭제되고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 조항만이 남게 되었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법은 일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킨바 있다.

### 2. 지적재산권이 실시에 대한 독점규제의 필요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은 '권리'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인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 손실보다 많은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정당성과 비판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sup>1)</sup>할 정도이다.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에도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무역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sup>2)</sup>, 또한 신기술이나 혁신기술일수록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오히려 기술발전에 역효과라는 연구결과<sup>3)</sup>도 있다.

지적재산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보상(economic return)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1)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1, 2005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ree Trade Agreements: Innovation Policy Issues", page 5 "As of yet, however, no conclusive study has demonstrated that the social benef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utweigh the costs. As a result, the justifications and criticisms of intellectual property remain open to challenge."

2) The World Bank,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Recent Economic Research" 2005, page 28 "The impact of IPRs on positive trade flows, in turn, is slightly negati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s somewhat surprising."

3) 예컨대, James Bessen & Robert M. Hunt, An Empirical Look at Software Patents, July 2003 (<http://www.researchoninnovation.org/swpat.pdf>). 여기서 저자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반드시 R&D를 줄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 특허가 R&D 투자를 증가시킨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되고 있고, 이것은 R&D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田中 悟?岡村 誠?新海哲哉, “기술지식의 보완성과 특허 친화 정책의 효과(技術知識の補完性とプロパテント政策の?果)” 後藤 晃?長岡貞男 편, “지적재산권제도와 혁신(知的財産權制度とイノベーション)” 동경대학출판회 (2003년) 228-248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대표되는 IT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사이의 보완성이 누적적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특허 친화(pro-patent) 정책은 상품화 단계에서 기술의 보완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특허 친화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질 가능성을 있으므로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는 특허 친화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차원에서 요청된다. 근본적으로 독점규제법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지적재산권법은 기술혁신과 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때로는 독점까지도 허용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양 법률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혁신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판례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반소하고 있어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이슈를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T AND COPYRIGHT

## FTA BETWEEN INDIA & KOREA PROPOSITION DIRECTION STRATEGY

Prof. Rajiv Khanna

(Law at Campus Law Centr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Delhi)

### The Background

The object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to have a global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ies of all the member countries now seems to be a distant dream.

The last Doha Round negotiations held under its aegis clearly reveal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 on the one hand and the various groups of developing countries, predominantly amongst them, the one led by Brazil and India, on the other hand.

These groups contend that the rich countries are able to market their agricultural products internationally at low prices due to the agricultural subsidies prevailing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ccordingly, they not only want the developed countries to heavily cut down their agricultural subsidies but also to should open up their markets for agricultural produce of the developing nations. These groups have made their positions loud and clear.

The rich developed countries have criticized this inflexible stand of the governmen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alleging it as an internal

politically motivated populist stand in order to remain in power.

Whatever might be the reaso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WTO are even today divided on the issues of opening up of trade barriers leading to globalisation of free trade.

Prediction of the outcome of further negotiations seems to be difficult owing to the tough and arm-twisting politics of trade liberalization being adopted by the groups of economically rich and industrialized nations.

Such uncertainties have resulted in frustrations in countries and groups of countries and many of them, who are having economic and development problems, have now started to switch over and are now concentrating heavily on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s).

FTAs & CEPAs cover not only trade in goods, but also services and investments.

These agreements are a clear pointer to the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minds and the crossing of the high barriers between/amongst the countries who are signing them. These agreements are also an outcome of thorough high-level deliber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negotiating countries.

#### FREE TRADE AGREEMENTS - General Description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generally made between two countries. Many governments throughout the world have either signed FTA or are negotiating, or contemplating new bilateral fre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agreements are like stepping stones towards international integration into a global free market economy. These can also be seen as another way to ensure that governments implement the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measures of the corporate globalization agenda.

It is assumed that free trade and the removal of regulations on investment will lead to economic growth reducing poverty and increasing standards of living and generating employment opportunity.

Past evidences show that these kinds of agreements allow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more freedom to exploit workers shaping the national and global economy to suit their interests. In simple terms it removes all restrictions on businesses.

By entering into Free Trade Agreement the two countries or group of countries agree to eliminate tariffs, quotas and preferences on most of the goods (if not all) between them. Countries choose FTA if their economic structures are complementary and not competitive

FTAs severely constrain future governments in their policy options and help to lock in existing economic reforms which may have been imposed by the IMF, World Bank or ASIAN Development Bank (ADB), or pursued by national governments of their own volition. FTAs work towards removing all restrictions on businesses as other fre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perform.

But the critics have criticised these agreements as poor economic strategies which are motivated by political gimmicks because of internal political unrest.

FTAs are sometimes of a narrow range in their dealing of traded goods. One can take the example of the USA US-Cambodia bilateral textile trade agreement which was extended in January 2002 for a further

period of 3 years.

India and Sri Lanka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in December 1998 with India agreeing to a phase out tariffs on a wide range of Sri Lankan goods within 3 years, while Sri Lanka agreed to remove tariffs on Indian goods over eight years. One of its objectives which was stated was to contribute, by the removal of barriers to bilateral trad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Other FTAs are much more comprehensive and cover other issues including services and investment. These agreements generally take existing WTO agreements as their benchmark. They often strive to even go further than what is set out in the WTO rules.

### Other Type of TRADE AGREEMENTS

#### **Framework Agreement**

#### **Regional Agreement**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 Framework Agreement

A framework agreement is one which sets the stage for future substantive liberalization by defining the scope and terms of reference for some new area of discussions. List of countries with which India enjoys Framework Agreement are as mentioned below:

- With GCC states i.e. The Member Stat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 With ASEAN i.e.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With Chile.



NOTE : India will eliminate tariffs in 2011 for Brunei Darussalam, Cambodia, Lao PDR, Indonesia, Malaysia, Myanmar,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will eliminate in 2011 and new ASEAN Member States i.e. CLMV will eliminate in 2016 for India. India and Philippines will eliminate tariffs for each other on a reciprocal basis by 2016.

### Regional Agreement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with Pakistan , Nepal , Sri Lanka , Bangladesh , Bhutan and Maldives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This trade gives preferential access to only certain products. It is done by reducing tariffs, but it does not abolish them completely. PTA is established through trade pact and it is the weakest form of economic integration. India enjoys PTA with the following countries:

- Afghanistan
- Chile
- MERCOSUR - It is a trading bloc in Latin America comprising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 It has Chile and Bolivia as its associate members.

MERCOSUR was formed in 1991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at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people among the four member countries.

However, recent negotiations for FTA and CEPA between India, Korea and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ern Asian Nations) on the one

## SESSION 2

hand and India an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have also reminded us of the two historical by flourishing trade centres of the world, viz. India and Korea.

These negotiations are at very advanced stages and would eventually revive and reopen the historically glorious Southern trade Route and the Silk trade Route with both India and Korea as the hub-centres for not only trade but also cooperation and partnership for mutual progress and prosperity.

### Pre-modern relations between India & Korea

Although India and Korea are geographically distant, there have bee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acts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nations dating back to ancient times. There existed trade between the 2 countries on the Southern Route (also known as the Ancient Tea Route or the Southern Silk Road ).

According to the "Samguk-Yusa" ("The Heritag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written in the 13th century (12 AD)(it is one of the books of Korean ancient history)-- a Princess from Ayodhya came to Korea and married King Kim-Suro and became Queen Hur Hwang-ok in 48 AD.

According to the Samguk Yusa, the princess had a dream about a king who could not find a queen, and asked her parents for permission to set out and seek the man. Upon approval, she set out on a boat, carrying gold, silver, a tea plant, and a stone which calmed the waters.

Archeologists have discovered a stone with two fish kissing each other - a symbol of the Gaya kingdom that is unique to the Mishra royal family of Ayodhya, India. This royal link thus provides further evidence of active commercial engagements between India and Korea since the

queen's arrival to Korea .

The enduring philosophy of the Buddha has also influenced the lives and thoughts of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 Economic & Scientif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India is being ranked as the 2nd. largest growing economy which a sustained economic growth above 8% over the period of last 3 years.

The Indian Government realizes the potential of the knowledge based industry and its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India today is a leading outsourcing destination for IT and IT enabled services (ITeS)

The phenomenal growth of the IT sector in India has been possible because of the liberal policies adopt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s also the law unde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of India provides a stable back-bone to e-commerce.

The Indian Government is promotes 100 percent direct investment in different sectors of IT industry and encourages an increased investment in telecom sector. The Government of India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IT related hardware manufacturing sector.

A national Venture Capital Fund has been set up to promote small scale IT units. Special Economic Zones (SEZ) and Soft Ware Technology Parks have been established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the IT sector.

There exists a well established IPR law and an independent judicial system to assure confidence in the investors. Information Technology has emerged as a crucial part of the Governments national agenda aimed at supporting higher growth as well as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The core competence of India is the availability of technically skilled and English speaking human resources at cost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 SESSION 2

most countries. The increasing awareness among Global companies about India capabilities in higher and value added activities is another factor. The stress on quality orientation, project and management expertise is yet another advantage.

Government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Data protection have helped in generating a high level of confidence in India amongst investors. The recognition of India's strengths internationally with domestic IT giants like Tata Consultancy Services Wipro Technologies, Infosys Technologies and HCL is leading the way to make India a major IT hub globally. These The IT and ITES (IT-enabled services and also BPOs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have demonstrated their competitive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the global market.

### Copyrigh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started vigorously enforcing the law under the Copy Right Act to protect copyrights. Various Indian and Korean Copyright Societies have entered into agreements. signing of bilateral agreements. The Societies which have entered into these agreements are :

#### Korean Copyright Societies:

- KRTRC,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Center
- KOMCA,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 Indian Copyright Societies:

- IRRO
- IPRS
- PPL
- SCRIPT
- IVAS

Over 170 Indian software companies have acquired ISO 900 certification. It also has abundant cost effective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the demand for such professionals is ever increasing.

India has made big strides in providing design services in the IT services around the world. Every System-on-a-chip (Soc) design product in the world market has an Indian contribution as major semiconductor companies have their design centers located in India .

Indian today is not only as exporter but also an importer. India is also a fast expanding Markey of consumer goods. In fact products manufactured by Korean industrial houses like Samsung, LG, Hyundai are in great demand and household names in India . POSCO is investing US\$12 billion to setup an integrated steel plant in India .

However, foreign industrial houses are afraid to invest heavily in India not only due to its poor infrastructure (roads and electricity) but also its labour laws which are not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economic developments.

Korea, on the other hand, is currently ranked among the top ten nations not only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but also in the world economies.

Today Korea has emerged as one of the topmost industrial superpowers. and has attained world class industrialization. It has secured such an important position as a global leader of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industry. It is now internationally competing with automobile majors of America and Japan .

Korea is one of the top petro-chemical processing industries of the world

It is also one of the biggest manufacturer for digital electronical goods

## SESSION 2

manufacturer and has also secured a very high global position in production of steel, machinery parts and heavy machinery.

Korea has also att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country having most advanced and excellent e-governance; e-business; and Logistics. Its e-governance is rated as No.1 in the whole world. The government is Korea is also promoting the robotics industry and it has the ambitious plan to ensure that in the next 10 years every Korean household will have at least one robot. Its research spending per GDP ranks 5th. In the world. It has also developed faster data transmission technology named Nomadic Local Area Wireless Access (NoLA).

Regarding Korea the great Indian Nobel Laureate Rabindranath Tagore had written in 1929: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of the east".

Today, not only due to the miracle of the River Han but also due to the scientific knowledge, hard work and sweat of people of Korea , this prophecy has come true.

### The Effects of FTA & CEPA between India and Korea

India's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will complement the hardware and manufacturing based economic structure of Korea, Moreover, in the competitive global trade India and Korea can jointly make highly advanced knowledge products to achieve a high market share.

India's competencies in pharmaceuticals and research in Bio-Nano-IT Technology will ensure emergence of new knowledge-based healthcare devices and medicine utilizing the rich bio-diversity of both India and

Korea.

The core competence of India is the technically qualified human resource well known for its software expertise. Korea has the cutting edge technology in IT hardware. There is tremendous scope for collaboration as complementarities and synergies are limitless. There remains a large untapped potential for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or.

These agreements will also boost trade with the other trading partners more particularly the member countries of EU and ASEAN, and thereby contributing large additions to global trade and also providing all of them industr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impetus.

On the other hand few economics are alleging that these agreements would result in trade diversions. Some are even stating that although India is the largest democracies in the world but is also a noisy democracy. And as a result of which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mmitments are not certain and to illustrate this they are citing India-US nuclear deal fiasco.

It is sometimes pointed out that India has some bottlenecks like poor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electricity and also that it has very high taxation and complex tariff laws. Some are critics also mention about the anti-dumping policies of India.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ndian Labour laws have not kept pace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industrial and market economy. Reports of poverty in India and wide disparities in incomes are cited as alarming. Starvation deaths and suicides by heavily indebted farmers reported in the Press and Media is mentioned in this regard.. India also has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bourer, many of whom are landless some reports estimate their figure at around 100 million.

## SESSION 2

These factors, true in some respects, are not roadblocks since they have existed for the

past several years and in spite of them India has been able to maintain sustained industri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growth consistently over the last several years .

By these agreements with Korea India will be able to provide integrated connectivity i.e. physical connectivity of the village clusters through quality roads and transport; better telecommunication, and knowledge connectivity through as well as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for farmers, artisans and craftsmen and entrepreneurship programmes. This would thus result in prosperity to the Indian Rural poor.

The future business hub center of the world is definitely Asia. Business and trade community of India and can make this region an economically developed region with robust E-business framework. This would lead to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education programmes and knowledge connectivity among the regional partners. It can also result in realizing technology upliftment, business development, joint ventures, free trade zone, employment generation and an overall prosperity of the region.

The FTA & CEPA between India & Korea will thus result i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such as Nano-Bio-Information technologies, the world knowledge platform and e-business network.

Apprehensions that the future political governments of India may not honour these agreements is totally baseless, false and ill-founded. In view of the fact that India has acquired a very strong internationally acclaimed reputation that it values the sanctity of its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mmitments. The earlier agreements with various countries and groups



of other countries amply illustrate this fact. Had this not been true the EU and also the USA, which a very strong partnership with Korea, would have vocally opposed these negotiations. Rather, all the reports from EU, its member countries and also other groups of nations are looking forward for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se agreements within couple of weeks hopefully by the end of 2007.

On the other hand these agreements will definitely result in some trade diversion of Korea, which at present is mainly focused in China. This is in the right direction as many economists are predicting the bursting of the Chinese economic boom bubble. These agreements no doubt will open new trade vistas for Korea, which in return would provide greate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is Korea will also have to reduce barrier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lso relax its laws for the inflow of high skilled workers. It will also have to quickly re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It is just the beginning for Global Trade without Barriers and also for Single Asian Currency.

## 中韩FTA之建构-----以IT产业为例

方芳

(山东大学威海分校法学院教师)

自20世纪90年代中期以来,新一轮的区域合作浪潮逐步席卷全球,成为当今世界经济发展的主要潮流。多哈谈判遇阻后,FTA (Free Trade Agreement) 发展明显加速,全世界签署的FTA数目不断攀升,至2005年底向WTO备案的FTA有307个。同欧洲、美洲经济一体化进程相比,目前东亚地区则是世界上仅存的区域经济一体化的空白区,虽然也有小范围的区域合作,但影响不大。在韩美贸易协定签署、中国和东盟之间的双边FTA已取得实质性进展的背景下,中日韩在亚洲最有影响力的国家之间的合作至今没有取得实质性进展。从政治经济关系现状来看,中日韩自由贸易区短期内实现的可能性仍然不大。所以目前比较现实的做法就是实现双边合作,推动中韩合作。以中韩为突破点,尽快建立中韩自由贸易区,进而推动中日韩三国乃至整个东亚地区的区域经济合作的发展是目前最佳的选择。

### 一、中韩FTA的现状

从中日韩三国的立场来看,中国一直是推进FTA进程的积极实践者。特别在加入WTO后,中国提出建立中日韩FTA的设想。中国商务部研究院于2003年5月21日发表了《中日韩自由贸易区可行性研究》的报告,提出三国建立FTA的条件已经基本成熟。

韩国与日本相比,与东亚其他国家并没有那么多的政治矛盾和历史遗留问题。亚洲金融危机之后,韩国不断地加快对外开放的步伐。韩国预测如果中日韩建立自由贸易区,韩国将是最大的受益者。韩国正在努力地成为中日韩FTA的中心,积极地促进建立中日韩FTA。

由此可见，中韩两国都有促成FTA的主观意愿，增强了中韩FTA的可能性。

## 二、中韩FTA的可行性

像中韩两国在地缘、人文和经贸关系上有如此相近、密切关系，在世界范围内都十分罕见，这为两国之间建立自由贸易区奠定了基础。

(一)优越的地缘关系。就地理方面来讲，中韩两国具有得天独厚的贸易优势。中韩可说是“近邻中的近邻”。相临近的地缘优势是建立中韩自由贸易区的基础，地理邻近国家经贸往来便利，不仅运输成本相对较低，而且可节约大量时间成本。中国同韩国合作有着无法比拟的天然优势。

(二)文化价值的相容性。就历史、文化方面而言，中韩两国自古就是友好邻邦，经贸文化交流十分紧密，这为两国之间建立自由贸易区奠定了基础。中国传统文化同韩国文化相互影响、渗透，文化交流成为了中国与韩国合作的“润滑剂”。

(三)经贸关系形成互补。韩国近几年经济发展迅速，与中国的经济贸易关系发展良好，是中国在亚洲建立自由贸易区的主要对象。中韩在1992年建交时，双边贸易额仅为50亿美元，而2006年则达到1343亿美元。中韩贸易规模实现1000亿美元仅用了13年，而中日贸易达到1000亿美元花费了30年。现在韩国为中国国别贸易统计中的第三大贸易伙伴，而中国成为韩国的第一大贸易伙伴和第一大出口市场。按照此趋势发展，2007年中韩贸易可望达到1500亿美元，超过韩美和韩日贸易的总额。

尽管中国经济与韩国经济存在一定的竞争性，但经济互补性强，而且这种互补性正在逐步扩大，因而中国与韩国的合作空间非常广阔。韩国拥有先进技术和雄厚资金，但市场狭小、自然资源和劳动力短缺<sup>①</sup>；而中国市

场容量大、资源和劳动力丰富，但缺乏资金和技术。经济上互补性是促使两国经贸关系迅速发展的基本有利因素<sup>②</sup>。中国出口到韩国的产品有70%为劳动密集型产品，而从韩国进口的产品中80%以上是资本密集型、技术密集型和知识密集型产品。FTA的签订可通过产业分工来发挥各自的优势，提高两国国际竞争力。

中国经济的发展带来了中国对外投资的增长。中国政府实施“走出去”战略，采取放宽对境外投资外汇的管制等一系列措施，鼓励企业进行对外投资。中国的外汇储备已突破万亿美元大关，资助中国企业到海外投资是有效利用这笔巨额外汇的最佳方式。这为韩国吸收中国资本注入带来了良好的机遇。而2001年以来中国成为韩国企业第一大投资国，截至2007年9月底，中国累计实际利用韩资377亿美元，韩国在华投资企业达到45000多家。两国互为投资对象，促进两国经济进一步融合。

(四) 通过FTA,减缓贸易保护主义。中国目前是外向型经济，商品所遭遇的反倾销调查世界排名第一。1995年WTO创立后到2006年6月为止，韩国受到的反倾销起诉案共223件，继中国（500件）之后位列世界第二<sup>③</sup>。反倾销案件的出现，意味着中韩两国商品在出国市场遭受强烈抵制，面临着强大的保护主义的制约。FTA建立后，可以减缓贸易保护主义，消除贸易壁垒，促进中韩贸易增长。

(五) 政治关系日益改善。中韩自建交以来，两国关系一直在良好地发展。两国高层交往频繁，从建交到建立全面合作伙伴关系仅用了六年时间。中韩两国在地区和国际事务中一直保持良好的合作关系。在地区安全方面，尤其是在维护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和无核化方面，中韩有着共同的语言。中国支持朝鲜半岛统一，同时与南北双方都保持睦邻友好关系。中韩两国政治关系的平稳顺利发展，为双方推进一体化进程奠定了基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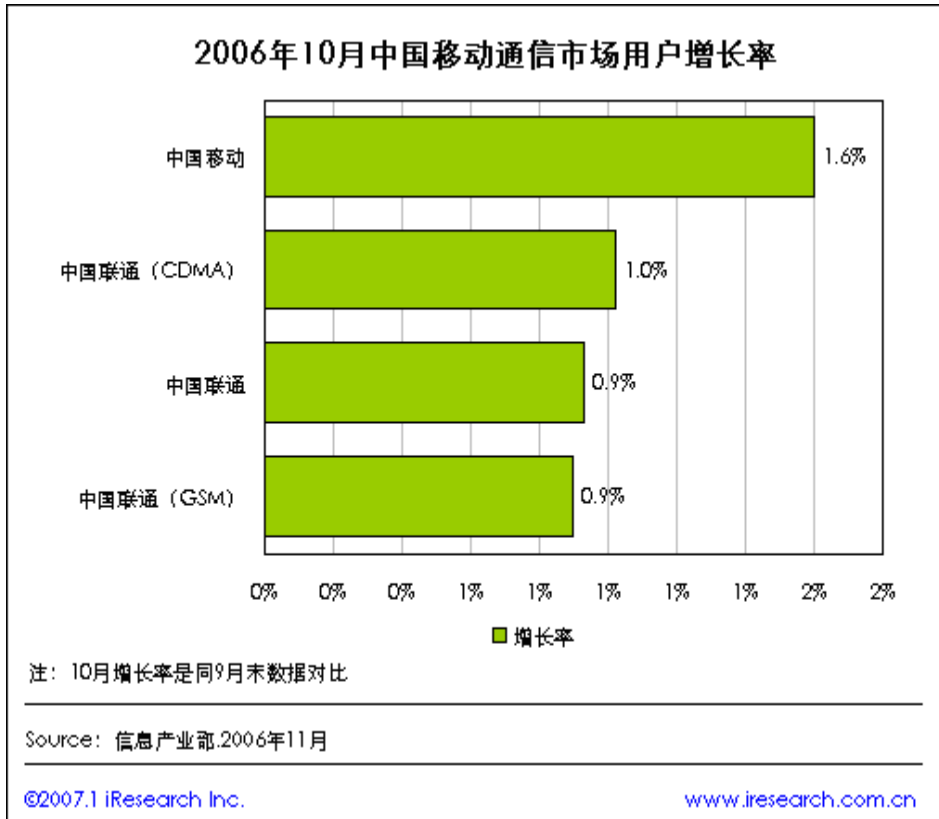
### 三 IT产业——中韩FTA焦点问题

中韩已经站在全球电子信息行业的前列。一组IT数据令世界惊叹：2004年，47%的电视机是在亚洲生产的，DVD中的“亚洲制造”占90%，70%的手机和92%的个人电脑也产自亚洲。2004年中韩两国IT领域的交易达到200亿美元的规模，从而中国成为韩国最大的IT交易对象国。2005年，韩国对中国的IT业务出口约占总出口的35%，IT产业已成中韩双边贸易的火车头④。

#### (扉) 中韩IT产业发展现状

##### 1. 移动通信

中国多数产品占世界的第一位。TV占世界生产的36%，空调和摩托车占50%，复印机占60%。但在半导体、移动通信等尖端领域里，中国企业的竞争力还比较薄弱。但随着信息化社会前进的脚步，中国移动通信产业发展的潜力十分巨大。作为发展中国家，中国自改革开放以来，通信业持续快速发展，移动通信成为中国最具发展活力的产业之一。1987年至2000年的10余年间，中国移动通信用户总数以年均100%增长速率迅猛发展。就整个电信市场而言，中国13亿人口中，固线电话有3亿7千万，移动电话有5亿1千5百万，互联网的使用是有1亿6千万，宽频有6100万的移动电话用户已经达到总人口的1/3⑤。中国两家主要的移动运营商，中国移动和联通，联通只用了两年多一点的时间就已经有了2500万以上的CDMA用户。联通在2G网络的基础上部署了CDMA2000网络。



韩国是世界上第一个快速部署CDMA网络的国家，韩国国内的手机厂商在CDMA手机生产上达到了规模经济的成果，并且把性能更加丰富、成本更低的手机出口到世界各地。韩国三家主要的运营商都已经部署了CDMA2000的网络，三家当中两家最大的SKT和KTF都已经升级到了CDMA20001X的网络。对于韩国的运营商来说，他们的语音网络非常成功，他们的数据服务做的也非常好，他们的数据APRU现在已经相当高⑥。

## 2. IT服务业

据中国信息产业部统计，截至2007年9月，中国互联网用户达到1.72亿。在今年上半年，这一数字为1.62亿。中国是世界上信息通信业发展

最快的国家之一。按照信息产业部"十一五"规划,到2010年,中国互联网用户数有望达到2亿,年均增长8%,普及率为15%。中国IT服务业已经成为中国IT市场中增长最快的一部分,而未来10年将是中国IT服务市场发展的黄金时期。2006年中国IT服务市场规模达595亿人民币。

而网络游戏IT服务业在中国正在以迅猛的势头发展,成为IT服务业中的生力军。《2006年中国游戏产业报告》显示,中国网游市场规模在2006年已达65.4亿元,并且还将连续多年以超过35%的速度增长。来自中国网络市场调查机构艾瑞咨询的调查显示,2006年,中国网游的市场规模已超越韩国,列世界第二;到2007年底,网游很可能超过移动增值成为中国网络经济中最大的行业。网络游戏所具有的价值链十分广泛,网络游戏对电信、IT、媒体与出版等相关产业的带动系数约为1:10。2002年网络游戏产业对中国电信业务收入的直接贡献为68.3亿人民币,对IT产业的直接贡献为32.8亿人民币,对媒体及出版业的直接贡献为18.2亿元人民币。

韩国是全球宽带普及率最高的国家,韩国网民仅有3400万,但却以74.8%的互联网普及率居全球首位。2004年,韩国的游戏产业市场规模已经达到43亿美元。网络游戏已成为游戏市场的主导,占整个市场的62%。韩国游戏产业的发展已超过以汽车制造为代表的传统产业,成为国民经济主导产业之一。据相关统计数据表明,韩国全体国民中有75%的人是游戏玩家,其中10~19岁年龄层为主流人群。网络游戏和手机游戏发展迅速,手机游戏持续快速发展,增长率达到45%。

### 3. 电子商务

随着中国互联网的迅速普及和发展,电子商务行业迅速发展起来。截至2006年,中国电子商务交易总额已经超过了7000亿元,其中来自于网上购物的收入达到312亿元,大约占全国零售商品总额的0.41%。

韩国电子商务的基础设施在国际社会公认为世界级水平,宽带普及率是世界上最高的。据国际数据公司(IDC)的一项调查,在信息化社会的排名

中，韩国居世界第八位，居亚洲首位。韩国的电子商务显示了迅猛的态势和持续的增长。2003年，韩国电子商务的规模达2040亿美元。2002年，韩国电子商务的规模增长48.8%，2003年增长38.7%。

## （二）中韩FTA中IT产业合作之基础

中国和韩国各自拥有自己的优势。中国不仅拥有无比广阔的市场、非常优秀的人才，并且在技术方面，还有很多已经打开全球市场的企业，如海尔、联想、华为、中兴等，已成为世界级的制造商。而韩国在CDMA的商用化方面比中国做得好；在家电产品的美欧市场开拓方面和宽带因特网的发展方面，也比中国要早；韩国在提供服务、基础设施以及技术研发上，比中国领先一步<sup>⑦</sup>。

虽然中韩还未签署FTA，但两国IT合作已经开始。中日韩三国信息通信部部长签署的《信息通信领域合作安排》，明确规划了三国在2008年北京奥运会信息通信领域的合作。2003年9月，中韩决定为成功举办2008年北京奥运会加强在IT领域的合作，并于当年11月指定韩国情报通信部与中国信息产业部之间的联络员，建立了协商渠道。韩国情报通信部一直积极予以支持，于2004年4月向韩国企业介绍了中方在北京奥运会方面的关注事项，并积极推动民间合作。目前，已将"三星"公司确定为2008年北京奥运会移动通信方面的正式合作伙伴。

自2000年下半年以来，以风险企业为中心的韩国IT企业开始逐渐进入中国市场，或与中国企业合作或进行小规模投资。进入2001年以后，韩国互联网、软件等IT风险企业加大了向海外进军的力度，其中以进入中国市场最为活跃，从2000年9月到现在，已进入中国市场或者有此意向的韩国IT企业已达100多家。三星、LG、现代、韩国电信（SK）等大企业已经开始与国内外企业联合对华投资，预计今后这种投资方式将越来越多<sup>⑧</sup>。



## 四、构建FTA中，IT行业合作面临的障碍

### (一) 中韩的经济民族主义。

在经济全球化和区域经济一体化的浪潮下，经济民族主义没有被削弱反而不断被强化。例如中国一些地方政府的招商引资政策缺乏连续性、稳定性和透明度，地方保护主义盛行<sup>⑨</sup>。作为单一民族的韩国，对外国产品和企业的排斥更加严重。例如：中国海尔集团在收购韩国大宇电子公司的优先谈判竞争中落选。韩国债权团迫于社会舆论压力，最终决定将大宇电子以7亿美元的价格出售给印度电子企业Videocon公司。大宇电子所担心的舆论主要来自于韩国国内越来越高涨的"反对技术外流"的声音。

(坎) 中国对韩贸易存在巨额的贸易逆差，收支失衡。

这是中韩FTA中所面临的障碍。近年中韩贸易不断扩大，韩国对中国出口额成倍增长，中国却连续遭受严重贸易逆差。1999年前每年不到100亿美元；2005年，中国贸易逆差417.13亿美元；2006年，中国逆差452.5亿美元；而2007年1-8月，中国贸易逆差达到300亿美元。根据韩国的统计，自2003年起，中国已经成为韩国仅次于美国的最大贸易顺差国。产生如此大逆差的原因之一就是韩国对中国的贸易限制（包括关税壁垒和非关税壁垒），中国对韩国的出口增长低于进口的增长。若不解决中国如此大的贸易逆差，则两国建立自由贸易区的道路会较艰难。

### (三) 软件开发中的版权之争

随着中韩IT行业往来日益增多，中韩IT业软件版权争端必将日益增多。2007年中韩网络游戏公司上海盛大和韩国唯美德公司《传奇》知识产权之争的起起落落，揭示未来软件开发和使用过程中，在产品版权贸易协议和运营代理必将存在版权争端。

## 五、中韩采取的措施

### (一) 坚持开放型的民族主义，实现共赢。

中韩两国都是民族性很强的国家，经济民族主义是对本国经济安全的考虑，但应在保证本国经济安全的前提下，融入全球化。特别在经济领域，中韩应以开放的姿态，主张“开放型的民族主义”，积极推动中韩FTA。

### (二) 中韩两国政府应加强合作和交流。

中、韩两国可建立政府级的合作组织，进行政府间的高层会晤和对话，设立政府间的常设机构，在10+3、WTO、APEC等多边领域继续保持沟通与协作，以期促进中韩FTA的形成。建立争端解决机制，对经常发生的经贸纷争、摩擦进行磋商、调解和仲裁，为未来自由贸易区的制度建设创造条件。中韩两国都是涉及实质性关税减让的《曼谷协定》的成员国，两国至少可以在已有的协定的基础上考虑如何推进到自由贸易协议，更好地发挥两国的比较优势。

### (三) 采取措施，缩减贸易逆差。

针对中国存在巨额贸易逆差的情况，韩国应积极减少贸易壁垒，进一步减少调节关税品目，消减高额关税。同时也应该逐步开放市场，客观公正地对待中国市场经济地位问题，尽早给予中国出口产品以公平待遇。中国在增加进口的同时，也应积极开拓市场，生产适销对路的商品扩大对韩国的出口。

(四) 在产品版权贸易协议和运营代理协议中明确开发商与运营商的权益，避免版权争端。

按照知识产权的特征分析，如果对权利的专有性和权利的复制性能找到利益上的平衡，对权利的授权能有效的规范，就可以达到传播的目的，形成对信息的保护和增值。两国都是中韩两国同作为《伯尼尔条约》的成员国，对于软件版权的保护可以参照有关该公约的规定。

(五) 加强两国IT产业间的合作。

#### 1.两国IT企业合作。

通过两国优秀IT企业的合作，共同开拓亚洲和国际市场。通过展览会、国际性会议或者说明会等形式，扩大进出企业和市场间的联系。例如：中韩两国最大的游戏公司正式合作。盛大互动娱乐有限公司(Nasdaq:SNDA)已取得韩国领先游戏商NCsoft Corporation开发的3D大型网络游戏《AION》在中国大陆的独家运营权，双方达成了战略合作协议。这标志着中韩两国最大的网游公司，就此结成战略联盟，对中韩、乃至世界网游产业格局都将产生重大影响。

#### 2.电子商务技术的合作。

虽然中国的电子商务市场规模还比较小，但是随着互联网使用人数的增多，增长潜力十分巨大。反而，韩国的电子商务市场规模在扩大，但是潜力没有中国那么大。两国可以共同建构面向中韩两国间贸易的电子商务贸易网站。两国电子商务现在发展迅速，都有向外拓宽市场的意向，这为两国电子商务贸易网站的建立奠定了基础。

### 3. 扩大专门人才的交流。

确保中韩之间的对话渠道，促使顺利地选定合作伙伴，以人才交流的民间组织形式畅通对话渠道。设立共同培养IT人才的交流机构。

## 六、结语

FTA的基础就是内部开放市场，相互提供优惠，这样的结果是以区内不断扩大和增长的贸易取代与区外国家的贸易，区外的国家和地区不能享受区内的种种优惠，从而导致外来产品的竞争力下降。签署FTA是世界经济发展的趋势。中日韩三国在成立FTA的问题上，还存在着种种问题，例如存在着严重的政治和意识形态的问题、三国政府各自热衷自己的FTA的谈判以及FTA主导权的竞争等等问题。中、日、韩三国在东亚地区的政治经济地位决定了它们在构建区域合作框架中的主导作用。没有它们的参与和紧密合作，东亚不可能出现真正的联合与合作。所以首先以中韩合作为契机，为中日韩三边合作积累经验，为建立中日韩经济合作机制奠定良好基础，推动日本的加入，最终真正实现东亚经济一体化。

注 释：

- ① 高光锐：《中韩企业合作发展态势探析》，载《中国软科学》2001年第8期。
- ② 李靖宇、尚立惠：《关于中韩两国经贸合作战略升级问题的现实论证》，载《国际论坛》2004年第3期。
- ③ 朴贤洙：《韩美FTA与韩国经济的未来》，载《当代韩国》2007年夏季号。
- ④ 《IT业成中韩贸易火车头，占总出口额的1/3强》，载中国经济网2005年11月23日。
- ⑤ 《BDA成长中的中国市场与追赶中的印度市场》，载通信世界网2007

SESSION 2

年11月9日。

- ⑥ 《全球3G正跨过技术和市场的门坎》，载翼智电子网。
- ⑦ 《韩通信部长：中韩IT领域优势互补应加强合作》，载石油通讯频道网2005年7月20日。
- ⑧ 《韩国IT企业进军中国的战略》，载搜狐网2001年5月30日。
- ⑨ 《中韩经贸关系：成就、挑战与前景》，载上海国际海事信息与文献网2007年4月5日。

## 중·한 FTA 구축에 관하여 -IT산업을 예로 하여-

20세기 90년대 중기부터 지역협력의 붐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세계적인 경제발전의 조류가 되고 있다. 도하 협상이 실패를 겪은 후 FTA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전 세계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수량이 부단히 늘어났으며 2005년 말까지 WTO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무려 307개나 달하였다. 유럽, 미주 경제 일체화 진도와 비교하면 동아시아 지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경제 일체화가 없는 지구이다. 비록 소위의 지역협력이 있긴 해도 그 영향력 또한 매우 미흡한 것이다. 한미 FTA 무역협정의 체결과 중국과 동유럽의 FTA 협정도 그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비해 중·일·한-아세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은 여직 진전이 없다. 정치경제관계적인 현황으로부터 보면 중·일·한 자유 무역지구는 단기 내에 실현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쌍방향작-중·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한국을 돌파구로 빠른 시간 내에 중·한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하여 중·일·한 3개국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구의 지역적 경제협력발전이야말로 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I. 중·한 FTA의 현황

중·한·일 3개국의 입장에서부터 볼 때, 중국은 줄곧 3개국의 FTA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중·일·한 FTA 협정을 구축할 구상을 제기하였다. 중·한 상무부 연구원에서는 2003년 5월 21일에 《중·한·일 자유 무역지구 실행 가능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3개국이 FTA를 구축 할 조건을

갖추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권의 기타 나라와의 정치적 모순과 역사적문제가 일본에 비해 많지 않다. IMF 이후, 한국은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다그쳤다. 한국의 예측에 의하면 중·한·일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하게 되면 한국이 최대 수익자가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한·일 FTA의 중심이 되기 위해 중·한·일 FTA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시다 싶이, 중·한 양국이 FTA를 구축하려는 주관 의지는 중·한 FTA 체결의 가능성을 더해주었다.

## II. 중·한 FTA 실행 가능성

중·한 양국의 지리적, 인문적, 경제적의 밀접한 관계는 양국 간에 자유무역지구를 구축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초로 된다.

### 1. 우월한 지리적조건

중·한 양국은 “근친중의 근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리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무역하기에는 더없는 우세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은 양국 간의 왕래에 편리를 도모하며 또한 이런 편리는 운송 단가를 낮출뿐더러 대량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천연적인 우세는 양국이 중·한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하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해준다.

### 2. 문화가치의 상용성

역사, 문화를 그 예로 중한 양국은 오래전부터 경제무역문화교류활동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다. 중·한 양국의 문화는 상호영향, 침투되었으며 이런 문화교류는 중·한 협력에 윤활제로써 역시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하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

### 3. 경제무역관계가 상호보완적이다.

근년에 한국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 발전 역시 양호하며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 할 주요 대상자이다. 1992년 외교관계를 맺을 때, 쌍방 무역액은 50억불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무려 1343억불에 달하였다. 중·한 무역규모를 1000억불 실현하는데 중·한 양국은 13년이란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중일 무역은 1000억불을 실현하는데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현재 한국은 중국 국가별 무역 통계중의 제3대 무역 동반자이며 중국 또한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이며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런 추세대로 발전한다면 2007년 중·한 무역액은 1500억불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한미, 한일 무역의 총액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비록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경쟁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더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로 보충되는 범위가 더 넓어가며 또 이로 인한 양국 간의 협력 공간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적인 기술과 충분한 자금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고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부족하다<sup>1)</sup>. 반면에 중국은 시장용량이 크고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딸리고 자금이 부족하다. 경제적상호보완성은 양국이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유리한 요소라고 한다<sup>2)</sup>.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70%는 노동 밀집형 상품이지만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80%는 자본 밀집형, 기술 밀집형, 지식 밀집형 상품이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산업 분공으로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여 양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 高广锐：《中韩企业合作发展态势探析》，载《中国软科学》2001年第8期。

2) 李靖宇、尚立惠：《关于中韩两国经贸合作展略升级问题的现实论证》，载《国际论坛》2004年第3期



중국 경제의 발전은 중국의 대외투자를 증가시켰다.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나가자”라는 전략적 방침은 대외외환투자에 관한 정책을 완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취하여 기업의 대외투자를 적극 지지하였다. 중국의 외환저축은 이미 만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중국 정부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거액의 외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자본을 흡수하여 본국에 주입하는 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2001년 이래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1투자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9월까지 중국에서 한국의 자본실제이용액은 누계 377억불에 달하였으며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수효는 무려 45,000여개가 된다. 양국은 서로가 투자대상으로써 양국의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진일보의 융합이 필요하다.

#### 4. FTA를 통하여 무역보호주의를 줄여야 한다.

현재, 중국은 외향성 경제인데 중국 상품이 받는 반 덤핑조사가 세계에서 제1위이다. 1995년 WTO에 가입해서부터 2006년 6월까지 한국 상품이 받는 반 덤핑기소사례도 총 223건으로써 중국(500건)의 뒤를 이은 제2위였다<sup>3)</sup>. 반 덤핑사례가 일어난다는 것은 중·한 두 나라의 제품이 수출국시장에서 강렬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또한 강대한 “보호주의”제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FTA를 구축하여 무역보호주의를 줄이고 무역장벽을 없앴으로써 중·한 무역의 증가를 촉진시켜야 한다.

#### 5. 정치적관계의 개선

중·한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양국은 줄곧 양호한 발전을 유지해왔다. 양국 정상의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어서 6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전면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중·

3) 朴賢洙：《韩美FTA与韩国经济的未来》，载《当代韩国》2007年夏季号。

한 양국은 지역적, 국제적 사무에서 줄곧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역안전 방면에서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힘을 모아왔다. 중국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또한 남,북한과 모두 우호적인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한 양국의 정치적관계의 평온하고 순리적인 발전은 쌍방이 일체화를 추진하는 데에 기초를 다져주었다.

### Ⅲ. IT산업- 중·한 FTA 이슈

중·한 양국은 글로벌 전자정보업계의 선두에 서 있다. 한조의 IT데이터는 전 세계를 놀랬었다: 2004년, 47%의 TV, 90%의 DVD, 70%의 휴대폰, 92%의 컴퓨터가 “Made in Asia”인 것이다. 2004년 중·한 양국의 IT분야의 무역액은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IT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 한국 대 중국의 IT분야 수출은 총수출의 35%를 차지하였으며 IT산업은 이미 중한 쌍방무역의 선두로 불리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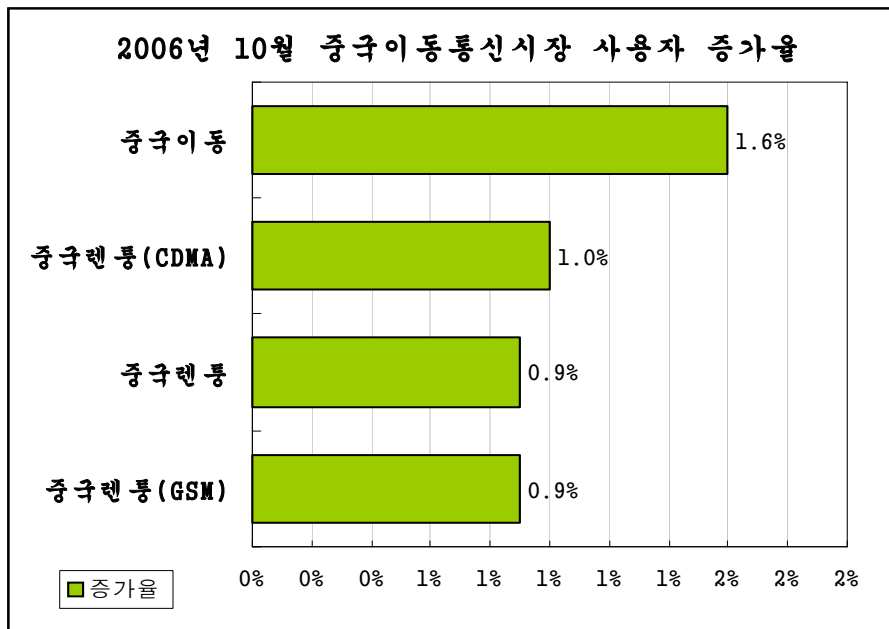
#### 1. 중·한 IT산업의 발전 현황

##### (1) 이동 통신

중국의 대다수 제품의 생산량은 세계적 1위를 차지한다. TV생산량은 총생산량의 36%, 에어컨과 오토바이의 생산량도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반도체, 이동 통신 등 첨단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박약하다. 정보화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이동 통신 산업도 그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발전 중 나라로써 개혁개방이후, 통신업이 쾌속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중 이동 통신 산업이 바로 중국에서 발전 전망이 제일 넓은 산업중의

4) 《IT业成中韩贸易火车头, 占总出口额的1/3 强》, 载中国经济网 2005年11月23日。

하나이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10여년간, 중국 이동 통신의 사용자 수는 연간 100% 무서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정보통신시장을 예로 들어,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일반 전화기 사용자 수는 3억7천만 명으로, 이동 전화 사용자 수는 5억 천 5백만 명으로, 인터넷 사용자도 1억6천만 명으로, 초고속 인터넷은 6100만 명으로써 이동 통신의 사용자 수는 총인구수의 1/3을 차지한다<sup>5)</sup>. 중국에는 주로 2개의 이동통신 운영업체가 있다. 즉, 중국 이동통신과 렌통이다. 그중 렌통은 단지 2년이라는 시간 내에 2500만 명의 CDMA사용자를 확보하였으며 2G의 네트워크 기초 상에서 CDMA2000 네트워크를 배포하였다.



주: 10월 증가율은 9월 데이터와 비교

Source : 정보산업부 2006년 11월

www.iresearch.com.cn(이 부분 내용 원본 참고해주세요)

5) 《BDA成长中的中国市场与追赶中的印度市场》，载童心世界网 2007年11月9日

한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CDMA 네트워크를 배포한 나라이다. 한국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CDMA 휴대폰 생산에서 이미 규모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또한 기능적으로 더욱 다채롭고 단가 낮은 휴대폰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3개의 주요 운영업체들은 이미 CDMA2000네트워크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SKT와 KTF는 이미 CDMA20001X 네트워크까지 업로드 시켰다. 한국의 운영업체들의 언어 네트워크가 성공적이었으며 데이터 서비스도 매우 출중하다. 또한 APRU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sup>6)</sup>.

## (2) IT 서비스업

중국 정보산업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9월까지 중국 인터넷 사용자수는 1.72억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수치는 1.62억 명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정보산업부의 《十一五》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2억에 달할 것이며 연간 증가율은 8%, 보급률은 15%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중국 IT 서비스업은 이미 중국 IT시장에서 증가율이 제일 빠른 한 부분이 되었으며 미래 10년은 중국 IT서비스 시장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중국 IT서비스 시장규모는 이미 595억 원(인민폐)에 달하였다.

온라인게임 IT서비스업이 중국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그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IT산업의 신예 부대로 급성장 하였다. 《2006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가 제시한데 의하면 중국 온라인게임 규모가 2006년에 이미 65.4억 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속 몇 년간 35%속도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온라인시장조사기구인 《艾瑞咨询》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중국 온라인게임의

6) 《全球3G正跨过技术和市场的门坎》，在翼智电子网。

시장규모는 이미 한국을 초월하여 세계 제2위에 이르렀으며 2007년 연말까지 온라인게임의 증가율은 이동 통신의 증가율을 초과하여 중국 네트워크경제에서 최대 업계가 될 것이다. 온라인게임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사슬은 매우 광범위하다. 온라인게임이 전자통신, IT, 매체와 출판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帶動지수는 약 1:10이다. 2002년 온라인 게임 산업이 중국 전자정보 업무수입에 기여한 직접영향으로 약 68.3억 원(인민폐)이었고 IT산업에는 32.8억 원 (인민폐), 매체 및 출판사 산업에는 18.2억 원(인민폐)이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다. 한국 네티즌수는 34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74.8%의 보급률로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2004년, 한국의 게임 산업 시장규모는 이미 43억 달러에 달하였다. 온라인 게임은 이미 게임 시장의 주도적 산업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유관 데이터통계에 의하면 한국 전 국민의 75%는 게임을 즐기며 그 주요연령층은 10~19세로서 중,고등 학생이다. 온라인 게임과 휴대폰 게임이 발전이 빠르며 그중 휴대폰 게임은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그 증가율이 무려 45%에 달하였다고 한다.

### (3) 전자상거래

중국 인터넷의 신속한 보급, 발전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업계가 신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총액이 이미 7000억 원을 초과했다. 그중 인터넷쇼핑수입이 312억 원에 달하여 전국 상품판매총액의 0.41%나 차지하였다.

한국 전자상거래의 기초시설은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세계급 수준이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에서 최고이다. IDC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의 배열순위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제8위이고 아시아 범위에서는 제1위이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는 지속적인 발전과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3년에 한국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40억 달러에 달

하였다. 2002년 한국전자상거래의 규모는 48.8%, 2003년에는 38.7% 증가하였다.

## 2. 중·한 FTA에서 IT산업협력기초

중국과 한국은 각자의 우세가 있다. 중국은 13억 인구라는 대 시장이 있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 이미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한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이얼, 렌샹, 화위이, 주웅싱 등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CDMA의 상업화, 가전제품의 유럽시장개발,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 등 면에서는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기초시설 기술연구 개발에서 중국에 비해 많이 앞서가고 있다<sup>7)</sup>.

비록 중·한 양국은 FTA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IT면에서의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중·일·한 3개국 정보통신부 부장이 체결한 《정보통신영역협력배치》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 정보통신영역의 협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하였다.

2003년 9월, 중·한 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IT영역의 협력을 결심하였다. 당해 11월에 한국 정보통신부와 중국 정보 산업부 연락관을 지정하여 협상루트를 구축하였다. 한국 정보통신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2004년 4월에 한국 기업에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의 관심 분야를 소개해 주었으며 적극적인 민간 협력도 추진하였다. 현재, 삼성그룹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동 통신 방면의 정식적인 협력 동반자로 책정하였다.

2000년 하반기부터 모험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IT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혹은 중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혹은 작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2001년부터 한국의 인터넷, 소프트웨

7) 《韩通信部长：中韩IT领域优先互补应加强合作》，载石油通讯频道网 2005年7月20日。

어 등 IT모험 기업들은 은 해외 발전을 다그쳤는데 그 중 중국시장을 향한 투자가 제일 활약 적이었다. 200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의향이 있는 한국 IT기업은 무려 100여개에 달했으며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들도 중국내 외국 기업들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금후, 이런 투자 방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sup>8)</sup>.

#### IV. FTA 구축에 있어서 IT계 협력이 직면한 장애

##### 1. 중·한의 경제민족주의

글로벌 경제의 지역 경제가 일체화 되어가는 붐이 일고 있지만 경제민족주의는 쇠약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에서의 기업유치, 자금도입 정책이 연속성, 안정성과 투명도가 낮고 지방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하다<sup>9)</sup>.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써 외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배타 심리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하이얼 그룹이 한국 대우전자회사를 구입에서 우선협상경선에서 떨어진다. 한국 재단에서는 여론의 압력에 마지못해 최종적으로 대우전자를 인도 전자기업인 Videdodn회사에 7억 달러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우전자에서 우려하는 주요 여론은 국내에서 점점 높아가고 있는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반대하자”는 목소리였다.

##### 2. 중국이 대한 무역에서의 거액의 무역적자로 인해 수지가 균형을 잃었다.

이것은 중·한 FTA를 구축하려는 데에 직면한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근년에 중·한 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한국 대 중국 수출액이 배

8) 《韩国IT企业进军中国的战略》，载搜狐网 2001年5月30日。

9) 《中韩经贸关系：成就、挑战与前景》，载上海国际海事信息与文献网 2007年4月5日。

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당해야 했다. 1999년 전에는 매년 100억 달러, 2005년에는 417.13억 달러, 2006년에는 452.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7년 1~8월까지 중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의 뒤를 이은 무역 흑자 나라로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적자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한국이 대 중국 무역 제한 제도이다.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포함된다.) 중국이 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과 비해 낮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거액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이 자유 무역지구를 구축하는데 그 길이 더 험난하지 않을까?

### 3. 소프트웨어 개발 중의 저작권 경쟁

중·한 IT업의 왕래가 빈번해 짐에 따라 중·한 IT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경쟁이 꼭 많아 질 것이다. 2007년 중·한 온라인 게임 회사 샹하이 썬다와 한국 唯美德 회사의 《전기》 저작권 경쟁의 起起落落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 과정 중, 상품 저작권 무역 협의와 대리 운영은 꼭 저작권 경쟁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 V. 중·한 양국에서 취해야 할 조치

### 1. 개방형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共贏을 실현하다.

중·한 양국은 민족성이 아주 강한 나라이다. 경제 민족주의는 본국 경제 안전에 대한 우려로써 본국 경제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중·한 양국은 개방적인 태도로 “개방형 민족주의”를 주장하여 중·한 FTA 협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중·한 양국정부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한 양국은 정부 급 협력 조직을 구축하여 정부 간에 고층 회담과 대화를 진행하고 정부 간에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10+3, WTO, APEC 등 다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구하여 중·한 FTA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주 일어나는 경제 무역 분쟁, 마찰에 대하여 협의, 조절, 중재를 하며 미래 자유 무역구의 제도 건설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또한 실질성 관세를 줄이는 《방콕협정》의 성원국이다. 그러므로 양국은 현존의 협정의 기초 상에서 어떻게 자유 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양국의 우세를 적절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3.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의 거액의 무역 적자에 대해 한국에서는 응당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줄이고 관세 품목을 줄여야 하며 고액의 관세를 절감해야 한다. 동시에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 시장경제 지위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을 증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불티나는 제품을 생산하고 대 한국 수출을 확대 시켜야 한다.

4. 제품 저작권 무역 협의와 대리 운영 협의에서는 개발 기업과 운영 기업의 권익을 명확히 하며 저작권 분쟁을 피면해야 한다.

지적 소유권의 특징 분석에 의하면 만약 권리의 专有性과 권리의 복제성이 이익상의 평형을 찾을 수 있다면 권리라이센스(授权)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범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파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 정보에 대한 보호나 평가절상(?)을 이룰 수 있다. 양국 또

한 《네팔조약》의 성원국으로서 이 공약의 규정을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실행할 수 있다.

### 5. 양국 IT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1) 양국의 IT 기업의 협력

양국의 우수한 IT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나아가서 국제 시장을 공동 개척해야 한다. 전시회, 국제성 회의, 혹은 설명회 등 형식을 통하여 진출 기업과 시장 간의 연락망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 예로 중·한 양국의 최대의 게임회사의 정식적인 협력이다. SNDA 유한회사는 이미 한국의 유명한 게임회사 Csoft Corpdration에서 개발한 3D 대형 온라인 게임 《AION》이 중국 대륙에서의 독점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며 쌍방은 전략협력협의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중·한 양국 최대의 온라인 게임 회사가 이로부터 전략연맹을 결성하였으며 이는 중·한 나아가서 세계 온라인 게임 산업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 전자상거래 기술의 협력

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아직 작지만 인터넷 사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증가 잠재력은 무한한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커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중국에 비해 크지 않다. 양국은 공동으로 중·한 양국 간 무역을 향한 무역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양국의 전자상거래는 지금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을 넓힐 의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은 양국이 전자상거래 무역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

### 3. 전문적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중·한 양국의 대화 루트를 확보하여 협력 동반자를 순조롭게 선정

하며 인재 교류라는 민간조직형식으로 대화를暢通시킨다. 또한 공동으로 IT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VI. 결 론

FTA의 기초는 내부적인 시장 개방이다. 즉 상호적으로 특혜를 제공하여 지구 내 확대되고 증가 된 무역이 지구의 무역을 대치하게 된다. 지구 외 국가와 지구는 지구내의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외래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FTA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흐름이다. 중·일·한 3개국 FTA 무역협정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정치적 의식형태, FTA 주도권의 경쟁 등등이다. 중·일·한 3개국의 동아시아 지구에서의 정치적 지위가 지구협력들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결정짓는다. 3개국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이 없다면 동아시아에는 진정한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중·한 협력을 계기로 중·일·한 3개국의 협력을 위하여 경험을 쌓아야 하며 중·일한 경제 협력메커니즘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 일본의 참여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 토 론 문

양 평 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 최근 한중 관계와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변화

2007. 11. 28

양 평 섭  
(KIEP 중국팀장)

## I.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 현황과 특징

## II. 대중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거시경제 환경 변화
- 중국의 정책 및 제도변화
-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 평가
- 대중국 수출환경 평가

## III. 공작기계산업에의 시사점

## 1. 한국은 중국 부상의 최대 수혜국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무역흑자 유지,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

-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2004년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 대중국 수출액 : (92년) 27억 달러 → (06년) 695억 달러 (연평균 26.3% 증가)
- 93-2006년 한국 수출 증가에의 중국기여율 : 27%
- 93-2006년 대중국 누계 무역 흑자 : 1,147억 달러 (대세계 누계 흑자의 88% 차지)

한국의 대중국 교역 변화  
(억 달러)

	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2	64 (5위)	27 (6위)	37 (5위)	-10
2006	1,181 (1위)	695 (1위)	486 (2위)	209
연증가율 (%)	23.2	26.3	20.1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06년)  
(억 달러)

국가	교역액	수 출	수 입
중국	1,181	695	486
일본	784	265	519
미국	768	432	337
EU	710	437	273

( ) 일본 한국수출입에서 순위 순위

3

## 1. 최근 대중국 교역 동향

- **금년 대중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수입증가율>수출증가율**
  - 2004년 4/4분기 이후 한국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 지속
    - 한국 수출증가율이 2004년 2/4분기 이후 지속적 하락세 유지
- **한중 교역의 안정화 단계 진입**
  - 대중 수출증가율 :
    - 대중국 무역역차(억 달러) : (05) 233 - (06) 209 - (07.1-9)137.0(-12.8%)
    - 대중 무역수지 흑자 비율 축소 : (04) 28.2% - (06) 19.3% - (07.1-9)13.1%

〈한국 수출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



	2004	2005	2006	2007. 1-9
수출	478.6 (41.7)	619.2 (24.4)	696.6 (12.2)	590.2 (16.2)
수입	295.9 (36.0)	366.5 (19.6)	485.6 (25.8)	453.2 (41.3)
수지	201.6	232.7	209.0	137.0

## 대중국 수출의 양극화 현상

- 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2007년에는 다소 회복세 유지
  - 10대 대중국 수출상품의 증가율 둔화 : 05년 35.0% → 06년 9.7%
  - 오조용적 :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모니터), 반도체, 향약기기
    - 중국내 원재료 생산 및 수출 호조, 현지법인의 조립 확대, 중국의 낮은 자급도 상용 등
  - 부진용적 :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철강판
    - 중국전용 한국기업의 생산 부진,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중국의 수입선 전환 및 중국내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의 점진적 추진
    - 중국내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대중 10대 수출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 (%)〉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1-9
총계	47.8	41.7	24.4	12.2	16.2
평판디스플레이	249.0	199	90.1	251.8	127.7
석유제품	46.5	54.0	23.0	54.1	-9.5
무선통신기기	40.8	13.0	5.8	14.4	29.9
강철판	32.8	69.0	36.3	15.8	6.2
반도체	111.5	98.0	117.0	14.8	18.7
자동차부품	25.1	45.0	19.8	9.0	15.1
자본자부분	499.5	84.0	55.1	-1.8	-17.8
향약기기	66.8	45.0	-5.1	-6.8	31.2
철강판	86.4	29.0	11.0	-21.8	-12.6
향약기기	551.9	319	110.3	-37.3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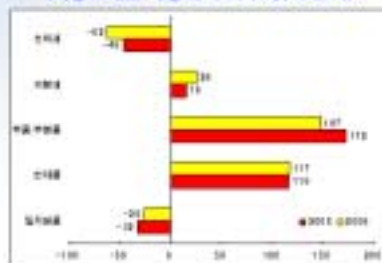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 교역 3대 특징(1)

- 중간재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
  - 2006년 대중 중간재 수출액은 540억 달러(대중 수출의 78.9% 차지)
    - 부 품 비중 : (95) 7.5% → (05) 40.6% → (06) 36.3% (06년 하락)
    - 반제품 비중 : (95) 72.8% → (05) 41.1% → (06) 42.6% (06년 상승)
    - 2006년 부품과 소재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
  - 대중 수출의존도(06년): 전체 21.3%, 반제품 30.2%, 부품·부분품 29.6%, 자본재 12.9%, 소비재 4.7%

〈가공단계별 대중 교역구조(%)〉

	2006년		2005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일차산품	6.6	9.4	6.7	6.3
중간재	62.6	54.7	78.9	57.3
- 반제품	42.6	35.3	42.6	36.3
- 부품·부분품	46.6	19.4	36.3	21.0
완성재	17.3	35.8	26.3	36.3
- 자본재	14.8	18.5	17.6	18.8
- 소비재	3.3	17.3	3.3	17.5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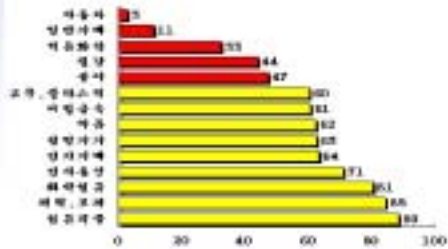
## 대중국 교역의 3대 특징(2)

-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54.2%)**
  -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 (01) 53.4% → (03) 48.1% → (05) 56.7% → (06) 54.5%
  - 대중국 수입 중 가공무역 비중 : (01) 46.1% → (03) 46.0% → (05) 46.9% → (06) 45.3%
  -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06년) : 대만 71.0%, 일본 45.1%, 미국 28.6%
- **합중 수출의 76.4%가 중국내 외자기업 向 수출**
  - 대중 수출의 48%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으로 수출(추정)
  - 기계류(HS 84)의 대중 수출 구성 (2006년 기준) : 가공무역용 25.8%, 외자기업 투자용 18.9%, 일반무역 29.2%
  - 일반무역 비중은 2001년 36%에서 하락, 외자기업 투자용 비중도 2001년 39%에서 하락

〈대중 교역 중 가공무역 비중(%)〉

		무역종식	2005	2006
중국·대만·대중국 수출	총액		251.1 (100)	445.3 (100)
	일반무역		186.6 (53.1)	243.5 (54.7)
	가공무역		164.5 (46.9)	201.8 (45.3)
중국·대만·대중국 수입	총액		788.2 (100)	897.6 (100)
	일반무역		314.8 (40.0)	380.4 (42.4)
	가공무역		428.8 (54.0)	386.2 (43.0)
	투자용 제외		25.3 (3.2)	21.2 (2.3)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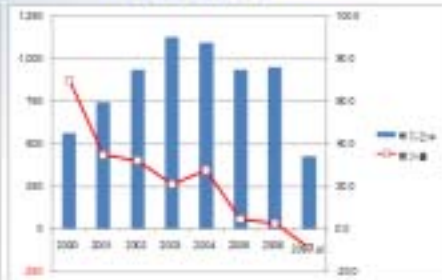
##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 대중국 투자건수 증가율 : (04) 27.6% → (05) 4.7% → (06) 2.5% → (07.1-6) -8.8%
  - 투자액 (억 달러, 상무부) : (04) 62.5 → (05) 51.7 → (06) 38.6 → (07.1-9) 27.03(7.9%)
-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가 크게 감소**
  - 1-6월 중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10.1% 감소
- **건당 투자규모의 증대형화 추세**
  - 건당 투자규모(단 달러) : (04) 108 → (05) 118 → (06) 145 → (07.1-6) 226

〈대중 투자 건수 (건)〉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 건수 (건)〉





## I.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 현황과 특징

### II. 대중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거시경제 환경 변화
-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
-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 평가

### III. 2008년 대중 비즈니스 환경 평가

## II.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 • 정책 변화 리스크 : 대중 수출에 영향 요인

거시경제 환경	외국인투자정책	무역(수출)정책 변화
-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 여부 - 과잉유동성과 긴축조치 - 위안화 절상 - 국내 소비와 투자 정책	- 신 소득세법 시행 - 신 노동계약법 시행 - 환경규제 강화 -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 가공무역제도 변화 - 수출우대 축소 - 수출세 부과

#### • 위협 : 산업구조 고도화 → 중간재 수입 증가율 둔화

- 현지법인의 부품 현지화, 중간재 수입의존도 둔화

〈대중국 제조업 수출 탄력성〉

중국의 경제성장률	중국 수출	산업생산	한국의 대중 투자
0.10	0.54	0.30	0.46



## 1. 거시경제 변화 리스크

- 중국경제는 1~9월 중 11.5% 성장**
  - 최근의 고성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의 호조에 기인
    - 분기별 성장률 : 1Q 11.1% → 2Q 11.9% → 3Q 11.5%
- 경기안정화 조치 한계 : “환율 안정, 금리기능의 한정적 활용, 행정지도 보완”**
  - 예금 기준율 9회 인상(9%→13.5%), 금리 5회 인상 : 6.12% → 7.29%(1년 만기)
  - 위안화 점진적 절상 : 7.8087→7.4718위안/달러(4.5% 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97년 2월 이후 최고치 기록
  - 주가 상승 : 상해종합주가지수 2,675 → 5,748 (115% 상승)
  - 부동산 가격 상승 : 전국 7~8% 상승, 대도시 10~15% 상승

< 중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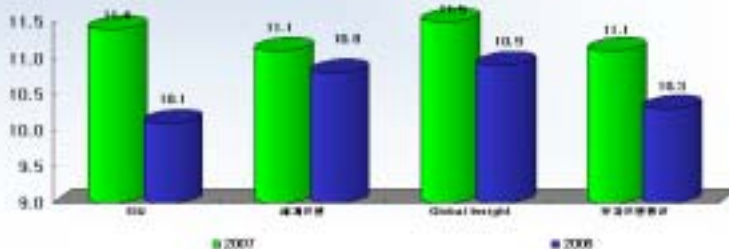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1~9	2007, 1Q	2007, 2Q	2007, 3Q
경제성장률	10.0	10.1	10.4	10.7	11.5	11.1	11.9	11.5
투자율	37.7	36.8	36.0	34.8	35.7	35.3	27.4	26.1
소비율	9.1	13.3	12.9	13.7	15.9	14.9	15.8	16.8
수출율	34.6	35.4	36.4	27.3	27.1	27.9	27.4	26.2
수입율	39.9	35.8	17.7	19.9	19.1	16.2	18.3	20.7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3.9	1.6	1.5	4.1	2.7	3.6	6.1

## 중국경제 전망

- 2007년 11.5% 내외, 2008년 10% 중반대 성장을 유지 전망**
  - 2008년에는 국내 투자와 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하락 예상
  - 올림픽 특수, 국내 자산가치 및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 증대
  - 올림픽 이후 부동산 및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과 성장 둔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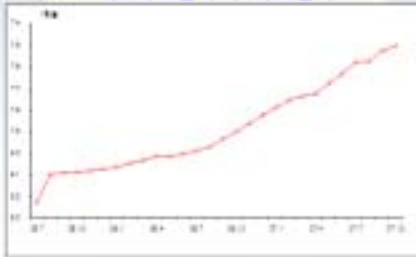
<2007년과 2008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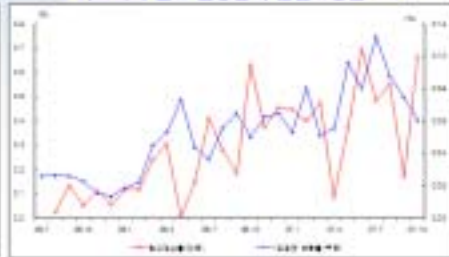
## 위안화 환율의 정상속도 가속화

- **05.7 북수문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8.54% 정상 (8.11 → 7.7418)**
  - 금년 들어 정상 속도 가속화 : 06년간 3.36% 정상, 07년 1-10월 4.5% 정상
  - 위안화 1일 변동성 확대(07년 5월 0.3%에서 0.5%로 조정)
- **위안화 환율 정상 압력 지속 전망**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 증대, 외환보유고의 증가세,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대등 무역적자 확대
  -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 방향 : 자주성, 점진성, 통제가능성
  - 환율의 점진적 정상, 1일 변동폭의 확대 전망

< 위안화 환율 추이 (위안/달러)>



< 위안화의 월간 정상률과 일일변동률(%)>



##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 Carnegie재단과 중국 DRC의 최근 공동연구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 유지 전망
- + 서비스산업으로 노동력 이동(연 1.21%), 노동생산성 증대 (연평균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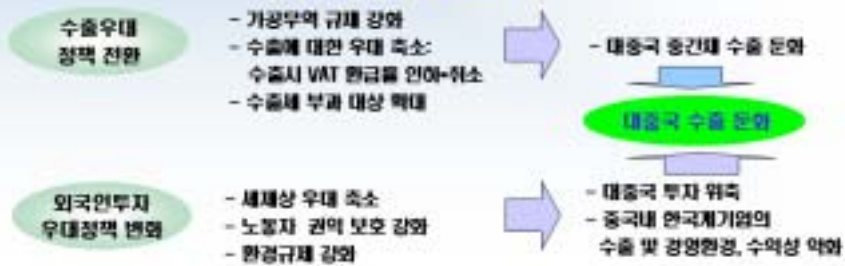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2005	2010	2015	2020
인 구 (억 명)		13.06	13.47	13.87	14.19
노동인구 (억 명)		9.18	9.68	9.97	9.94
경제 성장률 (%)	낙관적 시나리오	10.1 (2002-06)	9.5 (2006-10)	8.8 (2011-15)	7.6 (2016-20)
	비관적 시나리오		8.4 (2006-10)	7.1 (2011-15)	5.8 (2016-20)
	표준 시나리오		8.9 (2006-10)	8.3 (2011-15)	7.0 (2016-20)
산업구조(1차:2차:3차)		12.5:47.5:40.4	8.1:46.2:45.7	-	4.8:45.6:49.6
고용구조(1차:2차:3차)		44.8:23.8:31.3	40.1:22.8:37.0	-	34.5:21.9:43.9

## 2. 중국의 제도 및 정책 변화 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지속적 상승 → 중국 경제 및 정책 변화 리스크에 취약
  - + 대중국 수출 비중 : (01) 3.5% → (00) 10.7% → (05) 21.6% → (06) 21.3%
    - 홍콩 경유 간접교역 포함시 25%가 중국에 수출
  - + 2007년 6월말 현재 한국 해외투자 건수의 47%(중소기업의 경우 54%)가 중국에 집중
- 06년부터 중국이 과다한 무역흑자 축소를 목적으로 수출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 Risk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정책 변화 리스크



15

## (1) 수출정책 변화 : 가공무역 제한 강화

- **환경보호, 자원보호 목적의 가공무역 금지**
  - 04. 11월,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고 기계, 전자제품, 폐기자재 가공무역 금지
    -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 등의 가공무역 금지
  - 05. 5월, 철강석, 선철, 폐강, 강판(鋼板), 회보원강, 인광석 등 29개 품목
  - 05. 8월, 산화알루미늄, 철합금강 등 11개 광산물 가공무역 금지
- **자원보호, 자원 및 저부가가치 임종의 가공무역 제한**
  - 06년 1월, 가공무역 종합 조치(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 방법) 시행
    - 연해지역 수출가공구에서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품목의 신규 진입 금지,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 업종 등 수출가공구 진입 금지
    - 생가죽, 농약원료, 원목, 펄프, 동정광, 미연정광, 주석정광의 가공무역 수입 금지
  - 06년 1월, 600여 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
  - 06년 9월, 수출세 환급 폐지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
    - 비금속광물, 에너지, 비철금속 및 스크랩, 세라믹 및 내화 제품, 캐시미어, 목탄, 철목, 코르크제품, 일부 목재의 일체가공품 등 191개 품목
  - 06. 11월,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11.22 시행)
    - 비금속광물, 원목 및 목제품, 에너지 광물, 비철금속
  - 07. 4월, 1,140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07. 8월, 1,853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섬유류 1,539개 품목, 플라스틱 150개 품목, 금속 56개 품목, 도자기 및 유리류 47개 품목, 합판 및 목제품 40개 품목, 가구류 21개 품목 등

### 수출정책 변화 : 수출 한금률 인하

- **수출 조절 수단 : 수출 호조기한금률 인하, 수출 부진기 인상**
  - 수출한금액이 1% 감소하면 중국의 수출은 0.23% 감소
    - 2005년의 수출 한금액은 3,372억 위안 → 1달러를 수출할 경우 0.05위안의 한금(일반무역만을 고려할 경우 수출 1달러 당 한금액은 0.13위안 한금)
- **수출 증치세 한금률 조정 : 자원보호, 통상마찰 회피, 산업구조 조정**
  - 04년 재정부담 해소 목적 → 자원보호, 비효율 입증 도태, 무역축지 축소
  - 04년 1월, 평균 한금률 인하(15.11% → 12.11%)
    - 17%와 15% 품목 → 13%, 13% 품목 → 11%, 원재료는 5-8%로 인하, 국내 무역 자원 수출한금 폐지
  - 06년 9월, 수출 증치세 대폭 조정 : 한금 취소 191개, 인상 225개 품목, 인하 1,130개 품목
    - IT기기, 바이오의약품, 농산물 가공품 등은 한금률 인상
    - 강제는 무역마찰의 회피와 산업구조조정 목적 : 04년 1월 15%→13%, 05년 5월 13%→11%, '06.9월 11%→8%)
    - 비철금속은 자원보호 차원에서 한금률 인하 (13% → 5%, 8%, 11%)
    - 에너지, 목재, 비금속광물은 자원보호 차원에서 한금 폐지
    - 원사 및 직물은 통상마찰 해소 차원 : 13% → 11% (의류 제외)
  - 07년 4월 76개 철강제품의 한금률 인하(5%로), 83개 품목의 한금률 취소

### 중국 정책변화 리스크 : 가공무역정책 변화 →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 둔화

- 05년부터 중국이 가공무역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공무역용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됨**
  - + 2006년 대중국 가공무역용 수출은 4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4% 증가에 그침(05년 54% 증가)
- 중국의 보세구들 통한 무역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대중국 수출의 11% 차지

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증가율 추이





## (2)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 : 신 기업소득세법 시행

### · [연행]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 부여

- 기본세율 : 30% (기업소득세율) + 3% (지방세)
- 지역우대 : 15%(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중서부지역 등), 24%(개방지역)
- 2호 3호 : 애용발생 이후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수출기업 우대 : 70%이상 수출기업에 대해 50% 감면
- 상효세율 : 외자기업 11%, 중국기업 22%

내외자기업간 공평한 경쟁,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 기업소득세 개정 (2007년 3월, 전인대 통과, 2008년 1월 1일 시행)

- 기본세율 : 30%에서 25%로 인하
- 우대정책 수정 방향 : 산업별 우대 위주, 지역별 우대 보조
  - **산업별 선별적 우대** : 하이테크 업종, R&D센터, 환경보호, 기반산업 등
    - ⇒ 공채기업은 20%, 하이테크기업은 15% 우대세율 유지
  - **연해지역 우대 폐지** ⇒ 특수지역(충청부), 동북지역(13개) 상각 인정
    - ⇒ 경제특구, 무동산구 하이테크기업, 서부대개발 지역의 장려기업 우대 존속
- 2호 3호 우대 취소, 수출기업 우대 취소 : 기존기업에 한하여 5년간의 과도기간
- 내외자기업의 세금공제규정 통합

##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 · 외자 기업의 이전가격 조사/ 인정 과세 추세

- 최근 세무당국은 중국내 외자기업과 본국 모기업간 내부거래에서의 이전가격 조차  
을 통한 조세탈피를 적극 조사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수출가공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세무국의 원부자재 직접 대명 요구 증대)
- 회계상 장자 적자 계상 시, 세무당국 입의로 과세
  - 매출액의 3%를 흑자로 간주, 기업소득세 임의 부과 시회 발생

### ·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 2006년 세무총국의 중점 조사대상에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 포함
  - 2005년 12월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연 소득 12만 위안 이상 고소득자와 해외소득이 있는 자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발표(2007.1.1 시행)
- 향후 3~4년내 소득액의 100%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할 방침임
  - 단, 외국인 주재원 연세정은 4,000위안/월에서 4,800위안/월로 상향 조정

### (3) 노동정책 : 신노동계약법 발효

- **新 '노동계약법(수정안)' 발효(08년 1월): 노동자의 권리 대폭 강화**
  - 장기고용 촉진, 서면형식의 노동계약 체결 의무화, 기업의 해고 제한규정 강화, 파견 계약 조건 강화(1년 이상 파견계약 금지), 퇴직금 지급 의무화
    - 노동계약 체결 비율 목표 : 2007년 말 90%, 2008년 말 100%
  - 노동조합 설립 요구 증대, 노조의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
    - 외자기업 노조설립 목표(全團總工會) : 25% → 2006년 말 60%, 2007년 70%

구분	주요 내용
노조 권리 확대	• 노동규칙 제정 참여, 단체계약 체결, 직면 해고시 권익금, 인명 감형시 노조총지 발령
연체보상금	• 사실상의 퇴직금제도 도입 : 1년 1개월 분(2개월 평균임금 기준)
장기고용 촉진	• 무기완부 근로 계약 의무화: 10년 근속, 그해 연액 기준부 계약 체결 • 노무위원의 재환: 노무위원사가 2년씩 기한부 계약체결 후 퇴권, 동일노동·동일보수, 노무위원회사와 인력사용회사의 연대책임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 1개월 이내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신규입직은 계약 체결 후 5일, 기존인력 계약만료 전 노동계약 갱신(1년 미채종 상태 종료시 무기한 근로자로 간주) • 고지 의무: 근로내용, 근로조건, 근로지명, 작업방법, 안전보건 현황, 근로보수, 기타 사항
사회보험 의무화	• 장면적, 의무적 시행 - 사회보험 대상부, 납부기준 축소, 일부만 납부 중인 계약한자 사유

### 외국인투자 규제와 대중 수출에의 영향

- **중국내 한국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둔화 야기**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0%가 중간재 입.
- **중국의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 대중국 투자용 설비 수출 둔화로 이어짐**
  - 2005-06년 2년간 대중국 투자는 감소세 지속
  -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용 설비수출도 2년 연속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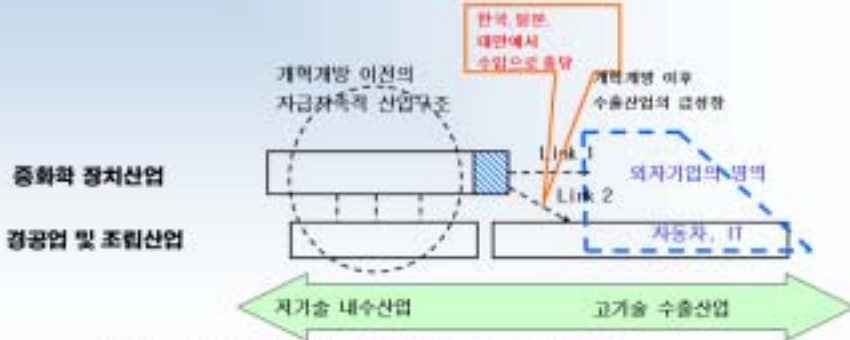
< 중국의 대중국 투자와 투자용설비의 대중 수출 (억 달러) >

	중국의 FDI유입액	한국의 대중국 투자		투자용 설비의 대중국 수출
		수출입분별 기준	물류통계 기준	
2001	468.8 (15.1)	8.39 (-10.1)	21.52 (44.4)	16.1 (-)
2002	527.4 (12.5)	16.26 (50.9)	27.21 (11.0)	11.5 (14.9)
2003	535.1 (1.5)	16.66 (62.1)	44.89 (65.0)	17.4 (50.0)
2004	606.3 (13.3)	22.98 (38.0)	52.48 (39.2)	27.9 (50.3)
2005	603.3 (-0.5)	26.47 (15.2)	51.66 (-17.3)	25.3 (-9.3)
2006	630.2 (4.5)	33.10 (25.0)	38.95 (-24.6)	21.2 (-18.2)

### 3. 수입대체 위험 : 중국산업의 Missing Link 활용

- 중국의 중화학 및 정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연해지역의 수출산업을 위협할지 못함.
- 중국은 최종재 조립 - 주변국은 중간재(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분업구조 형성

중국산업의 missing link와 국제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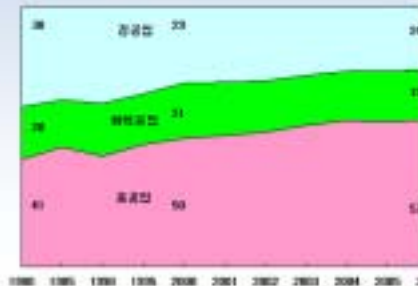


Link 1의 해결 : 중국 중화학 산업의 수출산업화(수출고도화의 위험)  
 Link 2의 해결 : 원자재, 부품에 대한 수입대체(수입대체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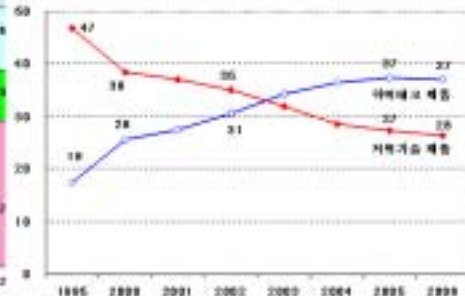
### 산업고도화 위험 : 중국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 수출의 하이테크화

- 중화학 공업화 진전 : 중국 제조업 생산 중 중공업 비중의 지속적 상승
  - + 중공업 비중 : (80년) 41.5% → (90년) 42.6% → (00년) 49.6% → (06년) 56.8%
-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 : 제조업 수출의 저위기술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환
  - +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산업 비중 : (95년) 17.5% → (00년) 25.6% → (06년) 37.3%

중국의 제조업 구조 변화 (%)



중국의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산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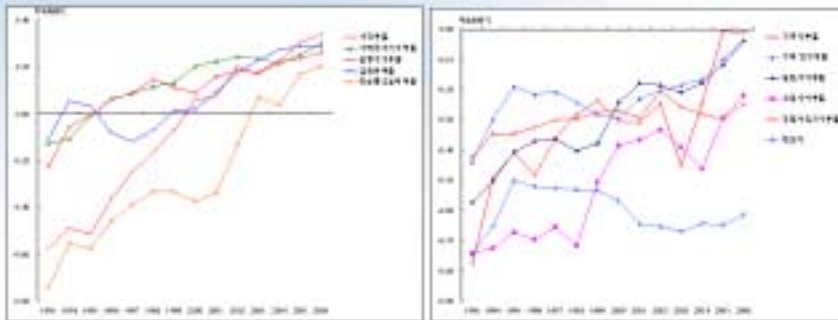


### 산업고도화 위험 : 중국 부품-소재 산업에서 수입대체 가속화

■ 가전부품, 전기부품, 음향기기부품, 컴퓨터부품은 1990년대 중반에, 방송통신설비부품은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

-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기타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수입대체 위기
- + 반도체, 정밀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은 수입대체 초기이나 수입특화지수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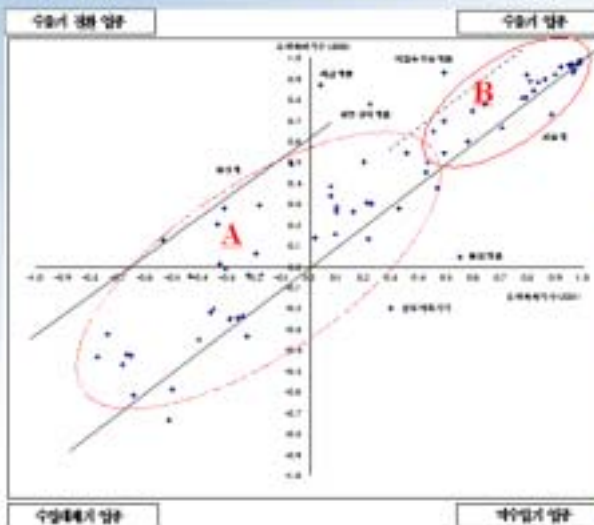
중국 주요 부품의 산업발전단계



25

### 산업의 고도화 위험 : 중국의 수출산업화 - 대중국 수출 둔화

■ 최종재(B)는 수출산업화 단계 / 중간재(A)는 수출산업화 초기 또는 수입대체 후기 진입



A : 중간재 분야에서 수출특화지수 급 상승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로 연결 가능성 증대

B : 소비재 분야는 수출기 후기 또는 성숙단계 진입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연결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 (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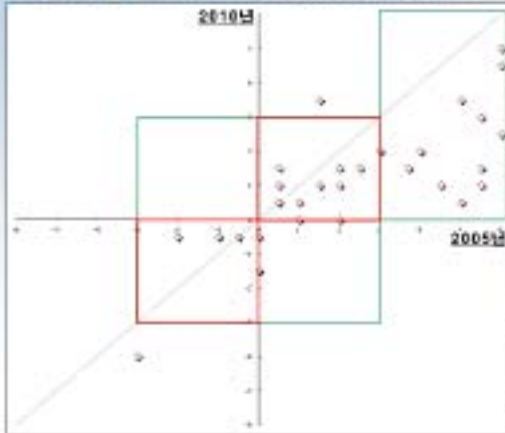
26



**중국 경쟁력 강화 위험 : 한중간 경쟁력 격차 축소**

■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위험 증대

한국과 중국의 산업경쟁력 격차 현황과 전망 (단)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 (단)

종 목	2005년	2010년
휴대폰(GSM, CDMA)	2.0~2.5	1.5
TFT-LCD	3.5	1.7
PDP, OLED	3.5	2.0
리플렉티브 컬러필터	2.5	1.0
D-TV	2.0	1.0
D-STB	1.5	1.0
LCD모니터	2.0	0.5
노트PC	1.5	0.5
자동차 Key Set	3.5	1.5
다이어몬드공구	3.5	2.5
CNC선반	5.0	4.5
머시닝센터	6.0	1.5
플라즈마의 단결정	1.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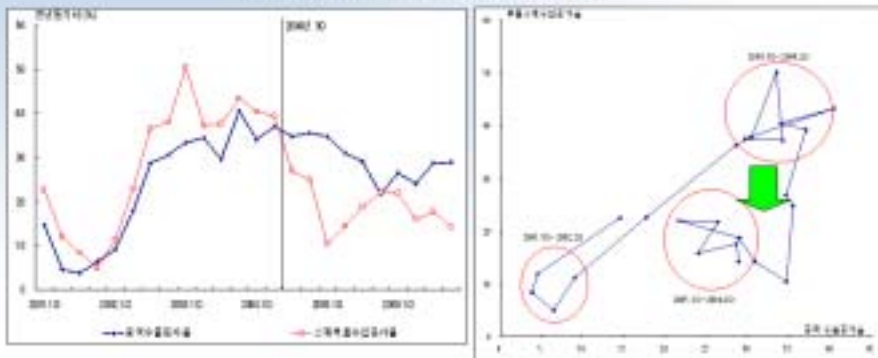
주 : 1 - 는 한국의 중국에 비해 경쟁력 낮음  
 자료 : 한국산업개발재단

**산업고도화 위험 : 중간재 산업 성장 → 소재·부품의 수입의존도하락**

■ 중국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전진 가능성 증대

- + 2004년 4분기 이후 부품·소재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
- + 중국 수출의 수입의존도 급속 하락 = 중국의 부품·소재부품 자급도 향상 시사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소재·부품 수입증가율의 관계



## VI. 대중 수출 환경 평가

항 목	주 요 함 경 변 화	대중 수출 환경
경제성장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10%대 성장률 유지) : 국내 소비와 투자가 성장 주도, 수출은 다소 둔화 예측	긍정적
산업생산	- 주요 산업의 생산 증가율 상승세 - 중국 부품산업에서의 수입대체 가속화 -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주 가능성(수출기업, 가공무역기업)	중립적
투 자	- 투자증가율 둔화/부동산 투자의 지속적 억제 - 11.5 계획 관련 환경, 사회 인프라, 하이테크 분야 투자 지속	중립적
소 비	- 자산가치, 소득영향으로 국내소비의 인성적 성장 유지 지속 - 농민부담 경감, 저소득층 소득증대 조치 - 율령택 특수 등	긍정적
수 출 율	- 점진적인 위안화 추가 절상 (5% 내외) - 신산국의 대중 통상압력 지속: 섬유, 철강 등 -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가공무역 규제 강화	부정적
투자기업 경영예견	- 임금인상 요인 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비용 부담 증가 : 10% 정도의 임금상승, 최저임금 인상, 기능인력 부족 - 에너지 및 환경관련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 압박 강화/ 환경기준 강화 - 투자기업의 현지 무형/소재 조달 강화	부정적
기 타	- 한화 통상압력 중립적: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축소 - 중국산의 역수입 확대, 이세연과의 경쟁 격화	중립적

## 대중국 투자 기업 전략 전환 방향

- **중국 진출의 기본 원칙: 경쟁력 + 내수시장, 수익관리, 존엄 경영**
  -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시장경제체제 도입 과정의 필연적 대세: **불변-다수**
- **핵심시장: 중국의 내수시장 + 소상가지 활용**
  -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활용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투자를 지향
  - ⊕ 단순 임가공기지만 활용하기 위한 투자, 환경오염 업종, 자원활용 목적 투자의 경우 중국 진출의 함계점 →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지역 진출 검토
- **중국 사업은 양적 확대보다는 수익관리를 중점: 노동집약적 업종은 인제제한제에 도달**
  - 임금, 복리비, 퇴직금 부담, 지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예상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유대 축소, 위안화 절상, 가공무역 금지 등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권리전략 수립**
  - 법과 규정에 의한 노동자 권리신 노동계약법에 대한 대비, 복리비 부담
  - 노동조합(工會)의 설립 의무화 및 노조의 권한 강화(단체협약 등) 대비 필요
- **중국의 세무관련 법규의 준수 및 세무전문가 고용**
  - 중국의 세무압박 강화, 이천가격 실시 강화에의 대응 필요

## FTA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Ph. D. Charan Chakandang

(Dean,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urapha University)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negotiating the possibility to open up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June 2004. Up until now there had been six rounds of negotiations taken place with the last one in January, 2006 in Chiangmai, Thailand. Unfortunately, the process was called off by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political turmoil which led to the coup d'etat of September, 2006 in Thailand.

This paper, "*FTA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is mainly intended to survey the rationale behind the need to have this agreement implemented and the outcome to be achieved after the implementation. Not only the United States that Thailand had approached and had been approached to get such agreement negotiated and implemented. At the moment Thailand have already had FTAs with nine countries and groups of countries which include Australia, New Zealand, India, China, Japan, Bahrain, Peru, BIMSTEC countries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include Bangladesh, India, Myanmar, Bhutan, Nepal, Srilanka and Thailand) and EFTA countries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which include Iceland, Norway,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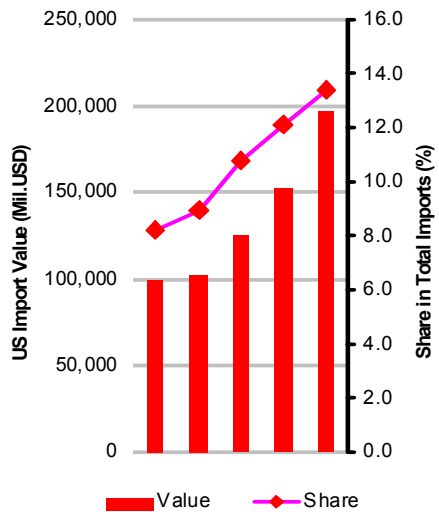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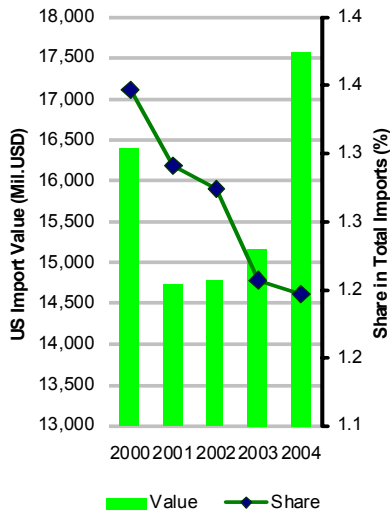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initiative that brought the two countries to sit in the negotiating table was the signing of the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o solve problems and obstacles of trades and to lay founding stones to create the free trade zon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at the 2002 APEC Meeting on October 23, 2002 in Los Cabos, Mexico. And in the following year at the 2003 APEC meeting held in Bangkok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greed to have the first meeting of negotiation in 2004.

### Thailand's Rationale in Negotiating FTA with the United States

1. USA is the biggest market for exporting goods of Thailand. In 2004 Thailand's exporting goods valued up to 15,000 million US. dollars counted for 15 % of the total exporting goods of the country and in 2006 it moved up to 15.4 % total 15,500 million US. dollars.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Atla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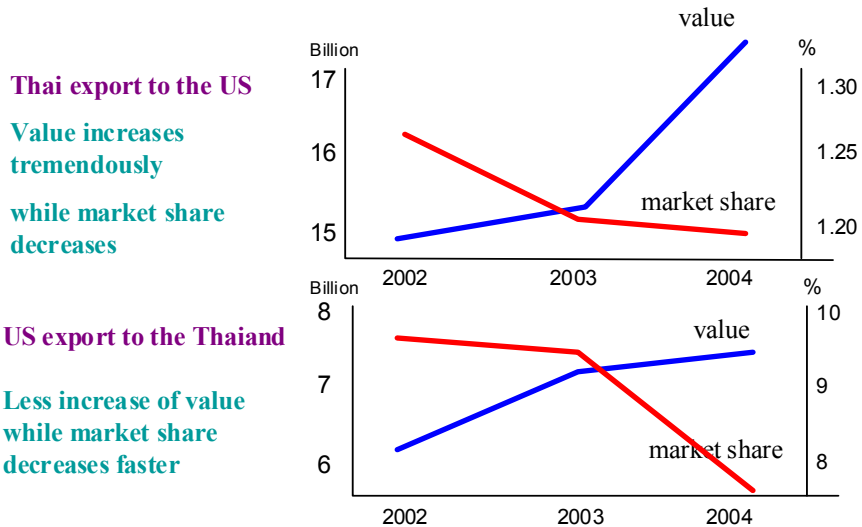
2.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ompetition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that USA has FTA with such as CAFTA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in the areas of processed food, televisions and clothings.



The figure above shows very well that the market share of Thai merchandise has been decreasing in the US market while the Chines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1 Apiradee Tantraporn, "Negotiations to Open Up FTA Market Between Thailand and USA", presentation given at FTA Seminar, Imperial Queen's Park Hotel, Bangkok, January 24, 2006.

3. Trend of goods exporting between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seems to be disadvantageous to both parties. Figure shown below best describes this disadvantage.

### Trend of Trades between Thailand and the US



4. The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iven by the US Government to Thailand would end in December, 2006 and There was no guarantee that it would be renewed. That means Thailand would be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it would result in a certain setback in Thailand's international trade.

## SESSION 2

5. Import tax or tariff of the United States is normally about 6-7%. The FTA would reduce it on some items to zero. That would help increase the demand of Thai good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imported goods from the United States to Thailand are raw materials and machinery, nil import tax or tariff from Thailand side would help reduce production capital and result in low price of merchandise.

### What Advantage the United States Get from FTA with Thailand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of merchandise the United States usually lose deficit to most countries, for example, in 2005 she lost about 600,000 million US dollars. However, she gains from trade in service industry and investment. In 2004 she gained about 40,000 million US dollars from service industry and investment alone. Narongchai Akraseranee, FTA: Thailand-United States, presentation given at FTA Seminar, Imperial Queen's Park Hotel, Bangkok, January 24, 2006. So, having Thailand as the FTA partner the United States can trade of this imbalance. Another aspect that the United States expect to gain from having FTA with countries in Asia i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violations had been very serious in the past ten to twenty years ago in Asian countries which caused a lot of loss to producing countries. Elimination of this mal-practice would certainly bring full benefit to manufacturing countries. So, in the FTA negotiating table USA would usually bring up this issue as one of the topics of discussion and always wins her way.

### Process of Negotiation to Reduce Taxes on Thai Side

- A. Grouping of merchandise according to their promptness.
1.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immediately reduced to nil.
  2.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in five years.
  3. Sensitive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in ten years.
  4. Highly sensitive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in more than ten years with additional protecting measures.
- B. Consul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private sectors and other agencies.



### The Progress of Negotiation

- Six rounds of negotiation have been reached.
- Initial request was exchanged between the counterparts in October, 2005.
- Improved offers were exchanged in December, 2005.
- Additional offers were exchanged in February, 2006.
- Negotiation was called off by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up d'etat of September, 2006.

### Results of the Negotiation So Far

Merchandise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open the market for

SESSION 2

Thail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Fact Sheet, January, 2006.

These imports value altogether up to U.S. \$17,259 million of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groups as following:

1.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immediately when the agreement gets effective values U.S.\$12,810 million or 74% which includes;

- Electronic appliances (\$1,400 million)
- Glass and ceramic wares (\$267 million)
- Plastic products (\$218 million)
- Rubber Product (\$147 million)
- Wood product (\$140 million)
- Processed food (\$136 million)
- Steel product (\$120 million)

2.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within five years values \$1,790 million or 11% which includes

• Gold, silver and gems jewelry (11 tax rates with \$738 million worth)

- Garments and Textiles (297 tax rates with \$639 million worth)
- Shoes (48 tax rates with \$212 million worth)
- Wire set for automobiles (1 item with \$149 million worth)
- Clock and accessories (59 tax rates with \$128 million worth)
- Some items of plastic product (5 tax rates with \$95 million worth)
- Ceramics (15 tax rates with \$44 million worth)
-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 (32 tax rates with \$34 million worth)

3.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within ten years values \$2,119 million or 12% which includes;



- Garments and Textiles (823 tax rates with \$1,563 million worth)
- Canned Tuna (4 tax rates with \$254 million worth)
- Automobile parts (117 tax rates with \$159 million worth)
- Rice (2 tax rates with \$158 million worth)
-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 (43 tax rates with \$70 million worth)
- Shoes (13 tax rates with \$22 million worth)
- Sugar (51 tax rates with \$7 million worth)

The rest are sensitive goods with altogether 529 tax rates (3%) which include:

- Some tax rates of garments and athlete shoes.
- Some tax rates of canned Tuna.
- Pickup trucks
- Some TRQ (Tariff Rate Quota)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sugar and tobacco etc.

Merchandise that Thailand would open the market for the United States  
Ibid.

These imports value up to U.S. \$7,108 million of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groups as following:

1.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immediately when the agreement gets effective values U.S.\$5,055 million or 71% which includes;
  - Electronic appliance (\$972 million)
  - Chemicals and fertilizers (\$568 million)
  - Iron and steel (\$241 million)
  - Paper fabric and wood (\$108 million)
  - Finished rubber product (\$48 million)
  - Petroleum product (\$43)

## SESSION 2

2.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within five years values \$791 or 11% which includes;

- Electronic appliance (\$194 million)
- Plastic product (\$122 million)
- Wheat (\$91 million)
- Optical and medical devices (\$73 million)
- Paper and books (\$53 million)
- Metal instruments and tools (\$29 million)

3. Merchandise of which tax could be reduced within ten years values \$1,031 or 15% which includes;

- Electronic appliance (18 tax rates with \$226 million worth)
- Steel product (8 tax rates with \$193 million worth)
- Some plastic product (10 tax rates with \$190 million worth)
- Measurement and test instruments (4 tax rates with \$96 million)
- Cosmetics and soap (2 tax rates with \$51 million worth)
- Pharmaceutical devices (2 tax rates with \$45 million worth)
- Seasonings (5 tax rates with \$45 million worth)

The rest are sensitive and TRQ goods with altogether 93 tax rates or about 3% such as:

- Milk and diary product
- Soy beans, potato, garlic, coffee beans and corn
- Chicken and beef

### Other Issues Included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enable Thai products to get into the U.S. market some other important issues were also brought into the negotiations. Such important issues are:

1. Rules of Origin which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following;

a) Wholly Obtained which means all raw materials are obtained from within the country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b) Substantial Transformation which includes the change of tax rates such as on canned tuna and canned fruit and it must go through important manufacturing process such as in the case of chemicals.

c) Local Content which means proportion in using raw material from within the country such as in automobile, and electronic appliance manufacturing.

2.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Agricultural Product which is the measure to protect agricultural products with high sensitivity such as beef, dairy product, grapes and raisins, etc. These goods do not get protected from Tariff Rate Quota (TRQ)

3. Customs Procedures

4.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

5. Measures on Industrial Products Apiradee Tantraporn.

What I have presented above is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concerning the FTA between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had been getting along quite well. Hadn't Thailand faced the political turmoil of September, 2006,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have been implemented. Any way what had been discussed in the negotiations almost reached the final stage. Hope once we get the new government after the coming general election in December, 2007, the negotiations will be soon resumed and the FTA between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finally signed and implemented.

## SESSION 2

### References

Apiradee Tantraporn, "Negotiations to Open Up FTA Market Between Thailand and USA", presentation given at FTA Seminar, Imperial Queen's Park Hotel, Bangkok, January 24, 2006.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Fact Sheet, January, 2006.

Narongchai Akraseranee, FTA: Thailand-United States, presentation given at FTA Seminar, Imperial Queen's Park Hotel, Bangkok, January 24, 2006.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Atlas, 2006.